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65-01

#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에 관한 기초조사

2017. 01.

연구기관  
전남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본 보고서를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에 관한 기초조사」 사업의 최종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7. 01.

책 임 연 구 원 : 서종석  
연 구 원 : 김인석  
연 구 원 : 서정원  
연 구 보 조 원 : 이연옥  
연 구 보 조 원 : 김다혜



## 요 약

- 농업법인 실태 조사 분석은 총 53,155개(영농조합법인 37,903, 농업회사법인 15,252)법인을 대상으로 수행함. 이들 농업법인 중 운영 중인 법인은 47.2%로 나타났으며, 법인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 중 46.4%(17,579개소), 농업회사법인 중 49.5%(7,551개소)가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폐업 및 소재 불명인 경우도 전체 농업법인 중 33.3%(영농조합법인 32.3%, 농업회사법인 35.6%)로 나타남.
- 한편, 운영중에 있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인형태별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주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74.8%)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법인은 농산물 가공(57.6%), 농산물 유통(53.2%),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52.1%)등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요 설립 요건인 농업인(농업생산자 단체) 5인 이상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법인은 78.1% 수준이었으며, 조합당 조합원은 평균 6.99명, 농업인은 6.83명 수준으로 나타남.
  - 농업회사법인의 주 사업 범위는 ‘농산물 유통 사업’ 부문이 69.1%로 나타났으며, 이들 법인은 농산물 판매사업(66.3%), 농업의 경영(생산)(62.1%) 등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농업회사법인의 주요 설립요건인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 여건(총 출자금이 80억 이상인 경우 농업인 8억 이상 출자)을 충족하고 있는 법인은 84%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 업무집행권자 1/3이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법인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1,641개소) 중 84.9%로 분석됨. 농업회사법인의 출자금 규모는 평균 630.8백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농업인에 의한 출자금 규모는 511.6백만원(출자금 기준 81.1%)으로 나타남.
- 운영중에 있는 농업법인별 소유 농지의 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평균 34,379㎡ 수준이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평균 29,502㎡ 수준으로 규모면에서 영세한 수준으로 나타남.
  - 농지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논은 평균 8,350㎡, 밭 16,827㎡, 과수원 899㎡ 수준이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논 6,981㎡, 밭 7,654㎡, 과수원 1,284㎡ 수준으로 분석되어 밭에 대한 소유 규모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운영중인 농업법인 중 해산명령 청구 대상이 되는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총 1,921개소로 농업법인 실태조사 DB의 운영중인 농업법인(25,130개소)의 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운영중 영농조합법인 중 목적 외 사업 운영 법인: 973개 법인(50.7%)
- 운영중 농업회사법인 중 목적 외 사업 운영 법인: 948개 법인(49.3%)
- 이들 농업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목적 외 사업을 사업분야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이 41.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업 16.6%, 무역업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기타 목적 외 사업이 42.6%로 다양한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내용 및 추진체계, 조사 담당 공무원의 의견, 실태 조사 조사항목별 응답률, 국내 타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법인 관련 조사(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중견기업 실태 조사 등) 농업법인 관련 조사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원천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 및 분석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력단계에서 기존 입력 지침을 정비하고 중복된 데이터에 대한 입력 통제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데이터의 처리·가공·분석 단계에서의 입력값에 대한 코드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함.
- 둘째, 농업법인 실태 조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되며, 농업법인조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조사의 일관된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전수조사에 따른 오류를 줄이는 방향에서 조사표 항목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 셋째,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단계의 효율성 제고, 금번 실태조사의 농업법인별 상황을 차기 조사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세부조사표(안)을 제시함.

○ 농업법인 사업범위 제도의 운영형태는 농어업경영체법 상 농업법인이 영위 가능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그 외의 사업들은 영위 불가능하게 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따르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반대되는 방식으로서, 포괄주의보다 규제가 많고 폐쇄적인 접근 방법임. 이러한 열거주의에 바탕하여,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초기의 농업경영(생산), 농작업 대행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그리고 최근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까지 확대 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열거주의적 규제정책으로 인한 제한적 농업법인 사업범위는 농산업의 팽창과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와 더불어, 현행 농업법인 제도의 사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기준이 부재한 실정임. 불명확한 기준과 한정적인 정의에 입각한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대한 분류는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하고, 더 나가 일선 등기소에서 등기되는 사업

들 중에서 농업법인 허가 사업범위 밖의 목적 외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역할을 함.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농업법인이 영위가능한 사업범위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유형화 하고, 농업법인 설립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확대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전체 21개 대분류, 76개 중분류, 228개 소분류, 487개 세분류, 1,145개 세세분류 산업으로 구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현재 농업법인이 영위가능한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6개 대분류, 14개 중분류, 30개 소분류, 52개 세분류, 102개 세세분류 산업으로 재유형화 함.
  - 본 연구의 유형화에 따른,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6개 대분류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 각각의 6개 대분류 산업은 다시 농업법인 사업범위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새롭게 정리됨.
  
- 농업법인 사업범위의 확대는 기존사업범위의 정의(의미)의 확대와 기존 사업범위내의 사업과는 구별되는 신규사업의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존 사업범위 정의의 확대는 다음과 같음.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한정된 기존의 농업경영의 정의에 곤충업을 포함함.
  - 농업의 유통 및 판매에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포함함.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에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생산 등 기타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포함함.
  - 종자생산·종균배양업에서 국내 생산되지 않는 종자 및 종균의 수입을 포함함.
  
-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장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음.
  - 요식업: 직접 생산한 주요 식재료를 이용하여 전통음식(궁중음식, 사찰음식 등)의 판매 및 연구개발을 하는 활동. 모든 식재료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주요 식재료의 생산 기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의 원칙을 차용함.
  - 농업용부동산임대업 : 농업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활동. 이때, 허용가능한 토지 및 건물은 농지법 제23조에 따름.
  - 농업·농촌 컨설팅업 : 농업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지도, 조언, 자료 제공등 직접컨설팅하거나 교육하는 활동.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3. 보고서 구성 .....	4
<b>제2장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관한 고찰</b> .....	7
1. 추진배경 및 목적 .....	7
2. 추진과정(경과) .....	8
3. 문제점 .....	9
4. 개선사항 .....	10
<b>제3장 농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b> .....	12
1.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분석의 요지 .....	12
2. 자료의 구성 및 처리과정 .....	14
3. 농업법인 조사 실태 분석 .....	16
<b>제4장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개선방안</b> .....	39
1. 농업법인 실태조사 내용 및 추진체계 .....	39
2.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 .....	40
3. 농업법인 실태 조사 개선 방안 .....	53
<b>제5장 농업법인 사업범위 연구</b> .....	62
1. 농업법인 사업범위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62
2.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선행연구 .....	63
3.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실태 분석 .....	68
4.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 .....	72
<b>참고문헌</b> .....	113
<b>부록 1&gt; 지역별 농업법인 일반 현황 분석 결과</b> .....	115
<b>부록 2&gt; 지역에 따른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분석 결과</b> .....	119
<b>부록 3&gt; 지역별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및 농지소유 관련 분석 결과</b> .....	131
<b>부록 4&gt; 협동조합 실태조사 조사류별 조사 항목</b> .....	134
<b>부록 5&gt; 조사 담당 공무원 설문 내용</b> .....	136

## 표 목 차

### 제2장

<표 2-1> 농업법인 수와 규모의 변화 .....	7
------------------------------	---

### 제3장

<표 3-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	13
<표 3-2> 분류 sheet별 변수 주요 내용 .....	14
<표 3-3> 농업법인의 지역별 분포 .....	16
<표 3-4> 농업법인제도의 연혁 .....	17
<표 3-5> 농업법인의 설립 연도별 분포 .....	18
<표 3-6> 농업법인별 법인 운영 현황 .....	18
<표 3-7>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복수응답) .....	19
<표 3-8>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간 구성 비율(n=25,136) .....	20
<표 3-9>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복수응답) .....	20
<표 3-10>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간 구성 비율(n=9,447) .....	21
<표 3-11> 농업법인별 목적 외 사업(복수응답) .....	21
<표 3-12> 농업법인별 설립요건 및 농지소유 요건 충족 현황 .....	22
<표 3-13> 농업법인의 종사자수 현황 .....	23
<표 3-14> 영농조합법인의 지역별 세부 운영형태 현황 .....	24
<표 3-15> 설립시기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현황 .....	25
<표 3-16>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복수응답) .....	25
<표 3-17>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간 구성 비율(n=17,076) .....	26
<표 3-18> 운영형태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 충족 현황 .....	27
<표 3-19>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및 조합원 요건을 고려한 (준)조합원 특성 .....	28
<표 3-20> 농업회사법인의 지역별 세부 운영형태 .....	29
<표 3-21> 농업법인 설립시기별 운영 현황 .....	30
<표 3-22>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복수응답) .....	30
<표 3-23>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간 구성 비율(n=7,238) .....	31
<표 3-24> 농업회사법인 운영형태별 농업인 출자 비율 요건 .....	32
<표 3-25> 농업회사법인 운영형태별 80억 초과 농업인 요건 .....	32
<표 3-26> 농업회사법인 운영 현황에 따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요건 분포 .....	32
<표 3-27> 농업회사법인의 운영형태 및 출자자 요건을 고려한 출자 현황 .....	33
<표 3-28> 농업법인 운영형태별 농지소유 현황 .....	34
<표 3-29>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 형태(다중응답) .....	35
<표 3-30>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농지별 소유 현황(다중응답) .....	35

<표 3-31>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36
<표 3-32>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종사자 현황(종사자가 있는 경우)	37
<표 3-33> 운영 중인 법인의 목적 외 사업(복수응답)	38

#### 제4장

<표 4-1> 농업법인 실태조사 세부 항목	39
<표 4-2> 농업법인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 의견 조사 결과	41
<표 4-3> 법인 일반 현황 항목	42
<표 4-4> 법인종류별 분류 번호	43
<표 4-5>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법인등록번호 기준 법인분류 결과	44
<표 4-6> 법인 운영 현황 항목	45
<표 4-7> 타 부처 법인 실태 조사 비교	47
<표 4-8> 중견기업 실태 조사 조사 항목	50
<표 4-9> 농업법인 관련 조사간 조사 방법 및 조사 항목 비교	52
<표 4-10> 농업법인실태조사 원자료의 주요 오기입 사례	55
<표 4-11> 농업법인실태조사 원자료의 주요 변수값 부여 현황	56

#### 제5장

<표 5-1> 김철민(2010)의 농림수산 관련산업 분류	64
<표 5-2> 권용대 외(2013)의 농산업의 유형별 분류	65
<표 5-3> 임송택·양승룡(2013)의 농림·수산 관련산업 분류	66
<표 5-4> 이병오(2015)의 6차산업의 분류	67
<표 5-5> 농촌 진흥청(2014)의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설문지상 업태 분류	67
<표 5-6> 목적 외 사업의 기타항목 분류	69
<표 5-7> 영농조합법인 목적 외 사업 기타항목 중 기존사업범위 세부분류	70
<표 5-8> 농업회사법인 목적 외 사업 기타항목 중 기존사업범위 세부분류	70
<표 5-9> 영농조합법인 목적외 사업 세부분류	71
<표 5-10> 운영중인 농업회사법인 목적 외 사업 기타항목 세부분류	71
<표 5-11>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	75
<표 5-12>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농업, 임업 및 어업	76
<표 5-13>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제조업	78
<표 5-14>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도매 및 소매업	83
<표 5-15>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운수업	85
<표 5-16>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숙박 및 음식점업	85
<표 5-17>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6
<표 5-18>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체계 정리(농업)	87
<표 5-19>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체계 정리(제조업)	89
<표 5-20>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체계 정리(도매 및 소매업)	92
<표 5-21>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체계 정리(기타)	93
<표 5-22> 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한 농업법인 사업범위 분류	94

## 그림 목 차

---

### 제1장

<그림 1-1> 연구보고서 흐름도 ..... 6

### 제3장

<그림 3-1> 자료처리 과정 ..... 15

### 제4장

<그림 4-1>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체계 ..... 40  
<그림 4-2> 농업법인 실태조사 법인등록번호 중복 사례 ..... 54  
<그림 4-3> Main, 조합원, 출자자 등 법인등록번호 오기입 사례 ..... 55





# 제 1 장

## 서 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농업법인 제도는 UR 대책의 일환으로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전업 농 육성과 더불어 경영체 육성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어 옴.
- 농업법인을 통한 경영체 육성사업은 인적자원의 전문성 확보 및 육성차원의 유리성, 자본 조달의 유리성, 경영관리의 효율성 등의 이점을 근간으로 개별 농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전반적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경영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 조합형 법인(인적 결합체)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업적 농업 경영조직
  - 농업회사법인 : 회사형 법인(자본 결합체)으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하는 자가 설립한 기업적 농업경영 조직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농업법인은 16,482개소(영농조합법인 11,599, 농업회사법인 4,883)로 2000년 5,575개소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으며, 고품질·규격생산, 대량거래를 통한 산지유통 강화, 지역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옴으로써 지역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옴.
- 농업법인의 양적확대에는 제도발족 당시(1990년)의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 제정 당시(1994년)의 농업법인의 생산자 단체 규정 및 정책자금지원 확대, 농업법인의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성격의 농기업경영자금 신설(1996년) 및 2000년 이후 농업법인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농기업경영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강화, 사업규모 확대 및 사업영역의 다각화, 유망 수출법인경영체에 대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사업의 성과에 기인하여 옴.



-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 설립통지제(1999년) 폐지 이후 관리상 공백 발생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비정상적 운영 및 부실법인 증가
  - 농업법인실태조사(2011년) : 조사대상 31,871개소 중 10,183개소가 1년 이상 장기휴면 법인
  - 농업법인실태조사(2014년) : 조사대상 44,301개소 중 임시·장기휴면 법인 9,681개소, 미 운영 및 불명 8,479개소로 파악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208호)을 일부 개정 공포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부실법인에 대한 정비 및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 농업·농촌 발전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농어업법인조사와의 조사대상자의 불일치 및 중복 조사 문제, 부실법인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 더 나아가 조사결과의 활용도 문제, 관련 DB와의 연계 문제 등을 겪고 있음.
  - 농업법인조사 : 농업법인 현황조사를 통해 정책 기초자료 생성을 목적으로 법원행정처의 등기법인 중 국세청 법인세 신고를 마친 운영법인 대상 조사
  - 실태조사 :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법인 관리를 목적으로 법원행정처의 등기 농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계통을 통하여 조사 중인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한 농업법인 구체적 실태 파악
  - 둘째, 농업법인 실태조사 DB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개선점 제시
  - 셋째, 법에 명시한 실태조사 후속조치와 관련된 기초조사를 수행 농업법인 사후관리 강화 방안 제시
  - 넷째, 농업경영체의 6차산업화, 복합산업화 등 농관련 사업으로의 영역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농산업 취/창업 등 주요 농림사업계획 목표와 연계 가능한 농업법인의 신규 사업 범위 발굴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 분석
  - 법인체 일반현황, 사업내용, 출자현황, 농지소유 여부, 설립요건 등 분석
  - 부실 법인 실태 및 운영 중인 법인의 특성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 농업법인 통계조사와의 조사 모집단 통일
- 농업법인 실태조사 개선점 제시
  - 자료수집방법, 조사일정, 조사주기, 조사항목, 조사체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사표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개선방안 도출
  - 조사기관, 관리기관, 실행기관, 사후관리기간관 역할분담 및 지속적 관리 방안 마련
- 농업법인 실태조사 DB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통계청으로부터 이관된 농업법인 통계조사와 실태조사 결과를 연계, 농업법인 D/B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 농업법인 조사 결과 DB와 경영체 등록 DB간 연계 및 통합방안 검토
- 실태조사 후속조치와 관련된 기초조사를 수행 농업법인 사후관리 강화 방안 제시
  - 실무영역에서의 부실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조치(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 청구 등)방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 검토
  - 선진 사례 연구 및 타 산업분야 사후관리 방안 검토
- 복합산업화, 6차산업화 등 농업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 농산업 취/창업 등 농림사업계획 정책목표와 연계한 활용 가능한 농업법인의 신규 사업범위 발굴

### 나.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 검토
  -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208호) 및 상법 등 관련 법률 검토
  - 실태조사와 관련된 타 부문의 조사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찰
-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의 통계분석 및 향후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 도출
  - 농업법인 세부조사 자료에 대한 data editing

-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한 기술통계 분석 및 집단에 대한 통계적 검정
  - 농어업법인조사, 농업실태조사 및 경영체 DB간 조사 개요 및 조사항목 검토
- 농업법인 실태조사 조사 활용도 제고 및 후속조치에 대한 관계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및 FGI 수행
- 부실 법인에 대한 판단기준, 원인, 후속조치,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및 개선 방안
  - 농어업법인조사 및 실태조사 조사항목 개선 및 농림사업계획과 연계를 위한 행정계통의 실무 담당자 의견 수렴
  - 농업법인과 관계된 정책담당자, 농업법인 대표,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에 대한 실무적 의견 수렴

### 3. 보고서 구성

-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하여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관련제도, 정책,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부록으로 농업법인 운영실태 세부조사표(안), 지역별 농업법인 일반현황 분석 결과,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지역별 사업범위 분석 결과를 수록함.
-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보고서구성으로 이루어짐.
- 제2장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관한 고찰에서는 실태조사의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과정(경과), 문제점, 개선사항 순으로 정리함.
- 제3장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함. 농업법인의 지역별 분포, 설립연도별 분포, 운영현황, 사업범위, 종사자수 등 현황분석을 실시함.
- 제1절에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총괄적인 조사 개요를 정리하고, 제2절에서는 53,155개의 Raw Data Sheet별로 자료구성 및 처리과정을 기술함. 제3절에서는 기초분석 및 세부실태 분석을 실시함.
- 제4장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개선방안에서는 실태조사를 분석해보고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와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 진행 후 개선방안을 정리함.
- 제1절은 농업법인 실태조사 내용 및 추진체계, 제2절은 조사 담당 공무원 의견, 실태조사표 조사항목·타 부처 법인실태조사·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개선 방향성 검토를 통해서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제3절은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및 분석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일관된 연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조사표 개선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실태 조사 개선방안을 정리함.

- 제5장 농업법인 사업범위 연구는 법령과 관련문헌을 통해 기존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명확히 분류하고 확대방안을 검토함.
  - 제1절은 농업법인 사업범위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관련법령을 통해 정리함. 제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함. 제3절에서는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실태를 분석함. 제4절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하의 기존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명확히 유형화함. 또한 기존 사업범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신규사업범위를 검토함.
  
-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을 흐름도를 통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보고서 흐름도

## 제2장

###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관한 고찰

#### 1. 추진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 세제감면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을 통한 농업법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함. 이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 농업법인의 수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표 2-1> 농업법인 수와 규모의 변화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4	2009	2014
법인수	2,130	3,467	12,688
(매출 10억원 이상)	(654)	(1,208)	(3,738)
종사자수	29,103	37,681	102,29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법인 수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적 관리 부재에 따라 비정상적인 법인 운영 사례 또한 증가함. 따라서 농업법인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 1999년 설립 통지에 폐지로 인해 사후관리의 한계가 드러났고 일부 등기소의 소홀한 설립요건 심사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농업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2014년 실태조사 결과 44,301개소의 농업법인 중에서 장기휴면상태인 법인은 8,323개소, 소재지불명은 8,479개소임. 이에 따라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운영 중인 법인과 운영 실적이 없는 법인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확산이 커지고 있음.
  -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농업법인 실지감사에서 농업법인 지원 및 사후관리의 미흡을 지적함.

- 최근주요보도 : 농지 목적 외 사용 농업법인에 총 26억 원 추정(영농·가공·유통 등 설립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노려 되팔고 있는 농업법인 존재), 농업법인 절반 유령법인 일벌백계를(경남지역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이 '유령 농업법인'), “전북도, 농업법인 관리부실”등 지적(무분별한 농업법인 설립, 자체 실태조사 및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 존재. 따라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한 대대적인 정비작업 필요).
-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농업법인 등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함('15.1.6개정, 7.7. 시행).
  - 지속적 실태조사 실시함.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조사항목 및 구체적 법제화를 추진함(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설립요건·사업범위 위반시 시정명령, 해산명령, 과태료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후속조치).
- 금년에 실시되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제도개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조사로써 실태조사 후 확인된 문제법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이로써 부실법인을 정비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농업법인의 부정적 인식을 낮추고 농업·농촌 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

## 2. 추진과정(경과)

- 1994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농업법인이 정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인들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하고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2000년부터는 통계청으로 농업통계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에 관한 통계(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를 통계청에서 작성되고 있음.
- 1995년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자단체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면서 농업기계화 영농단을 모태로 한 위탁영농회사설립에서 법인 설립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농업법인의 설립이 과열되어 정책사업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1997년부터는 법인의 설립추이가 점차 둔화됨.
- 1997년 농림부에서 농업법인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시·군 행정에 지침을 부여함. 농업법인 관리카드에 따르면 총 4,906개소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이 3,487개(71%), 농업회사법인이 1,419개(29%)를 차지함.
- 2000년 4월 통계작성 승인(승인번호 제 10155호)을 시작으로 통계청의 농어업법인조사보

고서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함. 처음 실시된 조사에서는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8,060개소)로 등기된 법인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및 경영실태를 조사하였으나 2002년 조사부터는 운영 중인 농업법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규모를 축소하였고, 2011년 조사대상을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체 단위로 변경(학교, 지방자치단체, 기타 등 조사에서 제외)됨. 2012년 일반회사법인을 직접조사하는 대신에 전국사업체 조사자료로 규모만 가공 집계함.

- 통계청의 조사결과 농업법인의 수는 2001년부터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2010년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임. 이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면세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야 했기 때문.
- 2014년에 실시한 통계청 조사에서는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수를 총 14,552개소로 집계하였으며 운영 중인 농업법인 중에서 개인기업으로 전환된 출자자 개별운영 형태를 제외하고 농업법인의 형태를 유지하는 곳은 13,333개소(91.6%), 그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은 9,651개, 농업회사법인은 3,682개로 조사되었음.
- 통계청에서 조사 중인 농업법인체 조사와 달리,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는 총 2회의 조사가 실시됨. 1회차는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2회차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가 진행됨. 이는 설립통지제 폐지 이후 관리상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함. 이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함임.
- 2011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대상 31,871개소중 10,183개소가 1년 이상 장기휴면중인 법인으로 파악됨.
- 2014년도 조사대상 44,301개소 중에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26,141개소(59%)였으며 임시·장기휴면중인 농업법인은 9,681개소(21.9%), 미운영·불명 등의 농업법인은 8,479개소(19.1%) 파악됨.

### 3. 문제점

-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지자체 내에서 담당자의 미지정으로 인해 실태조사에 대한 업무미숙이 나타남. 조사업무를 이·통장에게 위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해 지자체의 이해 및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함.
- 조사 담당자마다 조사방식이 상이하여 조사의 신뢰성이 저하됨. 일부 지자체에서는 핵심



조사항목에 대해서도 구두문답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됨. 설립요건 충족 여부, 농지면적 등의 핵심사항등 중요 항목도 포함되어 있음.

- 2014년 실태조사에 따라 설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권고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법적근거의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가 미흡함. 특히 소재지 불명의 농업법인과 실태조사 항목을 미기재한 농업법인은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실태조사의 취지를 저하시킴.
- 실태조사의 후속조치 사항으로는 먼저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농업인요건, 출자액 비중)에 대한 시정명령(6개월 내)을 내릴 수 있음.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이외에도 설립요건 미충족 후 1년이 경과된 법인,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1년 이상의 장기 휴면법인에게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음. 농업법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 4. 개선사항

- 등기전산 자료와 경영체 DB등의 농업법인 관련 자료를 연계하여 일부 조사대상에 대한 사업자번호와 연락처를 사전 제공함. 이를 통해 실태조사 협조를 위한 사전안내가 가능함.
- 이·통장 등 민간인에게 조사위탁 업무를 맡기는 것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직접 현장방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음. 실태조사 실시요령을 구체화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함.
- 소재지 불명 법인은 DB로 관리하고 경영DB와 지자체를 연계하여 향후 농업법인 대상 정책(법인세 면제 등)에서 배제함.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른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현황, 사업범위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 유무 등 현황에 관한 조사항목을 추가함. 조사기간도 4개월로 연장하여 조사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내실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결과 취합의 집계, 분류과정에서 중복·누락 등 수치적 오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음. 또한 실태조사 전에 등기전산자료를 미리 등록하여 지자체 담당자는 실태조사 결과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조사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등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함. 지자체별로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제3장

### 농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 1.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분석의 요지

- 농업법인 실태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2(실태조사)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법인에 대한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주기: 3년
  - 조사내용
    - (준)조합원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 유무 등
  
- 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후속조치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시정조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비 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제19조 제2항)으로 정하는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서는 6개월 이내(시행령 제20조의2)에 이를 시정토록 하고 있음.
  - 해산명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3)
    -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등(상법 제176조)에 해당 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해산을 명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액 중 비 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출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6항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동법 제 19조 제6항의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법원의 해산청구에 따른 지자체장의 시정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등에 대해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실태분석의 주안점은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부실법인 정비 및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농업법인 관리 강화의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음.

<표 3-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업적 농업경영체</li> <li>-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적 경영체</li> <li>-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하며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 가능</li> </ul>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18조</li> <li>- 동법시행령 제 9조~1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li> <li>- 동법시행령 제17조~20조</li> </ul>
설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li> <li>-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하나 의결권 없음</li> <li>- 조합원 결원 발생시 1년 이내에 충원토록 하며 미충원시 해산사유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설립</li> <li>- 비농업인은 출자총액의 90/100까지 출자 가능</li> <li>- 출자총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8억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li> </ul>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li> <li>-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li> <li>-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li> <li>-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li> <li>- 농작업 대행</li> <li>-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li> <li>-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li> <li>- 농업경영</li> <li>-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li> <li>- 농작업 대행</li> <li>-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li> <li>-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li> <li>-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li> <li>-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li> <li>-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li> </ul>
농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가능하나 업무집행권을 가지 자 또는 등기이사 중 1/3이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li> <li>- 「농지법」 제2조 제3호</li> </ul>

## 2. 자료의 구성 및 처리 과정

### 1) 원자료의 구성

○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원자료는 4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분류 Sheet별 case는 다음과 같음.

- Main case: 53,155개소(영농조합법인 37,903, 농업회사법인 15,252)
- 조합원 case: 144,521명(조합원 141,222, 준조합원 3,299)
- 출자자 case: 27,980명(농업인 19,836, 비농업인 8,144),
- 농지 case: 24,192개소
  - 경작지 20,792(논 8,198, 밭 9,016, 과수원 903, 기타 2,675)
  - 비경작지 3,400(논 1,094, 밭 1,009, 과수원 51, 기타 1,246)

<표 3-2> 분류 sheet별 변수 주요 내용

Main sheet	조합원 sheet (영농조합법인)	출자자 sheet (농업회사법인)	농지 sheet (농업법인)
법인형태(영농/회사법인) <b>법인명</b> <b>법인등록번호</b>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계여부 경영체등록여부 운영현황 휴업 or 폐업일자 목적외사업 영위여부 핵심사업(25,177개) 영농조합세부사업범위 그밖의세부사업(2429) 회사법인세부사업범위 목적외사업 영농조합법인요건충족여부 회사법인출자비율충족여부 조합농지소유여부 농업인요건충족여부 상시근로자수 임시일용자수	<b>법인명</b> <b>법인등록번호</b> 조합원/준조합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농업인여부	<b>법인명</b> <b>법인등록번호</b> 출자자 성명 출자자 생년월일 출자자 출자금 출자자 출자비율 농업인 여부	<b>법인명</b> <b>법인등록번호</b> 구분(논/밭/과수원/기타) 농지소재지관련 변수 농지면적 경작여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요건충 족여부

## 2) 분석 자료의 처리 과정

- 농업법인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상호 자료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별로 분류된 데이터를 Main 자료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53,155개 법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그림 3-1> 자료처리 과정

### 3. 농업법인 조사 실태 분석

#### 가. 전체 법인 자료에 대한 기초 분석

##### 1) 일반 현황

○ 농업법인의 지역별 분포는 전라남도가 19.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충청남도 13.1%, 전라북도 12.8% 경기도 12.1%, 경상북도 10.0% 등 대체로 전통적 농업지역 및 농가인구가 많은 지역<sup>1)</sup>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인형태별로는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21.4%, 충청남도 14.2%, 전라북도 13.5% 순
- 농업회사법인: 경기도 19.8%, 전라남도 13.3%, 전라북도 11.4% 순

<표 3-3> 농업법인의 지역별 분포

구분	농업법인형태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강원도	3,285(8.7)	811(5.3)	4,096(7.7)
	경기도	3,393(9.0)	3,013(19.8)	6,406(12.1)
	경상남도	3,173(8.4)	1,113(7.3)	4,286(8.1)
	경상북도	3,950(10.4)	1,351(8.9)	5,301(10.0)
	전라남도	8,096(21.4)	2,022(13.3)	10,118(19.0)
	전라북도	5,104(13.5)	1,746(11.4)	6,850(12.9)
	충청남도	5,380(14.2)	1,521(10.0)	6,901(13.0)
	충청북도	2,186(5.8)	963(6.3)	3,149(5.9)
	제주특별	1,702(4.5)	963(6.3)	2,665(5.0)
	광주광역시	217(.6)	238(1.6)	455(.9)
	대구광역시	205(.5)	175(1.1)	380(.7)
	대전광역시	146(.4)	214(1.4)	360(.7)
	부산광역시	205(.5)	211(1.4)	416(.8)
	서울특별	263(.7)	495(3.2)	758(1.4)
	세종특별	151(.4)	105(.7)	256(.5)
	울산광역시	211(.6)	81(.5)	292(.5)
	인천광역시	236(.6)	230(1.5)	466(.9)
전체	37,903(100.0)	15,252(100.0)	53,155(100.0)	

○ 농업법인의 설립연도별 분포는 2009년 ‘농어업경영체법’이 제정된 이후 인 2011~2015년

1) 전국농가인구의 지역별 분포(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5) 경상북도 16.0%, 경기도 13.6%, 전라남도 12.4%, 충청남도 12.0%, 경상남도 11.4%, 전라북도 8.9%, 충청북도 6.9%, 강원도 6.8%, 제주 3.6% 특광역시 8.3% 등의 순임.

기간 동안 42.9%로 가장 높은 설립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2010년 29.1%, 1995~2000년 13.3% 순으로 비교적 최근 설립된 법인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

- 한편, 농업법인이 법률적으로 인정받게 된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위탁영 농회사의 명칭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된 1994년까지 3.3%가 설립됨. 특히 농지법 개정 (2005년)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요건을 완화하고 총 출자액 한도를 삭제한 2005년 이후부터 2010년 사이 농업회사법인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 농업법인제도의 연혁

구분	1990	1995	2009
근거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률 제4818호)	농어업경영체법 (법률 제9602호)
영 농 조 합 법 인	목적	- 농업경영의 합리화	- 협업적 농업경영
	사업	- 농수산업과 부대사업 -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농작업 대행	- 농업경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 - 농산물의 가공·수출
	농지 소유	- 농지소유 가능	- 농지소유 가능
	조합 원자 격	- 시군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경영 농민(정관)	- 농업인과 생산물의 생산자 단체(정관)
	설립	- 5인 이상의 농민 - 설립등기	- 농업인 5인 이상 - 설립등기
	비고	-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 합의 준조합원 가입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자 단체의 조합 및 준조합 원 가입 가능
농 업 회 사 법 인	목적	-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 상을 도모(위탁영농회사)	- 기업적 경영
	사업	- 농업경영 - 농작업 대행(단 3만㎡ 이내)	- 농업경영 -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 매 - 농작업 대행
	농지 소유	- 불가능	- 불가능
	주체	- 농민	-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및 농지개량조합 - 비농업인(단, 대통령령이 정 하는 비율의 범위 이내)
	비고	-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상법상 규정 준용	-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lt;표 3-5&gt; 농업법인의 설립 연도별 분포

구분		농업법인형태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설립연도	1995년 이전	1,584(4.2)	143(0.9)	1,727(3.3)
	1995~2000년	6,272(16.6)	777(5.1)	7,049(13.3)
	2001~2005년	4,489(11.8)	710(4.7)	5,199(9.8)
	2006~2010년	12,686(33.5)	2,760(18.1)	15,446(29.1)
	2011~2015년	12,474(32.9)	10,373(68.0)	22,847(43.0)
	2016년	377(1.0)	487(3.2)	864(1.6)
전체		37,882(100.0)	15,250(100.0)	53,132(100.0)

주: 결측값 및 오기입 자료 23개 생략

## 2) 법인 운영 현황

- 농업법인 중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47.3%로 나타났으며, 법인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 중 46.4%, 농업회사법인 중 49.5%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준비 중이거나 (임시)휴업 중 : 영농조합법인 21.1%, 농업회사법인 14.5%
- 폐업 및 소재 불명 : 영농조합법인 32.4%, 농업회사법인 35.4%
- 일반법인 전환 : 영농조합법인 0.1%, 농업회사법인 0.5%

&lt;표 3-6&gt; 농업법인별 법인 운영 현황

구분		농업법인형태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운영		17,579(46.4)	7,551(49.5)	25,130(47.3)
미운영	운영준비	1,552(4.1)	1,133(7.4)	2,685(5.1)
	임시휴업	526(1.4)	201(1.3)	727(1.4)
	휴업	5,911(15.6)	881(5.8)	6,792(12.8)
	폐업	6,374(16.8)	1,903(12.5)	8,277(15.6)
소재불명		5,908(15.6)	3,500(22.9)	9,408(17.7)
일반법인전환		53(0.1)	83(0.5)	136(0.3)
전체		37,903(100.0)	15,252(100.0)	53,155(100.0)

## 3) 사업범위

- 영농조합법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분석한 결과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부문이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산물 가공 57.2%, 농산물 유통 51.2% 순으로 나타남(<표 3-7>).

&lt;표 3-7&gt;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복수응답)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 범 위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18,930(75.3)
	농업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11,781(46.9)
	농작업 대행	9,099(36.2)
	농산물 공동출하	10,813(43.0)
	농산물 유통	12,870(51.2)
	농산물 가공	14,383(57.2)
	농산물 수출	7,056(28.1)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3,130(12.5)
	그밖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2,618(10.4)
합계		25,136(100.0)

주1: ( )안의 숫자는 case 중 %임.

주2: 일부 농업회사법인이 응답한 case 생략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범위간 구성(겸업) 비율을 분석한 결과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중 농산물 가공(58.3%),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53.4%), 농산물 유통(50.8%) 등 가공사업과 유통사업 부문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관련 공동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85.9%, 농산물 가공 76.6%, 농산물 공동출하 63.7%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8>).

- 농작업 대행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85.8%,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80.6%, 농산물 가공 77.5%
- 농산물 공동출하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80.2%, 농산물 가공 74.0%, 농업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69.5%
- 농산물 유통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74.7%, 농산물 가공 70.4%,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49.8%
- 농산물 가공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76.8%, 농산물 유통 63.0%,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62.7%
- 농산물 수출 : 농산물 가공 92.0%,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82.4%, 농산물 유통 63.0%, 농업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77.6%
- 농어촌 관광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80.0%, 농산물 가공 78.4%,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70.0% 등

<표 3-8>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간 구성(검업) 비율(n=25,136)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 농 조 합 사 업 범 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18,930 (100.0)	10,117 (85.9)	7,804 (85.8)	8,676 (80.2)	9,617 (74.7)	11,043 (76.8)	5,813 (82.4)	2,504 (80.0)	1,762 (67.3)
	② 농업관련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0,117 (53.4)	11,781 (100.0)	7,330 (80.6)	7,510 (69.5)	6,407 (49.8)	9,025 (62.7)	5,478 (77.6)	2,191 (70.0)	1,413 (54.0)
	③ 농작업대행	7,804 (41.2)	7,330 (62.2)	9,099 (100.0)	6,023 (55.7)	4,695 (36.5)	7,054 (49.0)	4,514 (64.0)	1,674 (53.5)	1,055 (40.3)
	④ 농산물공동출하	8,676 (45.8)	7,510 (63.7)	6,023 (66.2)	10,813 (100.0)	6,361 (49.4)	8,001 (55.6)	5,434 (77.0)	1,793 (57.3)	1,127 (43.0)
	⑤ 농산물유통	9,617 (50.8)	6,407 (54.4)	4,695 (51.6)	6,361 (58.8)	12,870 (100.0)	9,061 (63.0)	3,976 (56.3)	1,927 (61.6)	1,177 (45.0)
	⑥ 농산물가공	11,043 (58.3)	9,025 (76.6)	7,054 (77.5)	8,001 (74.0)	9,061 (70.4)	14,383 (100.0)	6,493 (92.0)	2,455 (78.4)	1,533 (58.6)
	⑦ 농산물수출	5,813 (30.7)	5,478 (46.5)	4,514 (49.6)	5,434 (50.3)	3,976 (30.9)	6,493 (45.1)	7,056 (100.0)	1,491 (47.6)	906 (34.6)
	⑧ 농어촌관광휴양	2,504 (13.2)	2,191 (18.6)	1,674 (18.4)	1,793 (16.6)	1,927 (15.0)	2,455 (17.1)	1,491 (21.1)	3,130 (100.0)	339 (12.9)
	⑨ 그밖의 목적사업	1,762 (9.3)	1,413 (12.0)	1,055 (11.6)	1,127 (10.4)	1,177 (9.1)	1,533 (10.7)	906 (12.8)	339 (10.8)	2,618 (100.0)

○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유통 사업이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의 경영 생산 62.7%, 농산물 가공 62.2% 등의 순으로 유통 및 가공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복수응답)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 업 범 위	농업의 경영 생산	5,920(62.7)
	농산물 유통	6,475(68.5)
	농산물 수출	1,680(17.8)
	농산물 가공	5,872(62.2)
	농산물 판매	6,194(35.6)
	농촌관광휴양사업	1,153(12.2)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2,382(25.2)
	종자생산 종균배양	1,931(20.4)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2,016(21.3)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1,178(12.5)
합계		9,447(100.0)

주1: ( )안의 숫자는 case 중 %임.

주2: 21개 영농조합법인이 응답한 case 생략

○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범위간 구성 비율을 분

석한 결과 농업의 경영 및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중 농산물 판매 70.1%, 농산물 유통 67.8% 등 판매와 유통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사항은 <표 3-10>과 같음.

<표 3-10>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간 구성 비율(n=9,447)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	① 농업의 경영 생산	5,920 (100.0)	4,012 (62.0)	1,268 (75.5)	3,620 (61.6)	4,148 (67.0)	862 (74.8)	1,660 (69.7)	1,414 (73.2)	1,436 (71.2)	836 (71.0)
	② 농산물 유통	4,012 (67.8)	6,475 (100.0)	1,493 (88.9)	4,802 (81.8)	4,995 (80.6)	867 (75.2)	2,026 (85.1)	1,707 (88.4)	1,761 (87.4)	1,070 (90.8)
	③ 농산물 수출	1,268 (21.4)	1,493 (23.1)	1,680 (100.0)	1,480 (25.2)	1,435 (23.2)	406 (35.2)	686 (28.8)	598 (31.0)	581 (28.8)	332 (28.2)
	④ 농산물 가공	3,620 (61.1)	4,802 (74.2)	1,480 (88.1)	5,872 (100.0)	4,777 (77.1)	874 (75.8)	1,947 (81.7)	1,627 (84.3)	1,742 (86.4)	1,048 (89.0)
	⑤ 농산물 판매	4,148 (70.1)	4,995 (77.1)	1,435 (85.4)	4,777 (81.4)	6,194 (100.0)	911 (79.0)	1,989 (83.5)	1,701 (88.1)	1,762 (87.4)	1,054 (89.5)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862 (14.6)	867 (13.4)	406 (24.2)	874 (14.9)	911 (14.7)	1,153 (100.0)	497 (20.9)	425 (22.0)	417 (20.7)	283 (24.0)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1,660 (28.0)	2,026 (31.3)	686 (40.8)	1,947 (33.2)	1,989 (32.1)	497 (43.1)	2,382 (100.0)	1,402 (72.6)	1,436 (71.2)	951 (80.7)
	⑧ 종자생산 종균배양	1,414 (23.9)	1,707 (26.4)	598 (35.6)	1,627 (27.7)	1,701 (27.5)	425 (36.9)	1,402 (58.9)	1,931 (100.0)	1,233 (61.2)	879 (74.6)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1,436 (24.3)	1,761 (27.2)	581 (34.6)	1,742 (29.7)	1,762 (28.4)	417 (36.2)	1,436 (60.3)	1,233 (63.9)	2,016 (100.0)	1,020 (86.6)
	⑩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836 (14.1)	1,070 (16.5)	332 (19.8)	1,048 (17.8)	1,054 (17.0)	283 (24.5)	951 (39.9)	879 (45.5)	1,020 (50.6)	1,178 (100.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3에 의해 농업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총 2,667개소로 농업법인 실태조사 DB의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목적 외 사업 운영 비율(8%)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으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32.3%, 숙박업 12.2%, 무역업 9.4%, 등의 순임.

<표 3-11> 농업법인별 목적 외 사업(복수응답)

구분	농업법인형태		합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목적 외 사업	숙박업	306(22.2)	113(8.8)	419(15.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478(34.7)	647(50.2)	1,125(42.2)
	수입업	127(9.2)	128(9.9)	255(9.6)
	무역업	125(9.1)	196(15.2)	321(12.0)
	건축업	69(5.0)	69(5.4)	138(5.2)
	주유소	15(1.1)	7(0.5)	22(0.8)
	목욕장업	9(0.7)	14(1.1)	23(0.9)
	기타 목적외 사업	550(39.9)	603(46.8)	1,153(43.2)
합계	1,379(100.0)	1,288(100.0)	2,667(100.0)	

주: 빈도는 중복응답 case 수치이며, ( )는 case 중 %임.

## 4) 설립 요건 및 농지 소유 현황

○ 농업법인별 설립 요건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요건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석대상 법인체 중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법인의 비중은 29.4%로 나타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요건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액에 대해 총 출자액의 9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분석대상 법인체 중 20.4%가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법인체 중 4,806개소, 9.0%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법인별 농지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사대상 영농조합법인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2,821개소, 7.4%로 분석됨.
-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소유와 관련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농업인 요건(등기이사 1/3 농업인)을 충족토록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은 331개소, 1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농업법인별 설립요건 및 농지소유 요건 충족 현황

구분		법인형태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원 5인 농업인 요건	충족	18,057(70.6)	-	-
	미충족	7,511(29.4)		
합계		25,568(100.0)		
농업인 출자비율 요건	충족	-	7,770(79.6)	-
	미충족		1,996(20.4)	
합계			9,766(100.0)	
농지소유	농지소유	2,821(7.4)	1,985(13.0)	4,806(9.0)
	농지 미소유	35,082(92.6)	13,267(87.0)	48,349(91.0)
합계		37,903(100.0)	14,940(100.0)	53,155(100.0)
업무집행권자 요건	충족	-	1,592(82.8)	-
	미충족		331(17.2)	
합계			1,923(100.0)	

## 5) 종사자 수

- 농업법인의 종사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인당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1.06명으로 나타남. 법인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이 평균 0.72명, 농업회사법인이 1.89명 수준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임시일용직의 경우 법인당 평균 3.77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인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이 4.42명, 농업회사법인은 2.16명으로 나타남.

&lt;표 3-13&gt; 농업법인의 종사자수 현황

구분		법인형태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시근로자	평균	0.72	1.89	1.06
	중위	0	0	0
	최소	0	0	0
	최대	301	442	442
	N	37,903	15,252	53,155
임시일용직	평균	4.42	2.16	3.77
	중위	0	0	0
	최소	0	0	0
	최대	37,500	2,100	37,500
	N	37,903	15,252	53,155

- 단, 전체 농업법인 고용현황은 자율기재 항목으로 고용항목과 관련하여 응답이(상시+임시 고용자수 합계=0인 경우 제외) 유효한 농업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응답률: 21.3%(전체 53,155개소 중 11,305개소)
  - 근로자 전체 평균: 22.72명(영농조합법인 29.29명, 농업회사법인 13.11명)
  - 상시 근로자 평균: 4.98명(영농조합법인 4.16명, 농업회사법인 6.12명)
  - 임시 근로자 평균: 17.74명(영농조합법인 25.42명, 농업회사법인 6.99명)

## 나. 농업법인에 대한 세부 실태 분석(운영중 법인을 중심으로)

### 1) 농업법인 운영 현황 분석

#### (1) 영농조합법인 운영 현황 분석

○ 영농조합법인의 운영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 운영 비율: 충북 50.8%, 경남 50.3%, 경북 49.4% 순
- 영농조합법인 폐업 비율: 제주 20.2%, 경기 19.5%, 경남 18.2% 순
- 영농조합법인 소재불명 비율: 경기 31.5%, 제주 20.6%, 강원 19.2% 순

<표 3-14> 영농조합법인의 지역별 세부 운영형태 현황

구분	운영형태							전체
	운영	운영준비	임시휴업	휴업	폐업	소재불명	법인전환	
강원	1,519 (46.2)	191 (5.8)	38 (1.2)	436 (13.3)	464 (14.1)	632 (19.2)	5 (.2)	3,285 (100.0)
경기	1,196 (35.2)	124 (3.7)	30 (.9)	293 (8.6)	673 (19.8)	1,070 (31.5)	7 (.2)	3,393 (100.0)
경남	1,597 (50.3)	114 (3.6)	53 (1.7)	508 (16.0)	577 (18.2)	324 (10.2)	- -	3,173 (100.0)
경북	1,953 (49.4)	188 (4.8)	58 (1.5)	646 (16.4)	670 (17.0)	432 (10.9)	3 (.1)	3,950 (100.0)
전남	3,845 (47.5)	306 (3.8)	108 (1.3)	1,431 (17.7)	1,454 (18.0)	943 (11.6)	9 (.1)	8,096 (100.0)
전북	2,602 (51.0)	200 (3.9)	55 (1.1)	926 (18.1)	724 (14.2)	596 (11.7)	1 (.0)	5,104 (100.0)
충남	2,433 (45.2)	247 (4.6)	63 (1.2)	1,092 (20.3)	944 (17.5)	590 (11.0)	11 (.2)	5,380 (100.0)
충북	1,111 (50.8)	73 (3.3)	29 (1.3)	264 (12.1)	361 (16.5)	341 (15.6)	7 (.3)	2,186 (100.0)
제주	738 (43.4)	53 (3.1)	69 (4.1)	146 (8.6)	344 (20.2)	350 (20.6)	2 (.1)	1,702 (100.0)
특 광역시	585 (35.8)	56 (3.4)	23 (1.4)	169 (10.3)	163 (10.0)	630 (38.6)	8 (.5)	1,634 (100.0)
전체	17,579 (46.4)	1,552 (4.1)	526 (1.4)	5,911 (15.6)	6,374 (16.8)	5,908 (15.6)	53 (.1)	37,903 (100.0)

주: 특광역시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광역시 및 서울, 세종 특별시

○ 설립시기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현황을 살펴 본 결과 2011~2015년 기간에 설립한 경우 운영비율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6~2010년 50.8%, 2001~2005년 41.3% 순으로 비교적 최근 설립된 법인의 운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0년 이전 설

립된 법인의 경우는 24.4~22.7% 수준으로 수혜목적으로 설립 후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5> 설립시기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현황

구분	운영형태				전체	
	운영중	미운영	소재불명	일반법인전환		
영농 조합 법인	1995년 이전	385 (24.3)	852 (53.8)	347 (21.9)	- -	1,584 (100.0)
	1995~2000년	1,421 (22.7)	3,461 (55.2)	1,378 (22.0)	12 (.2)	6,272 (100.0)
	2001~2005년	1,853 (41.3)	1,723 (38.4)	905 (20.2)	8 (.2)	4,489 (100.0)
	2006~2010년	6,441 (50.8)	4,409 (34.8)	1,816 (14.3)	20 (.2)	12,686 (100.0)
	2011~2015년	7,226 (57.9)	3,789 (30.4)	1,447 (11.6)	12 (.1)	12,474 (100.0)
	2016년	248 (65.8)	117 (31.0)	11 (2.9)	1 (.3)	377 (100.0)
전체	17,574 (46.4)	14,351 (37.9)	5,904 (15.6)	53 (.1)	37,882 (100.0)	

주1: 농업회사법인 응답 case 제외

주2: 2016년은 2016년 실태조사 기간에 일부 신규 설립된 법인 자료가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임.

- 운영 중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분석한 결과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부문이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산물 가공 56.3%, 농산물 유통 53.3% 등의 순으로 농업법인실태조사 전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복수응답)

사업범위	응답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12,769(74.8)
농업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7,733(45.3)
농작업 대행	5,949(34.8)
농산물 공동출하	7,501(43.9)
농산물 유통	9,098(53.3)
농산물 가공	9,619(56.3)
농산물 수출	4,798(28.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2,170(12.7)
그 밖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1,852(10.8)
합계	17,076(100.0)

주1: 빈도는 중복응답 case 수치이며, ( )는 case 중 %임.

주2: 농업회사법인의 응답 case(170개) 제외



- 운영 중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범위 간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12,469개소이며 이들 법인은 농산물 가공(57.6%), 농산물 유통(53.2%),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52.1%) 등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86.0%, 농산물 가공 75.8%, 농산물 공동출하 66.2%
  - 농작업 대행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85.9%,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79.36%, 농산물 가공 75.9%
  - 농산물 공동출하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80.2%, 농산물 가공 72.7%, 농업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68.2%
  - 농산물 유통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74.7%, 농산물 가공 69.3%,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49.9%
  - 농산물 가공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76.5%, 농산물 유통 65.5%,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60.9%
  - 농산물 수출 : 농산물 가공 92.2%,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82.3%, 농산물 공동출하 77.5%, 농업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77.2%
  - 농어촌 관광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78.3%, 농산물 가공 77.1%,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68.6% 등

<표 3-17>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간 구성 비율(n=17,076)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농 조합 사업 범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12,769 (100.0)	6,649 (86.0)	5,113 (85.9)	6,016 (80.2)	6,798 (74.7)	7,356 (76.5)	3,951 (82.3)	1,700 (78.3)	1,229 (66.4)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6,649 (52.1)	7,733 (100.0)	4,717 (79.3)	5,118 (68.2)	4,397 (48.3)	5,858 (60.9)	3,702 (77.2)	1,488 (68.6)	981 (53.0)
	③ 농작업대행	5,113 (40.0)	4,717 (61.0)	5,949 (100.0)	4,063 (54.2)	3,223 (35.4)	4,516 (46.9)	3,048 (63.5)	1,111 (51.2)	753 (40.7)
	④ 농산물공동출하	6,016 (47.1)	5,118 (66.2)	4,063 (68.3)	7,501 (100.0)	4,540 (49.9)	5,454 (56.7)	3,718 (77.5)	1,226 (56.5)	799 (43.1)
	⑤ 농산물유통	6,798 (53.2)	4,397 (56.9)	3,223 (54.2)	4,540 (60.5)	9,098 (100.0)	6,304 (65.5)	2,769 (57.7)	1,314 (60.6)	820 (44.3)
	⑥ 농산물가공	7,356 (57.6)	5,858 (75.8)	4,516 (75.9)	5,454 (72.7)	6,304 (69.3)	9,619 (100.0)	4,424 (92.2)	1,674 (77.1)	1,058 (57.1)
	⑦ 농산물수출	3,951 (30.9)	3,702 (47.9)	3,048 (51.2)	3,718 (49.6)	2,769 (30.4)	4,424 (46.0)	4,798 (100.0)	1,001 (46.1)	644 (34.8)
	⑧ 농어촌관광휴양	1,700 (13.3)	1,488 (19.2)	1,111 (18.7)	1,226 (16.3)	1,314 (14.4)	1,674 (17.4)	1,001 (20.9)	2,170 (100.0)	228 (12.3)
	⑨ 그밖의 목적사업	1,229 (9.6)	981 (12.7)	753 (12.7)	799 (10.7)	820 (9.0)	1,058 (11.0)	644 (13.4)	228 (10.5)	1,852 (100.0)

- 영농조합법인의 주요 설립 요건인 농업인(농업생산자 단체) 5인 이상 조합원 요건을 운영 중인 영농조합이 충족하고 있는지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법인은 78.1%로 나타난 반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인도 2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시 설립 가능하며,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 준조합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

<표 3-18> 운영형태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 충족 현황<sup>2)</sup>

구분		운영형태		전체
		운영중	미운영	
조합원 5인 농업인 요건	충족	13,737(78.1)	4,320(54.1)	18,057(70.6)
	미충족	3,842(21.9)	3,669(45.9)	7,511(29.4)
전체		17,579(100.0)	7,989(100.0)	25,568(100.0)

주1: Main sheet 응답 기준

주2: 미운영은 운영준비, 임시휴업, 휴업한 경우를 의미

- 운영 중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준조합원)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3-19>과 같으며, 이중 조합원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조합원(준조합원)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합당 조합원 수는 평균 6.99명으로 나타났으며, 준조합원이 있는 조합의 준 조합원 수는 평균 5.99명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조합당 농업인 수는 평균 6.83명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584명이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농업인은 평균 3.04명으로 분석됨.
  - 한편 영농조합 조합원 중 남성은 평균 6.07명 수준인 반면 여성은 평균 2.30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55.87세로 우리나라 평균 경영주 평균연령(64.6세)<sup>3)</sup> 대비 약 9세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됨.

2) 한편 추가적으로 조합원 sheet의 조합원 데이터를 Main sheet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운영 중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미 기재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준조합원)' 입력사항을 누락한 법인은 4,129개소(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상기 Main Sheet를 기준으로 조합원 5인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 영농조합법인 중에서도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658개소(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보완 조사나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 할 필요성이 있음.

3) 농업경영체 등록 DB의 분석결과

<표 3-19>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및 조합원 요건을 고려한 (준)조합원 특성

구분	운영형태						전체			
	운영중			미운영			조합원 5인 농업인 요건			
	조합원 5인 농업인요건			조합원 5인 농업인 요건						
	충족	미충족	전체	충족	미충족	전체	충족	미충족	전체	
조합당 조합원 (명, 개소)	평균	6.99	4.48	6.59	6.06	3.97	5.36	6.76	4.25	6.24
	중위	5	4	5	5	4	5	5	4	5
	최소	1	1	1	1	1	1	1	1	1
	최대	584	63	584	192	20	192	584	63	584
	N	13,504	2,583	16,087	4,268	2,123	6,391	17,772	4,706	22,478
조합당 준조합원 (명, 개소)	평균	5.99	3.58	5.44	3.05	2.21	2.74	5.56	3.23	4.96
	중위	3	2	3	2	2	2	3	2	2
	최소	1	1	1	1	1	1	1	1	1
	최대	163	58	163	20	7	20	163	58	163
	N	420	126	546	73	43	116	493	169	662
조합당 농업인 (명, 개소)	평균	6.83	3.51	6.32	5.81	3.01	4.91	6.58	3.29	5.92
	중위	5	3	5	5	3	5	5	3	5
	최소	1	1	1	1	1	1	1	1	1
	최대	584	62	584	192	20	192	584	62	584
	N	13,450	2,456	15,906	4,240	1,998	6,238	17,690	4,454	22,144
조합당 비농업인 (명, 개소)	평균	3.04	2.66	2.87	2.20	2.37	2.31	2.80	2.53	2.66
	중위	2	2	2	2	2	2	2	2	2
	최소	1	1	1	1	1	1	1	1	1
	최대	87	50	87	17	9	17	87	50	87
	N	1,660	1,281	2,941	662	1,053	1,715	2,322	2,334	4,656
조합원 남성 (명, 개소)	평균	6.07	3.57	5.67	5.33	3.35	4.68	5.89	3.47	5.39
	중위	5	3	5	5	3	5	5	3	5
	최소	1	1	1	1	1	1	1	1	1
	최대	554	61	554	122	17	122	554	61	554
	N	13,403	2,546	15,949	4,229	2,074	6,303	17,632	4,620	22,252
조합원 여성 (명, 개소)	평균	2.30	1.88	2.22	1.99	1.72	1.90	2.24	1.82	2.14
	중위	2	2	2	2	1	1	2	2	2
	최소	1	1	1	1	1	1	1	1	1
	최대	146	32	146	70	6	70	146	32	146
	N	6,771	1,568	8,339	1,781	907	2,688	8,552	2,475	11,027
농업인 연령 (세, 개소)	평균	55.87	55.30	55.78	57.87	58.28	58.01	56.35	56.64	56.41
	중위	56	55	56	58	58	58	56	57	56
	최소	26	25	25	27	18	18	26	18	18
	최대	84	82	84	83	87	87	84	87	87
	N	13,415	2,446	15,861	4,228	1,997	6,225	17,643	4,443	22,086

주: 조합원 5인 농업인 충족 요건 변수는 Main Sheet 자료 기준

(2) 농업회사법인 운영 현황 분석

○ 농업회사법인의 운영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농업회사법인 운영 비율: 전남 57.4%, 경북 55.3%, 전북 53.0% 순
- 농업회사법인 폐업 비율: 충남 19.7%, 경남 16.7%, 경북 14.4% 순

- 농업회사법인의 소재불명 비율: 특광역시 40.5%, 경기 29.7%, 강원 26.5% 순

<표 3-20> 농업회사법인의 지역별 세부 운영형태

구분	세부운영형태							전체
	운영	운영준비	임시휴업	휴업	폐업	소재불명	법인전환	
강원	394 (48.6)	66 (8.1)	8 (1.0)	47 (5.8)	79 (9.7)	215 (26.5)	2 (.2)	811 (100.0)
경기	1,420 (47.1)	223 (7.4)	40 (1.3)	106 (3.5)	315 (10.5)	896 (29.7)	13 (.4)	3,013 (100.0)
경남	546 (49.1)	93 (8.4)	24 (2.2)	82 (7.4)	186 (16.7)	180 (16.2)	2 (.2)	1,113 (100.0)
경북	747 (55.3)	108 (8.0)	12 (.9)	120 (8.9)	195 (14.4)	167 (12.4)	2 (.1)	1,351 (100.0)
전남	1,160 (57.4)	159 (7.9)	24 (1.2)	155 (7.7)	226 (11.2)	290 (14.3)	8 (.4)	2,022 (100.0)
전북	925 (53.0)	104 (6.0)	16 (.9)	156 (8.9)	223 (12.8)	317 (18.2)	5 (.3)	1,746 (100.0)
충남	719 (47.3)	133 (8.7)	11 (.7)	87 (5.7)	299 (19.7)	268 (17.6)	4 (.3)	1,521 (100.0)
충북	458 (47.6)	62 (6.4)	10 (1.0)	45 (4.7)	117 (12.1)	265 (27.5)	6 (.6)	963 (100.0)
제주	482 (50.1)	80 (8.3)	36 (3.7)	32 (3.3)	110 (11.4)	194 (20.1)	29 (3.0)	963 (100.0)
특 광역시	700 (40.0)	105 (6.0)	20 (1.1)	51 (2.9)	153 (8.7)	708 (40.5)	12 (.7)	1,749 (100.0)
전체	7,551 (49.5)	1,133 (7.4)	201 (1.3)	881 (5.8)	1,903 (12.5)	3,500 (22.9)	83 (.5)	15,252 (100.0)

주: 특광역시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광역시 및 서울, 세종 특별시

-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도 영농조합법인과 마찬가지로 2011~2015년 기간 동안 설립된 법인의 운영비율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995년~2000년 기간 동안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운영비율은 23.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1995년 이전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운영비율은 45.5%로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초기 설립된 법인의 운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lt;표 3-21&gt; 농업회사법인 설립시기별 운영 현황

구분	운영형태				전체	
	운영중	미운영	소재불명	일반법인전환		
농업 회사 법인	1995년 이전	65 (45.5)	59 (41.3)	18 (12.6)	1 (.7)	143 (100.0)
	1995~2000년	186 (23.9)	453 (58.3)	137 (17.6)	1 (.1)	777 (100.0)
	2001~2005년	314 (44.2)	238 (33.5)	152 (21.4)	6 (.8)	710 (100.0)
	2006~2010년	1,249 (45.3)	820 (29.7)	680 (24.6)	11 (.4)	2,760 (100.0)
	2011~2015년	5,479 (52.8)	2,388 (23.0)	2,443 (23.6)	63 (.6)	10,373 (100.0)
	2016년	257 (52.8)	159 (32.6)	70 (14.4)	1 (.2)	487 (100.0)
전체	7,550 (49.5)	4,117 (27.0)	3,500 (23.0)	83 (.5)	15,250 (100.0)	

주: 2016년은 2016년 실태조사 기간에 일부 신규 설립된 법인 자료가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임.

- 운영 중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유통 사업 부문이 69.1%, 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판매사업 66.3% 농업의 경영(생산) 62.1% 순으로 농업실태조사 농업회사법인 전체 DB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남.

&lt;표 3-22&gt;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복수응답)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응답
농업의 경영(생산)	4,494(62.1)
농산물 유통	5,000(69.1)
농산물 수출	1,260(17.4)
농산물 가공	4,451(61.5)
농산물 판매	4,799(66.3)
농촌 관광휴양사업	785(10.8)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1,725(23.8)
종자 생산 종균 배양	1,376(19.0)
농업 기계나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1,383(19.1)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795(11.0)
합계	7,238(100.0)

주1: 빈도는 중복응답 case 수치이며, ( )는 case 중 %임.

주2: 영농조합법인의 응답 case 제외

- 운영 중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범위 간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농업의 경영(생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4,494개소이며 이들 법인은 농산물 판매(71.2%), 농산물 유통(68.3%), 농산물 가공(60.5%) 등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유통: 농산물 판매 77.0%, 농산물 가공 72.3%, 농업의 경영(생산) 61.4%
- 농산물 수출: 농산물 가공 86.7%, 농산물 판매 84.8%, 농업의 경영 74.3%
- 농산물 가공: 농산물 판매 81.3%, 농산물 유통 81.2%, 농업의 경영 61.1%
- 농산물 판매: 농산물 유통 80.2%, 농산물 가공 75.4%, 농업의 경영 66.6%
- 농촌관광·휴양사업: 농산물 판매 79.6%, 농업의 경영 76.2%, 농산물 유통 74.9%
- 영농자재 생산·공급: 농산물 유통 83.7%, 농산물 판매 82.7%, 농산물 가공 79.5%
- 종자생산종균배양: 농산물 판매 88.2%, 농산물 유통 87.5%, 농업의 가공 82.8%
- 농기계·장비 임대수리: 농산물 판매 88%, 농산물 유통 87.2%, 농산물 가공 85.9%
-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농산물 유통 91.3%, 농산물 판매 91.1%, 농산물 가공 8.7%

<표 3-23>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간 구성 비율(n=7,238)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① 농업의경영(생산)	4,494 (100.0)	3,069 (61.4)	936 (74.3)	2,718 (61.1)	3,198 (66.6)	598 (76.2)	1,196 (69.3)	1,015 (73.8)	983 (71.1)	556 (69.9)
	② 농산물유통	3,069 (68.3)	5,000 (100.0)	1,113 (88.3)	3,613 (81.2)	3,851 (80.2)	588 (74.9)	1,444 (83.7)	1,204 (87.5)	1,206 (87.2)	726 (91.3)
	③ 농산물수출	936 (20.8)	1,113 (22.3)	1,260 (100.0)	1,093 (24.6)	1,068 (22.3)	265 (33.8)	485 (28.1)	421 (30.6)	391 (28.3)	228 (28.7)
	④ 농산물가공	2,718 (60.5)	3,613 (72.3)	1,093 (86.7)	4,451 (100.0)	3,618 (75.4)	584 (74.4)	1,371 (79.5)	1,139 (82.8)	1,188 (85.9)	705 (88.7)
	⑤ 농산물판매	3,198 (71.2)	3,851 (77.0)	1,068 (84.8)	3,618 (81.3)	4,799 (100.0)	625 (79.6)	1,426 (82.7)	1,213 (88.2)	1,217 (88.0)	724 (91.1)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598 (13.3)	588 (11.8)	265 (21.0)	584 (13.1)	625 (13.0)	785 (100.0)	330 (19.1)	276 (20.1)	267 (19.3)	184 (23.1)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1,196 (26.6)	1,444 (28.9)	485 (38.5)	1,371 (30.8)	1,426 (29.7)	330 (42.0)	1,725 (100.0)	976 (70.9)	984 (71.1)	640 (80.5)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1,015 (22.6)	1,204 (24.1)	421 (33.4)	1,139 (25.6)	1,213 (25.3)	276 (35.2)	976 (56.6)	1,376 (100.0)	841 (60.8)	596 (75.0)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983 (21.9)	1,206 (24.1)	391 (31.0)	1,188 (26.7)	1,217 (25.4)	267 (34.0)	984 (57.0)	841 (61.1)	1,383 (100.0)	679 (85.4)
	⑩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556 (12.4)	726 (14.5)	228 (18.1)	705 (15.8)	724 (15.1)	184 (23.4)	640 (37.1)	596 (43.3)	679 (49.1)	795 (100.0)

○ 농업회사법인의 주요 설립 요건인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 여건(총 출자금이 80억 이상인 경우 농업인 8억 이상 출자)을 충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영 중인 법인 중 84%의 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충족 법인도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4> 농업회사법인 운영형태별 농업인 출자 비율 요건

구분		운영형태		전체
		운영중	미운영	
농업인 출자비율	충족	6,341(84.0)	1,429(64.5)	7,770(79.6)
	미충족	1,210(16.0)	786(35.5)	1,996(20.4)
전체		7,551(100.0)	2,215(100.0)	9,766(100.0)

주1: Main sheet 기준

주2: 미운영은 운영준비, 임시휴업, 휴업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하 생략

- 출자금 총액이 80억이 넘는 31개 농업회사법인만을 대상으로 농업인 요건 실태를 분석한 결과, 80억 초과 법인 중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30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법인은 28개소, 93.3%로 2개 법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분석됨.

<표 3-25> 농업회사법인 운영형태별 80억 초과 농업인 요건

구분		운영형태		전체
		운영중	미운영	
농업인 8억 한도	미충족	2(6.7)	-	2(6.5)
	충족	28(93.3)	1(100.0)	29(93.5)
전체		30(100.0)	1(100.0)	31(100.0)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 업무집행권자 1/3이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토록하고 있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형태별로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요건 충족 현황을 살펴본 결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1,923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중 85.3%(1,641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 중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법인은 1,394개소 84.9%로 나타난 반면 미충족 법인도 1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6> 농업회사법인 운영 현황에 따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요건 분포

구분		운영형태		전체
		운영중	미운영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충족	1,394(84.9)	198(70.2)	1,592(82.8)
	미충족	247(15.1)	84(29.8)	331(17.2)
전체		1,641(100.0)	282(100.0)	1,923(100.0)

주: Main sheet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업무집행권자 항목 무응답 케이스 62개소 제외

-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주요 설립요건인 출자와 관련하여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에 있는 농업회사법인당 출자금 규모는 평균 630.8백만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농업인에

의한 출자금 규모는 511.6백만 원(출자금 기준 81.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출자 비율을 기준으로 이를 분석한 결과는 법인당 평균 74.4% 수준으로 분석됨.

<표 3-27> 농업회사법인의 운영형태 및 출자자 요건을 고려한 출자 현황

구분		운영형태						전체		
		운영중			미운영					
		농업인 출자비율 요건			농업인 출자비율 요건			농업인 출자비율 요건		
		총족	미총족	전체	총족	미총족	전체	총족	미총족	전체
출자금 (백만원)	평균	630.8	299.5	608.5	132.6	108.9	130.9	537.0	262.1	518.3
	중위	100.0	100.0	100.0	50.0	59.0	50.0	100.0	100.0	100.0
	최소	0.0	0.0	0.0	0.0	0.0	0.0	0.0	0.0	0.0
	최대	800,000.0	8,500.0	800,000.0	10,200.0	1,433.7	10,200.0	800,000.0	8,500.0	800,000.0
	N	5,738	414	6,152	1,331	101	1,432	7,069	515	7,584
농업인 출자금 (백만원)	평균	511.6	71.0	482.0	101.1	48.7	97.4	434.3	66.6	409.4
	중위	60.0	0.0	50.0	50.0	0.0	40.0	50.0	0.0	50.0
	최소	0.0	0.0	0.0	0.0	0.0	0.0	0.0	0.0	0.0
	최대	800,000.0	2,040.8	800,000.0	10,200.0	1,333.7	10,200.0	800,000.0	2,040.8	800,000.0
	N	5,738	414	6,152	1,331	101	1,432	7,069	515	7,584
비농업인 출자금 (백만원)	평균	119.1	228.4	126.5	31.5	60.1	33.5	102.6	195.4	108.9
	중위	0.0	50.0	0.0	0.0	30.0	0.0	0.0	50.0	0.0
	최소	0.0	0.0	0.0	0.0	0.0	0.0	0.0	0.0	0.0
	최대	99,900.0	8,500.0	99,900.0	3,590.0	493.3	3,590.0	99,900.0	8,500.0	99,900.0
	N	5,738	414	6,152	1,331	101	1,432	7,069	515	7,584
농업인 출자비율 (%)	평균	74.4	36.1	71.8	78.1	29.6	74.7	75.1	34.8	72.4
	중위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최소	0.0	0.0	0.0	0.0	0.0	0.0	0.0	0.0	0.0
	최대	105.0	105.0	105.0	103.2	100.0	103.2	105.0	105.0	105.0
	N	5,740	413	6,153	1,331	100	1,431	7,071	513	7,584
비농업인 출자비율 (%)	평균	25.5	63.9	28.1	21.8	70.4	25.2	24.9	65.2	27.6
	중위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최소	0.0	0.0	0.0	0.0	0.0	0.0	0.0	0.0	0.0
	최대	102.0	101.0	102.0	100.0	100.0	100.0	102.0	101.0	102.0
	N	5,740	413	6,153	1,331	100	1,431	7,071	513	7,584
법인당 농업인 (명)	평균	2.4	1.3	2.4	2.2	0.9	2.1	2.4	1.2	2.3
	중위	2.0	0.0	2.0	1.0	0.0	1.0	2.0	0.0	1.0
	최소	0.0	0.0	0.0	0.0	0.0	0.0	0.0	0.0	0.0
	최대	204.0	25.0	204.0	31.0	8.0	31.0	204.0	25.0	204.0
	N	5,738	414	6,152	1,331	101	1,432	7,069	515	7,584
법인당 비농업 (명)	평균	1.0	1.7	1.0	0.7	1.7	0.8	0.9	1.7	1.0
	중위	0.0	1.0	0.0	0.0	2.0	0.0	0.0	1.0	0.0
	최소	0.0	0.0	0.0	0.0	0.0	0.0	0.0	0.0	0.0
	최대	64.0	14.0	64.0	15.0	8.0	15.0	64.0	14.0	64.0
	N	5,738	414	6,152	1,331	101	1,432	7,069	515	7,584
법인당 총출자자 (명)	평균	3.4	3.0	3.4	2.9	2.6	2.9	3.3	2.9	3.3
	중위	3.0	2.0	3.0	2.0	2.0	2.0	3.0	2.0	3.0
	최소	1.0	1.0	1.0	1.0	1.0	1.0	1.0	1.0	1.0
	최대	204.0	29.0	204.0	36.0	8.0	36.0	204.0	29.0	204.0
	N	5,738	414	6,152	1,331	101	1,432	7,069	515	7,584

주1: 출자sheet를 기준으로 법인당 출자비율 합계가 105<출자금or 출자금<95은 592개소 삭제

주2: 출자비율 합계가 0인 47개소 및 출자금 합계가 0인 법인 4개소 삭제



- 또한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의 총 출자자 수는 법인당 평균 3.4명<sup>4)</sup> 수준이었으며 최대 204명이 출자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농업인은 평균 2.4명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종합하여 보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자 중 약 70% 이상은 농업인이며, 출자금의 약 80%를 출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3) 농업법인 농지 실태

- 운영 중에 있는 농업법인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영농조합의 경우 2,469개소 (14.0%)로 나타났으며, 농업회사법인은 1,729개소(22.9%)로 운영 중인 법인 중 16.7%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8> 농업법인 운영형태별 농지소유 현황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체			
	농지소유여부		소계	농지소유여부		소계	농지소유여부		합계	
	미소유	소유		미소유	소유		미소유	소유		
운영형태	운영중	15,110 (86.0)	2,469 (14.0)	17,579 (100.0)	5,822 (77.1)	1,729 (22.9)	7,551 (100.0)	20,932 (83.3)	4,198 (16.7)	25,130 (100.0)
	미운영	14,013 (97.6)	350 (2.4)	14,363 (100.0)	3,863 (93.8)	255 (6.2)	4,118 (100.0)	17,876 (96.7)	605 (3.3)	18,481 (100.0)
	소재 불명	5,906 (100.0)	2 (.0)	5,908 (100.0)	3,499 (100.0)	1 (.0)	3,500 (100.0)	9,405 (100.0)	3 (0.0)	9,408 (100.0)
	법인 전환	53 (100.0)	- (-)	53 (100.0)	83 (100.0)	- (-)	83 (100.0)	136 (100.0)	- (-)	136 (100.0)
전체	35,082 (92.6)	2,821 (7.4)	37,903 (100.0)	13,267 (87.0)	1,985 (13.0)	15,252 (100.0)	48,349 (91.0)	4,806 (9.0)	53,155 (100.0)	

- 한편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논, 밭, 과수원 등의 순으로 소유 법인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법인당 평균 보유 필지를 기준으로 논, 밭, 과수원 순으로 나타남(<표 3-29>).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소유 농지로 논의 비율이 높았으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밭에 대한 비율이 높아 농업법인 조직형태별로 소유 농지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통계청의 2014 농업법인조사 결과(운영 중인 농업법인)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당 출자자 수는 10.6명으로 본 실태조사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현장조사에서 출자자에 대한 자료요청에 농업법인체들이 불응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금번 실태조사의 출자자 sheet 기준 법인수는 8,270개인데 반해 출자자 케이스는 27,980명으로 농업회사법인당 3.39명의 자료만 입력됨).

&lt;표 3-29&gt;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 형태(다중응답)

(단위: 개소)

구분		농지소유형태			
		논	밭	과수원	기타
영농조합법인	법인수	1,353	1,171	134	574
	보유필지 평균	3.90	4.27	3.28	2.99
농업회사법인	법인수	779	980	151	447
	보유필지 평균	4.26	4.45	2.80	3.74
합계	법인수	2,132	2,151	285	1,021
	보유필지 평균	4.03	4.35	3.02	3.32

주: 농지형태별 중복 소유

&lt;표 3-30&gt;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농지별 소유 현황(다중응답)

구분		법인형태		
		영농조합법인 n=2,467	농업회사법인 n=1,727	전체 n=4,194
법인당 농지 면적 (㎡)	평균	34,379	29,502	32,371
	중위	5,676	5,280	5,575
	최소	60	60	60
	최대	27,424,253	6,881,982	27,424,253
법인당 논 면적 (㎡)	평균	8,350	6,981	7,786
	중위	1,101	0	284
	최소	0	0	0
	최대	4,507,582	3,254,000	4,507,582
법인당 밭 면적 (㎡)	평균	16,827	7,654	13,050
	중위	0	942	253
	최소	0	0	0
	최대	27,424,253	1,056,000	27,424,253
법인당 과수원 면적 (㎡)	평균	899	1,284	1,057
	중위	0	0	0
	최소	0	0	0
	최대	337,830	408,081	408,081
법인당 기타 면적 (㎡)	평균	8,304	13,584	10,478
	중위	0	0	0
	최소	0	0	0
	최대	2,761,949	6,881,982	6,881,982

주: 농지보유법인 4,198개 법인 중 총 농지면적의 합계가 0인 4개 법인 제외

- 운영 중에 있는 농업법인별로 소유한 농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면적은 평균 34,379㎡(약 3.44ha)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면적은 29,502㎡(약 2.95ha) 수준으로 규모면에서 영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소유한 농지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논은 평균 8,350㎡(0.835ha), 밭은 16,827㎡(1.68ha), 과수원은 899㎡(0.09ha) 수준이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논 6,981㎡, 밭 7,654㎡, 과수원 1,284㎡ 수준으로 분석되어, 밭에 대한 소유 규모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4) 농업법인의 종사자 실태

- 농업법인의 종사자 항목은 기재의무가 없는 항목으로 원자료(Raw data)를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종사자수를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sup>5)</sup>의 경우 법인당 평균 2.13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임시·일용직<sup>6)</sup>의 연간 인원은 평균 7.84명으로 나타남.
- 법인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1.45명, 임시·일용직 9.37명 이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상시근로자 3.72명, 임시·일용직 4.29명으로 상시근로자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가 많은 반면 임시·일용직은 영농조합법인의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lt;표 3-31&gt;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구분	영농조합법인 (n=17,579)		농업회사법인 (n=7,551)		전체 (n=25,130)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평균	1.45	9.37	3.72	4.29	2.13	7.84
최소~최대	0~301	0~37,500	0~442	0~2,100	0~442	0~37,500

- 종사자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종사자가 없는 법인 자료를 생략하고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농업법인 중 종사자가 있는 법인은 10,439개소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영농조합법인은 6,089개소(58.3%), 농업회사법인은 4,350개소(41.7%)로 나타남 (<표 3-32>).
-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상시근로자는 평균 5.1명이었으며, 임시·일용직은 18.9명으로 법인당 평균 약 24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영농조합법인: 상시근로자 4.2명, 임시·일용직 27.1명, 총 종사자 31.3명
  - 농업회사법인: 상시근로자 6.5명, 임시·일용직 7.4명, 총 종사자 13.9명

5) 1년이상 계속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출자자나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정규직

6)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의 임시 근로 제공자

<표 3-32>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종사자 현황(종사자가 있는 경우)

구분	법인형태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운영형태					운영형태				운영여부			
	운영중	미운영	소재 불명	전체	운영중	미운영	소재 불명	전체	운영중	미운영	소재 불명	전체	
상시근로자	평균	4.20	3.69	5.13	4.16	6.45	2.11	2.60	6.12	5.14	3.03	4.15	4.98
	중위	2	2	5	2	3	1	3	3	2	2	4	2
	최소	0	0	1	0	0	0	2	0	0	0	1	0
	최대	301	142	9	301	442	16	3	442	442	142	9	442
	N	6,089	497	8	6,594	4,350	356	5	4,711	10,439	853	13	11,305
임시·일용	평균	27.05	5.85	0.00	25.42	7.44	1.53	0.00	6.99	18.88	4.05	0.00	17.74
	중위	0	0	0	0	0	0	0	0	0	0	0	0
	최소	0	0	0	0	0	0	0	0	0	0	0	0
	최대	37,500	1,000	0	37,500	2,100	250	0	2,100	37,500	1,000	0	37,500
	N	6,089	497	8	6,594	4,350	356	5	4,711	10,439	853	13	11,305
종사자 합계	평균	31.25	9.54	5.13	29.59	13.89	3.64	2.60	13.11	24.02	7.08	4.15	22.72
	중위	5	5	5	5	4	2	3	4	5	3	4	5
	최소	1	1	1	1	1	1	2	1	1	1	1	1
	최대	37,500	1,007	9	37,500	2,103	252	3	2,103	37,500	1,007	9	37,500
	N	6,089	497	8	6,594	4,350	356	5	4,711	10,439	853	13	11,305

주: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 = 0인 법인 생략

(5) 목적 외 사업

○ 운영 중인 농업법인 중 해산명령 청구 대상이 되는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총 1,921개소로 농업법인 실태조사 DB의 운영 중인 농업법인(25,130개소)의 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표 3-33>),

- 운영중 영농조합법인 중 목적 외 사업 운영 법인: 973개 법인(50.7%)
- 운영중 농업회사법인 중 목적 외 사업 운영 법인: 948개 법인(49.3%)

○ 이들 농업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목적 외 사업을 사업분야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이 41.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업

16.6%, 무역업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기타 목적 외 사업이 42.6%로 다양한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영농조합법인: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33.9%, 숙박업 25.5%, 수입업 및 무역업 각각 9%
-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48.6%, 무역업 15.2%, 수입업 10.4%

<표 3-33> 운영 중인 법인의 목적 외 사업(복수응답)

구분	법인형태		합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목적 외 사업	숙박업	248 (25.5)	70 (7.4)	318 (16.6)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330 (33.9)	461 (48.6)	791 (41.2)
	수입업	88 (9.0)	99 (10.4)	187 (9.7)
	무역업	88 (9.0)	144 (15.2)	232 (12.1)
	건축업	49 (5.0)	47 (5.0)	96 (5.0)
	주유소	13 (1.3)	4 (.4)	17 (0.9)
	목욕장업	6 (.6)	10 (1.1)	16 (0.8)
	기타 목적 외 사업	366 (37.6)	453 (47.8)	819 (42.6)
합계	973(100.0)	948(100.0)	1,921(100.0)	

주: 빈도는 중복응답 case 수치이며, ( )는 case 중 %임.

## 제4장

###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개선방안

#### 1. 농업법인 실태조사 내용 및 추진체계

○ 현행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세부 항목은 <표 4-1>과 같음.

<표 4-1> 농업법인 실태조사 세부 항목

구분	조사 항목
일반현황	① 법인명 ② 대표자명 ③ 법인 대표 전화 ④ 주사무소 소재지 ⑤ 조직형태 ⑥ 법인설립연월일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운영현황	① 운영형태 ② 세부사업 ③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 인적 현황 ④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인적 현황 ⑤ 법인 농지소유 현황 ⑥ 상시 및 임시 근로자 수
응답자 및 조사자	① 응답자 인적사항 ② 조사자 인적사항

○ 현행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추진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상호명을 기준으로 농업법인 등기 전산자료를 제공 받아, 이를 각 지자체별로 실태조사 실시요령을 배부한 후 시군 담당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음(<그림 4-1>).



<그림 4-1>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체계

## 2. 농업법인 실태 조사에 대한 검토

### 1) 조사 담당 공무원 의견 검토

- 본 조사는 2016. 1. 3 ~ 4 이틀간 실태조사 조사원으로 활동한 시/군 담당공무원 50명 (Main sheet 조사원 변수를 참조)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응답률은 28%임.
- 금번 농업법인실태조사 조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조사 수행과정, 조사내용 및 agrix 입력과정에 대한 애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장 조사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3.92로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4-2>).
- 반면 조사내용의 난이도와 agrix system에 대한 업무 난이도는 각각 2.14와 2.21로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lt;표 4-2&gt; 농업법인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 의견 조사 결과

조사항목	평가점수	주요 의견
조사 수행 과정의 애로점	3.92	- 농식품부에서 제공한 기본 정보의 부정확(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및 누락 - 재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 문제 - 현장방문 법인의 비협조적 태도
조사 내용의 애로점	2.14	- 조합원, 출자자와 관련된 정보(조합원 명부나 출자금 내역 등)에 관한 문제 - 필수 기입 정보인 사업자 등록 번호
agrix 입력과정	2.21	- 입력 시스템의 입력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음. - 시스템의 불안정 - 입력항목이 많고 조사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농식품부에 대한 건의	-	- 업무과중으로 인력지원 및 행정적 지원 필요 - 농업법인의 조합원 및 출자자 정보 사전 제공 - 법인해산과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내려도 비용 문제로 해산의 어려움이 있음. 희망법인에 한해 직권으로 해산절차 간소화

주: 평가점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조사 담당자가 느끼는 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 평가(1 = 어려움 없음, 5 = 매우 어려움)

## 2) 실태조사표 조사항목별 검토

### □ 일반현황 항목

- 운영 중에 있는 농업법인 25,130개소(영농조합법인 17,579, 농업회사법인 7,551)만을 대상으로 조사표의 응답사항을 점검.
- 일반현황과 관련된 조사항목은 법인등록번호, 법인 구분, 법인명, 전화번호, 설립인, 사업자 등록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 4-3>의 결과 운영중에 있는 법인중 대표전화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법인체들이 보임.
  - 운영중인 법인체 대한 사무소·대표자 연락처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과 관련한 필수 입력 정보의 누락은 법인의 지속적 관리 및 실태 조사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lt;표 4-3&gt; 법인 일반 현황 항목

문항	응답자 Base	응답(률)	결측(률)	오류 (발생률)	비고
법인등록번호	공통	100	0		
법인구분	공통	100	0		
법인명	공통	100	0		
전화번호	영농조합	62.9	37.1	1.4	지역번호 누락, 오기입 등
	농업회사	66.7	33.3	1.8	지역번호 누락, 오기입 등
법인설립일	영농조합	100	4*	2*	오기입
	농업회사	100	1*		
사업자등록 번호	영농조합	49.4	50.6		
	농업회사	63.3	36.7	1*	0으로 오기입

주: \*는 case 숫자임.

- 농어업경영체법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33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이로 인하여 농업법인 실태 조사에서는 그 조사대상을 농업법인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법인 조직형태의 구분기준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는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유사명칭을 사용 금지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법인설립시 법원·등기소로부터 부여받은 법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고유번호로써 법인의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유념할 필요성이 있음.
  - 금번 농업법인실태조사 분석결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오분류된 케이스들 발생(<표 4-5>).
  - 따라서 현재 분류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호만을 기준으로 법인의 조직형태를 분류하는 방식은 법인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데이터 수집 및 가공·처리 단계에서 법인등록번호를 함께 고려,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높임과 더불어 농업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법인에 대한 후속조치의 판단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lt;표 4-4&gt; 법인종류별 분류 번호

법인종류	법률근거	법인분류 및 분류번호
상법법인	상법	주식회사 11, 합명회사 12, 합자회사 13 유한회사 14
민법법인	민법	사단법인 21, 재단법인 22
특수법인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3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32
	의료법	의료법인 33
	공인회계사법	회계법인 34
	한국은행법등	특별법에 의한 은행 35
	농업협동조합법	단위농협/특수농협/농협중앙회 36
	축산업협동조합법	지역별축협/업종별축협/축협중앙회 37
	수산업협동조합법	지역별수협/업종별수협/수산물제조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어촌계/수협중앙회 38
	산림조합법	산리조합중앙회/산림조합/산림계 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별중기협/업종별중기협/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연합회/중기협 중앙회 40
	신용협동조합법	신협/신협연합회 41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개량조합 및 연합회/농업진흥공사 42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43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44
	의료보험조합법	의료보험조합 45
	변호사법	법무법인 46
	상공회의소법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47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 및 연합회/상호신용기금 48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연합회 49
공업협동조합법	단위공업협동조합/특수공업협동조합/공업중앙회 50	
기타(분류할 수 없는 법인)		71
외국법인		주식회사 81, 합명회사 82, 합자회사 83, 유한회사 84, 기타 85

&lt;표 4-5&gt;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법인등록번호 기준 법인분류 결과

법인종류	법인분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계
상법법인	주식회사	33	6,266	6,299
	합명회사	2	61	63
	합자회사	6	91	97
	유한회사	7	986	993
민법법인	사단법인	1	1	2
특수법인	학교법인	5	-	5
	사회복지법인	18	1	19
	의료법인	12	-	12
	농업협동조합법인	356	1	357
	축산업협동조합법인	18	-	18
	수산업협동조합법인	2	-	2
	산림조합법인	23	-	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인	1	-	1
	신용협동조합법인	15	-	15
	농지개량조합 및 연합회	80	-	80
	새마을금고	1	-	1
	의료보험조합	1	-	1
	공업협동조합	3	-	3
기타(분류할 수 없는 법인)		16,985	143	17,128
외국법인	합명회사	-	1	1
	기타법인	1	-	1
알 수 없는 법인		9	-	9

주: 알 수 없는 법인 17(3), 23(1), 51(3), 70(1), 74(1), 91(1)

○ 또한 농업법인의 신규 설립 등기시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법인의 조직형태에 대한 성격 및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지개량 조합과 같이 농업법인 설립이 가능한 단체를 제외한 신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법인등록번호 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방법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상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형태에 따라 11~14번으로, 영농조합 법인은 71번(농업법인 설립이 가능한 특수법인 제외)으로 신규 설립 등기시 부여.

○ 한편 운영중인 농업법인 중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보된 농업법인은 영농조합 49.4%, 농업 회사법인은 63.3%로 이는 농업법인의 경영조직<sup>7)</sup>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

7) 사업자등록번호는 XXX-XX-XXXXXX 로 구성되면 가운데 두자리는 개인 또는 법인을 구분하는 코드로 활용됨. 개인구분코드는 사업자가 개인과세사업자(01~79)인지 면세사업자(90~99)인지를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며, 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영리법인의 본점(81, 86, 87, 88),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8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83),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84),

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운영현황 검토

- 운영현황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운영형태, 세부사업,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 인적 현황,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인적 현황, 법인 농지소유 현황, 상시 및 임시 근로자 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형태는 운영중인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생략하고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표 4-6> 법인 운영 현황 항목

문항	응답자 Base	응답(률)	결측(률)
세부사업	공통	97.8	2.2
핵심사업	공통	99.5	0.5
조합원요건	영농조합	100	0
출자자요건	농업회사	100	0
농지소유	공통	4,198	
등기이사요건	농업회사	1,641	
상시근로자수	공통	100	0
임시일용직	공통	100	0

주: 세부사업은 사업범위 항목 및 목적 외 사업의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함.

- 먼저 핵심사업 조사항목과 관련하여 세부조사표에서는 전체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개의 사업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응답률이 99.5%에 이르나,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개념이 모호하여 조사결과를 효율적으로 얻어내기 힘든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범위’와 ‘목적 외 사업’에서 선택하게 하거나, 세부사업과 목적 외 사업에서 우선 선택토록 한 후 추가 질문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됨.
- 조합원 요건과 관련하여 응답률은 100%(main sheet 기준)에 달하고 있으나, 조합원 sheet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 17,579개소 중 16,087개소만이 기재를 하고 있어 실제적 응답률은 91.5%로 분석되었으며, 법인설립의 주요 기준인 농업인 여부에 따른 조합원 5인 충족 요건으로는 15,906개소만이 기재되어 응답률은 90.5%로 더욱 낮아져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출자요건과 관련하여 응답률은 100%(main sheet 기준)로 나타났으나 출자자 sheet를 기

영리법인의 지점(85)을 구분하는 기준이 됨.

준으로 살펴본 결과 운영중인 농업회사법인 7,551개소 중 6,152개소만이 기재를 하고 있어 실제적 응답률은 81.5% 수준임.

- 농지소유여건 또한 운영중인 법인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영체는 4,198개소로 나타났으나, 농지 sheet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3,194개(영농조합법인 2,467, 농업회사법인 1,727) 법인으로 나타나 76.1%만이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세부 항목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기타 문제

##### ○ 조합원 데이터

- 조합원 연령: 1,380명 오기록(연령 15세~100세 기준 적용 시)

##### ○ 출자자 데이터

- 출자자 연령: 9,663명 오기록(연령 15세~100세 기준 적용 시)
- 출자비율의 문제
  - 출자비율합계가 0인 경우: 47개소
  - 출자비율 합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 592개(105<출자비율 합계 or 출자비율합계 <95 기준 적용 시)
  - 출자금 합계가 0인 경우: 4개소

##### ○ 농지 데이터

- 농지면적 합계가 0인 경우 5개소

### 3) 타 부처 법인 실태 조사 검토

- 국내 타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법인 관련 조사로는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고 중견기업 실태조사 등이 있음.
-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일컫음.

<표 4-7> 타 부처 법인 실태 조사 비교

구분	협동조합 실태조사	중견기업 실태조사
관련 규정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제6항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조사 대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에 설립신고를 제출한 협동조합의 기관장, 임금근로자, 조합원 대상	- 중견기업(규모, 상한, 독립성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조사 목적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기초자료를 획득하고, 운영,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지소 및 성장시키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자료로 활용(국가승인 통계)
조사 주기	- 2년	- 1년
조사 내용	- 사전조사: 응답자 특성, 사업운영, 여부, 사업 미운영 여부 - 기관장 조사: 응답자 특성, 사업특성, 설립 과정, 구성원 현황, 재무상황, 연대사업, 지원정책 - 임금근로자 조사: 응답자 특성, 입사 전 배경, 조합원 여부, 근무조건 - 조합원 조사: 응답자 특성, 가입배경, 커뮤니케이션 방법, 협동조합 운영현황	- 기업 일반 현황(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등) - 자금·인력 및 경영 현황 - 성장·장애 요인에 관한 사항 -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 -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국제화 촉진(수출현황, 애로사항, 전략 등) - 수·위탁거래 및 동반 성장(거래 결제 기간 및 수단, 불공정 거래 경험, 상생협력활동) - 금융 및 자금조달(용도, 자금조달원천, 애로사항 등) -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회공헌활동, 기업승계 여부 및 애로사항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중소기업청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6 참조

## □ 협동조합 실태조사<sup>8)</sup>

### ○ 조사 목적

- 2012년 12월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기초자료(설립현황, 경영자료 등)를 획득하고, 운영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협동조합 설립 추이가 과거 벤처기업 붐 시기(1998~1999)보다 높은 설립추이를 고려 기 본계획 정책마련을 성장기에 두고 이를 고려하여 실태조사 진행

### ○ 조사방법

- 방문면접 조사방법: 근로자, 조합원
- 전화조사: 사전조사, 이사장

### ○ 조사대상

- 조사시기 이전 연도 말 기준, 기획재정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6,235개 협동조합의 기 관장, 임금근로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 사전조사의 경우(성격상 농업법인 실태 조사와 유사) 2014년 말 기준 설립 신고 ⇒ 법인 등기 완료 ⇒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된 협동조합으로 결정 후 다음 과정을 통해 조사대상 자 추출
  - 설립신고기준: 기초지자체로부터 기획재정부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협동조합 중 설립신 고일이 2014년 12월말 기준 협동조합 6,235개를 1차 모집단으로 선정
  - 등기 완료: 1차 모집단 중 법인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51번(협동조합코드)인 협동 조합들을 법원 행정처에 의뢰
  - 사업자등록 완료: 법원 행정처로부터 발부받은 협동조합들의 법인번호를 기반으로 국세 청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된 협동조합을 2차 모집단(4,839개소)으로 선정

### ○ 조사기간

- 사전조사 및 본조사를 포함하여 약 100일 소요

### ○ 조사항목(세부항목은 부록 4> 참조)

- 사전조사, 이사장, 근로자, 조합원 등 4종 설문 진행

### ○ 주요 결과(2015년 협동조합실태조사 결과 기준)

- 협동조합 실태 조사는 상기 조사항목과 같이 크게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8)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상인 농업법인 실태 조사는 협동조합실태조사의 사전조사와 성격상 유사하여 이를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전조사 항목은 응답자 특성, 법인 및 사업체 등록 여부, 미등록 사유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응답자 특성: 협동조합명, 성명, 지위, 지위, 연락처, E-mail

■ 사업운영 여부: 사업체 신생설립 여부, 법인 등기 여부, 사업자 등록증 발부 여부, 매출 발생 등 사업 운영 여부

■ 사업 미운영 사유: 법인 또는 사업자 미등록 이유, 사업중단 및 폐업 이유

- 1차 모집단 분석결과

■ 유효 응답률: 85.4%(5,325개소)

■ 법인등기율: 전체 88.9%(일반협동조합 88.5%, 사회적협동조합 94.7%, 일반협동조합연합회 96.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00.0%)

■ 업종별 미등기율: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5% 순

■ 사업자 미등록률: 농업/어업 및 임업 1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9%, 숙박 및 음식점업 10.5% 순

■ 사업자 운영 여부: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은(4,309개소) 조합 중 운영중인 조합은 68.6%, 사업 중단 18.7%, 폐업 7.6%, 매출없음 0.3%, 사업 준비 중 4.8%

■ 조합유형별 운영 여부: 전체 68.6%(일반협동조합 67.8%, 일반협동조합연합회 72.7%, 사회적협동조합 83.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00.0%)

■ 협동조합 법인 및 사업자 미등록 이유: 사업추진의 불투명 35.5%, 수익모델 미비 14.9%, 조합원 미구성 12.3%, 사무실 등 등록조건 부족 10.7% 등

■ 사업중단 및 폐업 이유: 사업모델 미비 27.2%, 조합원 수의 미충족 14.6%, 사업운영자금 부족 14.3% 등

## □ 중견기업 실태조사<sup>9)</sup>

### ○ 조사의 목적

- 정부 산업 관련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의 상대적 부족

-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 제기

○ 조사방법: 면접조사, 전화, fax, E-mail 조사 병행

○ 조사대상(2015년 조사 기준)

- 2014년 재무 기준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2,979개(일반 중견기업 2,379, 관계기업 600)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표본 규모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1,152개로 설정

○ 조사항목

- 기업 일반현황,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기술혁신, 인재확보, 국제화 촉진,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금융 및 자금조달, 기업의 사회 책임 등 8개 부문, 67개 문항으로 구성

<표 4-8> 중견기업 실태 조사 항목

구분	주요 설문 내용
기업 일반현황	- 응답기업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주요 고객유형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 중소기업의 회귀 검토 경험 여부 - M&A 경험 여부 및 행태, M&A 활성화를 위한 필요정책 - 경영애로요인
기술혁신	- R&D 투자 및 설비투자 실적 및 기술개발 방식 -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 연구개발 조직/인력 현황 - 주력 기술 수준 -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및 침해 경험 여부 - 산학협력 활동 및 기관 - 기술이전 경험 및 기술이전처
인재확보	- 인력현황 및 채용실적 - 신입사원 초임 및 직원의 재직연수 - 이직 현황 및 이직 이유 - 보유인력 유형 - 성과 보상 제도 및 정년
국제화 촉진	- 해외수출 여부 및 실적(국가) - 현지법인 현황 - 수출시 애로사항 - 해외 진출 고려 여부 및 요인, 전략 - FTA활용 시스템 구축현황 및 필요 정부지원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 수·위탁거래 단계 및 거래 현황 -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및 단가인하율 - 수·위탁 기업과의 거래 결제기간 및 수단 -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경험 - 수·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금융 및 자금조달	- 자금조달 용도 및 자금조달원 - 자금조달 애로사항 - 정책자금 활용 경험 및 기관별 활용 비중
기업사회적 책임	- 사회공헌활동 수행 경험 및 유형 - 가업승계 여부 및 애로사항

주 : 중소기업청,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5

#### 4)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개선 방향성 검토

- 농업법인 실태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2(실태조사)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법인에 대한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행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주요한 조사 범주는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용 명칭에 대한 확인, 운영형태, 사업범위의 적법성, 등기부 등본에 대한 농업인 요건 확인(영농조합법인), 설립하려는 자의 농업인 여부와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요건(농업회사법인) 확인, 농지소유 현황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등 설립 요건 및 운영 요건과 관련된 사항임.
  
- 이러한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목적 달성과 실태 조사의 발전방안을 앞서 살펴본 3가지 내외부 상황과 더불어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수행함.
  - 데이터 품질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가공·분석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가?
  - 현재 시점의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결과를 차기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 농업법인 실태 조사 자료와 농업법인 관련 조사 간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 시킬 수 있는가?
  
- 상기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연계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개선은 다루지 않기로 함. 이러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농업법인과 관련한 조사 DB는 농업법인실태조사 DB, 농업법인조사(일반 조사통계 제 114049호) DB,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DB등이 있으며, 이들 DB는 모두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를 두고 주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농업법인 관련 조사 간 조사항목의 중복성이 높음.
    - 완전일치 조사 항목: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 대표 전화, 주사무소 소재지, 조직형태, 법인설립연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상시 및 임시 종사자
    - 부분일치: 사업범위, 농지소유 현황 및 경작여부, (준)조합원 및 출자자 현황
  - 농업법인 실태 조사는 농업법인조사의 조사모집단(운영 중인 법인)을 확정하는 사전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이 늘어날 수 있으며(농업법인조사 항목으로 다루는 게 보다 바람직), 조사를 담당하는 현장에도 부담으로 작용

&lt;표 4-9&gt; 농업법인 관련 조사간 조사 방법 및 조사 항목 비교

구분	농업법인 실태조사	농업법인조사	농업경영체 DB
조사 목적	설립 요건 확인 및 법인 관리의 내실화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용자·보조금 및 직불금의 효율적 관리
조사 주체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대상	등기법인 (16년 조사기준: 53,155)	운영중인 법인 (실태조사 결과: 25,130)	용자·보조금 및 직불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2017.1.1 기준: 8,300여개)
자료 수집 방법	서면조사 후 지자체담당공무원 확인	전화조사	신청접수 후 농관원 확인
조사 주기	3년	매년	등록시 및 변경사유 발생시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명</li> <li>- 법인 대표자 성명</li> <li>- 법인 대표 전화</li> <li>- 주사무소 소재지</li> <li>- 조직형태</li> <li>- 법인설립연월일</li> <li>- 법인등록번호</li> <li>- 사업자등록번호</li> <li>- 운영형태</li> <li>- 사업범위</li> <li>- 조합원 인적 현황 및 설립요건</li> <li>- 출자자 인적 현황 및 설립요건</li> <li>- 법인 농지소유 현황 및 등기이사 충족요건</li> <li>- 농지 경작 여부</li> <li>- 상시 및 임시 종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명</li> <li>- 법인 대표자 성명</li> <li>- 주사무소 소재지</li> <li>- 설립연월일</li> <li>- 법인등록번호</li> <li>- 사업자등록번호</li> <li>- 운영형태</li> <li>- 운영주체</li> <li>- 본사 지점</li> <li>- 출자</li> <li>- 종사자</li> <li>- 사업비율 및 판매액</li> <li>- 경영 경지면적</li> <li>- 농작물 재배면적</li> <li>- 가축사육 규모</li> <li>- 경영실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명</li> <li>- 법인 대표자 정보</li> <li>- 법인 연락처</li> <li>- 법인 소재지(본사/지점)</li> <li>- 조직형태</li> <li>- 설립년도</li> <li>- 사업자등록번호</li> <li>- 법인 구성원 정보(농업인 여부)</li> <li>- 출자규모(농업인 여부 출자자수, 출자액)</li> <li>- 상용근로자 수</li> <li>- 농지지목, 경영형태, 면적, 시설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직불금/보조금 신청 등</li> <li>-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경영형태</li> <li>- 농산물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처별 비율</li> <li>- 농산물 가공판매 품목 및 판매금액</li> <li>- 소득 및 자산/부채 규모</li> </ul>

#### 4. 농업법인 실태 조사 개선 방안

○ 앞서 검토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및 분석과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

○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 농업법인실태조사는 법원등기에 등록되어 있고, 법인의 명칭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 표기된 법인들에 대해 수행되는 전수조사로 현장 조사단계와 입력단계에서의 오류 발생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처리·가공·분석의 효율성 제고

- 입력된 자료가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의미한 정보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자료의 형태가 처리·가공·분석 단계에서 용이한 형태로 척도화(대상의 특성을 수량화)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됨.

##### (1)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 데이터 품질관리란 조직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DB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관리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데이터의 품질 관리 기준은 정확성, 일관성, 유용성, 접근성, 적시성, 보안성 등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농업법인 실태조사' 데이터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농업법인 실태 조사 데이터 품질관리의 문제점

○ 현장조사 단계에서의 문제

- 앞선 조사담당 공무원들의 의견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농업법인의 기본 정보(소재지, 연락처)가 부정확하고 누락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러한 이유는 부실 운영법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애로사항은 앞서 살펴본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에서도 전화번호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입력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결측률이 높게 나타남.

○ 데이터 입력단계에서의 문제점

-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의 품질 검증체제 미흡

■ 현재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의 입력은 시군의 입력시스템 담당자를 통해 승인절차를

거처 입력되고 있으며, 접속 후 법인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검색을 통하여 농업법인 목록(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참조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이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근거는 법인등록번호가 법인을 구분하는 유일한 식별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사례 존재(전체 data 중 50 case에서 중복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함에도 광역단위 지역이 상이한 운영 중인 법인도 20case 존재)

법인등록번호	지역	운영여부
1344110056035	경기	운영중
1344110056035	충남	소재불명
1344710000119	경기	폐업
1344710000119	경기	폐업
1344710000127	경기	폐업
1344710000127	경기	소재불명
1355110260865	경기	소재불명
1355110260865	서울	소재불명
1357110075004	경기	운영중
1357110075004	경기	폐업
1401710001082	강원	소재불명
1401710001082	강원	소재불명
1401710001090	강원	소재불명
1401710001090	강원	소재불명
1412710000974	강원	휴업
1412710000974	전남	소재불명
1441110002652	강원	폐업
1441110002652	전남	운영중
1441710000163	강원	휴업
1441710000163	강원	휴업
1501110008230	충북	운영중
1501110008230	충북	소재불명
1501710001733	충북	운영중
1501710001733	충북	운영중
1511710002938	경기	소재불명
1511710002938	충북	소재불명
1544710005529	강원	소재불명
1544710005529	충북	휴업
1601110412075	충남	폐업
1601110412075	대전	소재불명
1611710000302	충남	소재불명
1611710000302	충남	소재불명
1615710000362	충남	폐업
1615710000362	충남	폐업

<그림 4-2> 농업법인 실태조사 법인등록번호 중복 사례

┃ 또한 법인등록번호(13자리)가 오기입되어 입력된 사례들이 발생

법인등록번호	법인형태	설립년월일
0000000000000	영농조합법인	20130327
0000000000001	농업회사법인	20130613
0000000000002	농업회사법인	20130621
0000000000003	농업회사법인	20140116
0000000000004	농업회사법인	20141016
0000000000005	영농조합법인	20070126
0000000000006	농업회사법인	20060523
0000000000007	영농조합법인	20100218
0131100 0 32	농업회사법인	20090422
13110061282	농업회사법인	20150810
62710002039	영농조합법인	20130201

A	B	
순번	법인번호	
1	0131100 0 32	대명유통주식회사
1	0131100 0 32	대명유통주식회사
1	0131100 0 32	대명유통주식회사
1	013110061282	주식회사 선우마당
1	013110061282	주식회사 선우마당

062710002039	여수여주영농조합법인
062710002039	여수여주영농조합법인
062710002039	여수여주영농조합법인
062710002039	여수여주영농조합법인
062710002039	여수여주영농조합법인
062710002039	여수여주영농조합법인
062710002039	여수여주영농조합법인

<그림 4-3> Main, 조합원, 출자자 등 법인등록번호 오기입 사례

┃ 이러한 법인등록번호의 입력문제 외에도 전화번호, 법인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조합원(준조합원)의 생년월일, 출자자의 생년월일, 출자금액, 출자비율, 농지면적 등에 서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표 4-10> 농업법인실태조사 원자료의 주요 오기입 사례

조사항목	오기입유형	비고
전화번호	- XXX-XXXX - 0 or 000 or 000-0000 등	지역번호 생략 전화번호 오류 입력값 없음(27,272개소)
법인설립연월일	- '-' - 13200909 or 71020202 등	23개소
출자자생년월일	- '000' or 00010901 or 1018106293 등	다수
출자금액	- 0~100,000원	1,261개
출자비율	- 8,000,000 or 501 등	100이상 22개

○ 데이터 처리·가공·분석단계의 문제

- 데이터의 처리·가공·분석과정에서 용이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입력값에

대한 일관된 형태의 코드체계 마련이 필요하나 농업법인실태조사의 원천데이터는 이들 과정이 미흡한 편임.

<표 4-11> 농업법인실태조사 원자료의 주요 변수값 부여 현황

조사항목	변수입력유형	변수값	비고
법인형태	문자	009001=영농조합법인 009006=농업회사법인	체계복잡
법인설립연월일	문자	19481129	년·월·일 미분리
연계 여부 및 경영체 등록 여부	문자	Y, N	문자구조
운영여부	문자	012001=운영중 012002=미운영임시휴업 012003=미운영휴업 012005=운영준비 012006=미운영 012007=소재불명 012008=일반법인전환	조사표 변수값과 불일치 하며 순서도 맞지 않음.
세부사업범위	문자	- c_b_0,c_b_1,c_b_2, c_b_3,c_b_4,c_b_5, - 사업별로 해당된 경우=0	첫 번째는 구별이 어렵고 통계처리에 부적합 두 번째는 결측값과 구별 안됨.
핵심사업	문자	개방형	서술형태로 기재되어 범주화 필요
농지소유	문자	Y	해당되는 경우만 값 부여 결측값과 해당 없음이 구분이 되지 않음

- 또한 데이터 분석 파일이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 케이스(법인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 개선방안

- 앞선 데이터 품질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현장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금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후속조치 및 데이터 보완과정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차기 조사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조직형태와 법인 운영형태별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운영중에 있는 법인 데이터를 안정화 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조사과정에서 법인체의 비협조적 태도로 자료 수집 및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 농업법인실태조사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 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의 개발·보급 및 조사관련 교육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데이터 입력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 입력 지침을 정비하고 입력과정에서 무의미한 데이터 값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복된 데이터에 대한 입력 통제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의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데이터의 처리·가공·분석 단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력값에 대한 코드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임.
  - 농업법인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항목에 대해 적절한 변수 입력 유형과 변수값을 부여함으로써 데이터 추출시 코드화된 자료 형태로 output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코드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또한 데이터 입력에 따른 null값의 적용 기준, 기본 값의 정의, agrix 입력시스템에서의 컬럼별 도메인 정의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일관된 연속성 유지

-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됨. 이후 법인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운영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의 결과물을 통해 확정된 농업법인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실태조사 데이터의 중요성과 가치가 있음.
  - 차기 조사의 기초자료, 행정적 후속조치의 근거자료, 농업법인조사의 기초자료로서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차기 조사는 앞선 조사 연차와의 조사 항목간 지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전수조사에 따른 오류를 줄이는 방향에서 조사표 항목을 개선함으로써 확보하여야 함.

## 3) 조사표 개선

### □ 조사표 개선의 방향

-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단계의 효율성 제고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준조합원), 농업회사법인 출자현황, 농지소유 현황과 관련하여 자료의 가공, 처리 및 분석의 효율성 차원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설문 추가 및 agrix 입력시스템에서의 기능 추가 필요.
    -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 관련: 조합원 총수, 조합원 중 농업인 수, 준조합원 총 수, 준조합원 중 농업인 수
    - 농업회사법인 출자현황: 총 출자자수, 총 출자금액, 농업인 총 출자금액
    - 농지소유현황: 총 농지면적, 경작면적, 등기이사 수, 등기이사 중 농업인 수
    - 선택기재 사항인 종사자 수에 대한 문항은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여타



농업법인 조사 DB와 중복됨으로 삭제

- 데이터 입력단계에서 측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조사항목에 대한 척도값 부여
- 종사자 설문은 경우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이유로 응답률(21.3%)이 낮고, 고용자가 없는 법인과 결측값에 대한 구분이 어려움.

○ 조사의 연속성 및 변화 반영

- 차기 실태조사에서는 금번 실태조사의 농업법인별 상황을 차기 조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사표에 항목 추가.
  - 2016년 조사시 조사 대상 여부: 조사대상 법인 여부
  - 2016년 조사시 법인 운영 형태: 운영중, 운영 준비중, 임시휴업, 휴업, 해당 없음
  - 2016년 조사시 후속조치를 받았다면 후속조치 사항: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 2016년 조사시 핵심사업범위: 사업범위 및 목적외 사업 범주 중 선택
  - 2016년 조사시 사업범위 외 정관변경을 통해 추가된 사업범위

□ 농업법인실태조사 개선(안)

**농업법인 운영실태 세부조사표(안)**

※본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로 동법 제3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까지의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미 기재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1. 전기(2016년)조사 당시 기준	
조사 참여 여부	① 조사대상 법인    ② 해당 없음
법인 운영 형태	① 운영중                    ② 운영 준비중 ③ 임시휴업                ④ 휴업                    ⑤ 해당없음
법인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 사항	① 시정명령                ② 과태료 부과 ③ 해산 명령                ④ 해당없음
2016년 조사시 핵심사업	* 사업범위와 목적외사업 범위 중 선택
정관변경을 통해 추가된 사업	(* 사업범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범위 중 선택)

2. 법인 일반 현황			
법 인 명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조 직 형 태	① 영농조합법인 ② 농업회사법인	법인설립연월일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3. 운영현황			
구 분	구 분	휴업/임시휴업/폐업일	기 준
운영	①운영		
	②운영준비중		
미운영	③임시휴업		
	④휴업		
	⑤폐업		
소재불명	⑥소재불명		
일반법인전환	⑦일반법인전환		

▶ 운영현황 조사 결과가 '폐업', '소재불명', '일반법인 전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표 작성 중지

4. 세부사업		세부사업에 모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합니다.	
구 분	영농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사업 범위	① 농업의 경영(생산) 및 부대사업 ② 농업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③ 농작업대행 ④ 농산물 공동 출하 ⑤ 농산물 유통 ⑥ 농산물 가공 ⑦ 농산물 수출 ⑧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⑨ 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	① 농업의 경영(생산) ② 농산물 유통 ③ 농산물 수출 ④ 농산물 가공 ⑤ 농산물 판매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⑨ 농업기계나 그밖의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⑩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목적 외 사업	A. 숙박업 B.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C. 수입업 D. 무역업 E. 건축업	F. 주유소 G. 찜질방 H1 기타( ) H2 기타( ) H3 기타( )	
핵심 사업	( ) 전체 매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개의 사업을 사업 범위와 목적외 사업을 참조하여 선택 기재		

- ▶ 세부사업은 정관 및 해당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중복 기재
- ▶ 목적외사업이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영위하지 않을 경우 등기상 삭제 권고 및 실제 영위시 해산명령 청구사항임을 고지

5-1.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준조합원)				(추가 작성 필요시 별지1호 서식 이용)	
총 조합원 수		( )명		조합원 중 농업인 수 ( )명	
총 준조합원 수		( )명		준조합원 중 농업인 수 ( )명	
구 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농업인 여부	조합원 5인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
조합원	1				① 충족 ② 미충족
	2				
	3				
	4				
	5				
준조합원	1				
	2				
	3				
	4				
	5				

- ▶ 5인 이상의 농업인 조합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체크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인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code 번호 2로 작성

5-2. 농업회사법인 출자현황 (추가 작성 필요시 별지2호 서식 이용)							
총 출자자 수		( )명		농업인 출자자 수		( )명	
총 출자금액		( )원		농업인 총 출자금액		( )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농업인여부	출자금	출자비율	농업인 출자비율 10%이상 충족여부
출자자	1						① 충족 ② 미충족
	2						
	3						
	4						
	5						

▶ 농업인 출자비율 10%이상 충족 여부 확인 후  체크 (총 출자금이 80억 이상일 경우 농업인 8억 이상 출자 충족 여부 확인)

6. 농지 소유 현황 (추가 작성 필요시 별지3호 서식 이용)							
총 농지면적		( )㎡		경작면적		( )㎡	
등기이사 수		( )명		등기이사 중 농업인 수		( )명	
연번	지목	소유농지 소재지	농지면적 (㎡)	경작유무 ① 경작 ② 비경작	업무집행권자 1/3이상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		
1					① 충족 ② 미충족		
2							
3							
4							
5							

▶ 법인 소유의 농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소유농지 소재지 지번까지 자세히 기재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집행권자 1/3이상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7. 응답자 및 조사자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응답자			
조사자			

▶ 추가 및 보완조사를 위하여 응답자와 조사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 제5장

### 농업법인 사업범위 연구

#### 1. 농업법인 사업범위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판매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서 언급한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3(해산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 할 수 있음.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편의 도모라는 초기의 농업법인 설립 취지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생산), 농작업 대행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으로 확대되었음.
- 여기에 더불어, 농업법인 허가 사업범위는 최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을 포함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까지 확대 되었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5.1.6, 시행 2015.7.7).
- 그러나, 이러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업법인 제도 하의 농업법인 사업범위는 급변하

는 농업환경과 6차산업 활성화에 따른 확대된 농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농업법인 사업 다각화 및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현행 농업법인 제도하의 사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기준이 부재한 실정임<sup>10)</sup>. 불명확한 기준과 한정적인 정의에 입각한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대한 분류는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하고, 더 나가 일선 등기소에서 등기되는 사업들 중에서 농업법인 허가 사업범위 밖의 목적 외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업경영체법 상의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위한 정의·기준 제시와 농업법인 설립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산업 확대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범위 확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선행연구

- 농업법인 사업범위관련 선행연구는 농업 관련 산업의 확대와 6차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농산업과 6차산업의 분류와 범위 규정에 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음.
- 많은 농산업 범위관련 연구가 산업연관에 의해 기준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의 효과를 바탕으로 한 농산업 범위를 분류하는데 중점을 둬. 연구자들마다 농산업에 대한 관련 정의가 다르며, 어떠한 연관산업까지 농산업으로 분류할지에 있어서 저마다 기준이 다름. 그러나 농업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고 이에 맞추어 농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 농업관련산업(에그리비즈니스)은 1950년대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스와 골드버그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농업내의 자재공급산업, 농산물의 저장, 가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산업으로 정의됨(김철민, 2004).
- 농산업은 과거 자급자족에서 상업농으로, 노동집약적 경영에서 자본집약적 경영으로 발전해옴. 농업생산부분과 농업관련 산업간의 상호 연계성이 밀집되면서 이들 부분을 합하여 폭넓게 정의한 농산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됨(김철민 외, 2007).
- 김철민(2010)은 농림수산업을 중심으로 다른 산업에서 중간재를 구매하는 투입재 산업을

10)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요령(2016.4.)”에 ‘사업범위 조사표 항목’에서 14개 사업에 대한 정의를 제시함. 하지만, 세분화되고 확장된 농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후방 관련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농림수산물생산물을 중간재로 판매하는 사업들을 전방 관련산업으로 정의함.

- 김철민(2010)은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추정을 위하여 산업연관표 상의 전·후방 상호 의존관계 조사를 기본으로 광의의 농림수산관련산업을 농림수산업을 기준으로 농림수산투입재산업 부문, 농식품가공산업 부문, 외식산업 부문, 농림수산관련 유통산업 부문, 이들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관련산업으로 크게 6개 산업으로 분류함. 6개 산업은 다시 기준산업, 후방관련산업, 전방관련산업, 전·후방관련산업으로 분류됨.
- 본 연구는 김철민(2010)의 농림수산 관련산업 분류를 기존 농어업경영체법 하의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적용시켜, 농업법인 사업범위의 적절성 및 확대 가능성을 비교 검토함.
-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방산업 중 하나인 외식산업을 제외한 모든 농업 관련산업이 농어업경영체법 하의 농업법인 사업범위로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 김철민(2010)의 농림수산 관련산업 분류

분류	포함 산업	전·후방 관련산업	농업법인 사업범위 분류
농림수산업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농림어업서비스	기준산업	농업의 경영(생산)
농림수산투입재	비료, 농약, 농기계, 배합사료, 농림수산토목, 하천사방	후방 관련산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농식품가공산업	농산가공품, 축산가공품, 음료품	전방 관련산업	농산물 가공업
외식산업	음식점	전방 관련산업	목적 외 사업
관련유통산업	도·소매, 운수 및 보관	전방 관련산업	농산물 유통, 농산물 판매
기타관련산업	위 제외 관련 산업	전·후방 관련산업	그 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자료 : 김철민,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 추정(2010)」 p.8 참고

- 권용대 외(2013)는 도시 농산업의 지역산업과 연관효과를 분석하고자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전후방연관계수를 측정해 농산업을 농림업생산, 농업투입재, 식품 및 관련 가공, 농업 서비스 등 4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다시 19개 산업부문을 세분화하고, 마지막으로 64개 부문으로 유형별로 세분류함.
- <표 5-2>는 권용대 외(2013)의 농산업의 유형별 분류를 농어업경영체법 하의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적용시켜서 농업법인 사업범위의 적절성 및 확대 가능성을 권용대 외(2013)의 분

류와 비교 검토함.

- 비교 결과 농업관련 서비스업 중 음식점 및 숙박, 금융 및 보험업 등이 농어업경영체법 하의 농업법인 사업범위로 분류가 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으로 분류가 됨.

<표 5-2> 권용대 외(2013)의 농산업의 유형별 분류

4부문 농산업분류	19부문 농산업분류	전·후방 관련산업	농업법인 사업범위 분류
농림업생산	농산물	기준 산업	농업의 경영(생산)
	축산물		
	임산물		
농업투입재	사료	후방 관련산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석유제품		
	비료 및 농약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철강1차제품		
	수송장비		
식품 및 관련가공업	음식료품	전방 관련산업	농산물 가공업
	담배		
	목재 및 종이제품		
	의약품 및 화장품		
	기타화학제품		
농업관련 서비스업	농림어업서비스	전방 관련산업	목적 외 사업
	도소매		농산물 유통, 농산물 판매
	음식점 및 숙박		목적 외 사업
	금융 및 보험		목적 외 사업

자료 : 권용대, 임효빈. 「도시 농산업의 지역산업 연관효과 분석-대전 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2013)-」, p.135 참고

- 임송택·양승룡(2013)은 식품공급산업의 정의 및 부가가치 추계를 위하여 광의의 농림·수산 관련산업을 8가지로 분류했음. 해당연구는 한국은행 ‘2009년 산업연관표’의 403개 부문분류표를 25개 부문으로 통합, 재구성하여 각 세부산업의 범위를 설정함.
- <표 5-3>는 임송택·양승룡(2013)의 농산업의 유형별 분류를 농어업경영체법 하의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적용시켜서 농업법인 사업범위의 적절성 및 확대 가능성을 비교 검토함.
- 비교 결과, 외식산업, 기타 광공업, 기타 서비스업이 목적 외 사업으로 분류가 됨.



&lt;표 5-3&gt; 임송택·양승룡(2013)의 농림·수산 관련산업 분류

산업 분류	포함 산업	전·후방 관련산업	농업법인 사업범위 분류
농림수산업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기준산업	농업의 경영(생산)
투입재산업	농림어업서비스, 종자, 사료, 비료 및 농약, 농업용기계, 농림수산토목	후방 관련산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식품가공업	농산가공품, 축산가공품, 수산가공품, 음료품	전방 관련산업	농산물 가공업
외식산업	외식산업	전방 관련산업	목적 외 사업
식품공급유통업	식품공급 도소매, 식품공급 운수	전방 관련산업	농산물 유통, 농산물 판매
비식품가공업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담배	전방 관련산업	농산물 가공업
비식품공급유통업	비식품공급 도소매, 비식품공급 운수	전방 관련산업	농산물 유통, 농산물 판매
어메니티 산업	어메니티 산업	전방 관련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기타 광공업	기타 광공업(광산품, 소비재, 기초소재제품, 조립가공제품, 전력·가스·수도, 건설등)	후방 관련산업	목적 외 사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통신, 금융, 부동산, 공공행정등)	전방 관련산업	목적 외 사업

자료 : 임송택·양승룡. 「식품공급사업의 정의 및 부가가치 추계(2013)」

-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란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을 개발하고 외식·관광체험, 유통업을 연계한 융복합사업으로 각 지역에 있는 소규모 농가들이 지역의 토종 자원을 이용하여 작지만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등을 하는 경영형태를 뜻함(이병오, 2015.).
- 이병오(2015)는 6차산업화 정책을 점검해보기 위하여 6차산업을 농업생산, 유통, 가공, 관광체험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함.
- <표 5-4>는 이병오(2015)의 6차산업 분류를 농어업경영체법 하의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적용시켜서 농업법인 사업범위의 적절성 및 확대 가능성을 비교 검토함.
- 비교결과, 이병오에 의한 6차산업의 분류는 농업법인 사업범위 내에서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lt;표 5-4&gt; 이병오(2015)의 6차산업의 분류

분류	포함 산업	전·후방 관련산업	농업법인 사업범위 분류
농업생산	농상공융합, 고품질차별 화작물, ICT접목	기준산업	농업의 경영(생산)
유통	농산물직판장, 휴게소로 컬푸드매장, 농가맛집, 전자상거래우편판매	전방 관련산업	농산물 유통(국내, 도매), 농산물 판매(국내, 소매)
가공	전통식품·향토식품, 특산 가공품, 공예품	전방 관련산업	농산물 가공업
관광체험	그린·푸드·헬스, 투어리즘, 체험·교육농장, 식생활교육, 그린케어, 문화·복지	전방 관련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자료 : 이병오. 「6차산업화 정책의 점검과 과제(2015)」. 농정연구센터 265회 월례세미나

- 농촌 진흥청(2014)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농식품 6차산업을 유통, 가공, 관광 및 음식점, 농업서비스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함.
- <표 5-5>는 농촌 진흥청(2014)의 6차산업 분류를 농어업경영체법 하의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적용시켜서 농업법인 사업범위의 적절성 및 확대 가능성을 비교 검토함. 비교 결과, 관광 및 음식점, 농가식당 경영이 목적 외 사업으로 분류가 됨.

&lt;표 5-5&gt; 농촌 진흥청(2014)의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설문지상 업태 분류

산업부문	산업분류	전·후방 관련산업	농업법인 사업범위 분류
유통	농산물 직판장/직매장	전방 관련산업	농산물 유통, 농산물 판매
	농축산물 직거래		
	농축산물 유통(도소매)		
가공	농축산물 가공업	전방 관련산업	농산물 가공업
	농축산물 가공		
관광 및 음식점	농촌 관광사업	전방 관련산업	농촌관광휴양사업
	관광 및 음식점	전방 관련산업	목적 외 사업
	농가식당 경영	전방 관련산업	목적 외 사업
농업 서비스	농기계 작업대행(위탁영농)	후방 관련산업	농작업 대행업
	농업서비스(위탁영농, 농업서비스)	후방 관련산업	농작업 대행업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4), 설문지 참고

- 본 절은 농업관련 산업과 6차산업의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농산업을의 범위와 분류

기준을 점검함. 또한, 선행연구의 농산업과 6차산업 분류 결과를 농어업경영체법 하의 농업사업 범위와 비교함.

- 비교 결과, 농업법인 사업범위밖의 목적 외 사업으로 분류되는 외식산업(요식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특히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농업관련 산업으로 분류됨.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요식업(외식 산업) 등을 농업법인 사업범위내로 포함하여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장 할 것인지를 점검 함.

### 3.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실태 분석

- 앞 절에서 선행연구 검토 결과, 농업관련 산업이 외식산업 등을 포함하여 점점 더 확대 되는 것을 확인함. 본 절에서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의 실태 분석을 함.
- <표 3-33>에서 언급하였듯이, 운영중인 농업법인 중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총 1,921개소로 전체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7.64% 해당함.
- 이러한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세분류(<표 3-35 참조>) 하면 기타 목적 외 사업이 42.6%,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41.2%, 숙박업 16.6%, 무역업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영농조합법인: 기타 목적 외 사업 37.6%,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33.9%, 숙박업 25.5%, 수입업 및 무역업 각각 9%
  -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48.6%, 기타 목적 외 사업 47.8%, 무역업 15.2%, 수입업 10.4%

#### 1) 운영중인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의 기타 항목 분류

- 본 연구는 현재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중 ‘기타’ 항목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유사한 항목들을 묶어 기존 사업범위내의 사업 또는 기존사업범위 외의 신규사업으로 분류함.
- 전체 819개 기타 목적 외 사업 중 193개(24%)는 농업 경영(생산)등 기존 사업범위로 분류가 가능함. 나머지 626개는 기존 사업범위 외의 신규 사업범위로 분류가 가능함.

&lt;표 5-6&gt; 목적 외 사업의 기타항목 분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구분	계	구분	계
기존 사업범위	89	기존 사업범위	104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14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39
요식업	40	요식업	44
사회복지사업	29	공산품 제조, 유통, 판매	31
에너지발전업	19	농업 컨설팅업	17
공산품 제조, 유통, 판매	16	물류 및 운송업	17
일반관광업	15	에너지발전업	15
농업컨설팅업	10	보관, 창고업	11
관련없음	67	관련없음	116
기타	67	기타	59
합계	366	합계	453

주 : 기존 사업범위는 목적 외 사업 '기타'항목 중 기존 사업범위로 분류가 가능한 사업  
 관련없음은 결혼업, 유학관광사업, 여행알선업 등  
 기타는 목적외 사업 항목 재분류 후 8 미만 응답

#### □ 기존사업범위로 세부분류

-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기타' 항목 중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89개가 <표5-7> 과 같이 기존 사업으로 세부분류가 가능함.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104개가 <표 5-8> 과 같이 기존 사업으로 세부분류가 가능함.
- 이는 응답자의 단순 응답오류의 결과 일수도 있으나, 기존 사업범위에 대한 정의·분류가 명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일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기존 사업범위의 정의의 확장을 통하여 목적 외 사업의 '기타' 항목을 기존사업으로 분류가 가능함.
- 예를 들면, 곤충업의 경우는 기존의 사업범위관련 정의에 의하면 분류가 불가능 함. 하지만, 최근 곤충 사업의 증가를 반영하여 농업 경영(생산)의 정의를 기존의 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더하여 곤충업을 포함시킬 경우, 곤충업은 기존사업범위내의 농업경영(생산)으로 세부분류가 가능함.
- 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외 사업의 기타항목 중 기존 사업범위로 재분류시 농업의 경영(생산) 및 부대사업(37.1%), 농산물 유통(3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11.2%) 순으로 세부분류 됨.

&lt;표 5-7&gt; 영농조합법인 목적 외 사업 기타항목 중 기존사업범위 세부분류

사업범위 세부분류	항목
농업의 경영(생산) 및 부대사업	33(37.1%)
농업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5(5.6%)
농작업 대행	2(2.2%)
농산물 유통 (국내, 도매)	32(36%)
농산물 가공	7(7.9%)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10(11.2%)
총 합계	89(100%)

주 : 각 세부항목 옆 괄호안 숫자는 기타항목의 빈도수를 나타냄

- 운영중인 농업회사법인의 목적 외 사업의 기타항목 중 기존 사업범위로 재분류시 농업의 경영(생산)(24.0%), 농산물 판매(22.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업(20.2%) 순으로 세부분류 됨.

&lt;표 5-8&gt; 농업회사법인 목적 외 사업 기타항목 중 기존사업범위 세부분류

사업범위 세부분류	항목
농업의 경영(생산)	25(24.0%)
농산물 유통 (국내, 도매)	5(4.8%)
농산물 가공업	18(17.3%)
농산물 판매 (국내, 소매)	23(22.1%)
농어촌관광휴양사업	12(11.6%)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업	21(20.2%)
총 합계	104(100%)

#### □ 신규사업으로 세부분류

- 앞 절은 목적 외 사업 기타항목 중 기존사업 범위로 재분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세부분류 함. 이렇게 세부분류된 사업항목 중 곤충사업, 농산물 인터넷 판매업과 같은 사업 등은 기존 사업범위 정의의 확장(즉, 곤충업을 포함한 ‘농업경영(생산)’, 농산물 인터넷 판매를 포함한 ‘농산물 판매’ 사업의 정의 등)을 통해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확대 할 근거를 제시 함.
- 이와 다르게 본 절은 목적 외 사업 ‘기타’ 항목 중 예시로 제시 된 숙박업,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수입업, 무역업, 건축업, 주유소, 찜질방 그리고 기존사업범위로 재분류한 사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들을 유사한 항목으로 묶어서 세부분류함.

- 이렇게 새롭게 소개된 신규사업항목 들 중 특히 빈도 수가 높은 항목, 즉 수요가 높은 사업 항목 중, 농업법인의 설립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으로 제시되어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확대 시킬 수 있음.
- 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외 사업의 기타항목 총 143개중에서 요식업 40개(27.9%), 사회복지사업 29개(20.3%) 에너지사업 19개(13.3%) 순으로 세부분류 됨.

<표 5-9> 영농조합법인 목적외 사업 세부분류

목적외 사업 세부분류	세부항목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14(9.8%)
요식업	40(27.9%)
사회복지사업	29(20.3%)
에너지사업	19(13.3%)
공산품 제조, 유통, 판매	16(11.2%)
일반관광업	15(10.5%)
농업컨설팅	10(7.0%)
합계	143(100.0%)

주 : <표5-6>의 관련없음(67개)과 기타항목(67개)은 제외함

- 운영중인 농업회사법인의 목적 외 사업의 기타항목 총 174개 중에서 요식업 44개(25.3%), 부동산 매매·임대업 39개(22.4%), 공산품 제조, 유통, 판매 31개(17.8%) 순으로 세부분류됨.

<표 5-10> 운영중인 농업회사법인 목적 외 사업 기타항목 세부분류

목적외 사업 세부분류	항목
부동산 매매·임대업	39(22.4%)
요식업	44(25.3%)
공산품 제조, 유통, 판매	31(17.8%)
교육 및 컨설팅	17(9.8%)
물류 및 운송업	17(9.8%)
에너지사업	15(8.6%)
보관, 창고업	11(6.3%)
총 합계	174(100.0%)

주 : <표5-6>의 관련없음(116개)과 기타항목(59개)은 제외함

#### 4.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한 개선방안

- 농업법인 사업범위 제도의 운영형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업경영체법 상 농업법인이 영위 가능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그 외의 사업들은 영위 불가능하게 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따르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반대되는 방식으로서, 포괄주의보다 규제가 많고 폐쇄적인 접근 방법임.
- 농업법인 사업범위 제도와 같이 열거주의를 사례로는 「중소기업법」,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음.
- 「중소기업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3개의 절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함.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2개의 절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 동법 제2항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5개의 절과 같은 강화된 설립인가 기준이 추가로 적용됨.
  -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
  -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음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편의 도모,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등의 농업법인 설립 취지와 농어업 경영체의 소득 안정과 안전한 농수산물 및 식품 공급,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이라는 농어업경영체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제한을 두는 열거주의 방식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열거주의적 규제정책으로인한 제한적 농업법인 사업범위는 농산업을 팽창과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따라 등기소에서 실제로 등기 되는 사업들이 농업법인 제도 하에서 영위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목적 외 사업인 경우가 증가 함.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농업법인이 영위가능한 사업범위를 명확히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유형화 함. 여기에 더불어, 농업법인 설립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다각화되고 확대된 농산업을 현실을 반영하고 자 함.

## 1)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 농업법인 사업범위 분류

###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임.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목적은 통계작성과 일반행정에서 찾을 수 있음.
  - 통계작성 목적: 산업 활동에 의한 통계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서 활동카테고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



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행정 목적: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음.
-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및 보조적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
-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
  -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생산 및 서비스제공활동.
  - 보조 활동은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촉진, 수리서비스업 등이 포함됨.
- 산업결정 방법은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됨.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혹은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됨.
- 복합적인 활동단위는(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 하나의 주된 산업으로 분류하는 Top-Down 방식임.
- 분류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 중분류(2자리 숫자사용),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의 5단계로 구성됨.
- 대분류는 21개, 중분류 76개, 소분류, 228개, 세분류 487개, 세세분류 1,145개로 구성되어있음.

&lt;표 5-11&gt;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3	8	21	34
B 광업	4	7	12	17
C 제조업	24	83	180	461
D 전기,가스, 수도	2	4	6	9
E 폐기물, 환경복원	3	5	11	15
F 건설업	2	7	14	42
G 도매 및 소매	3	20	58	164
H 운수업	4	11	20	46
I 숙박 및 음식점업	2	4	8	24
J 출판,영상,정보 등	6	11	25	42
K 금융, 보험	3	8	15	33
L 부동산, 임대	2	6	13	21
M 전문,과학,기술	4	13	19	50
N 사업시설,사업지원	2	7	13	21
O 행정,국방,사회보장	1	5	8	25
P 교육서비스	1	7	16	29
Q 보건 및 사회복지	2	6	9	21
R 예술,스포츠,여가	2	4	17	43
S 협회,수리,개인	3	8	18	43
T 자가소비생산활동	2	3	3	3
U 국제 및 외국기관	1	1	1	2
	21	76	228	1,145

자료: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 p.19. 참조

## (2)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유형화

- 농어업 경영체법 하에서 영위가능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유형화 함.
  - 본 연구는 전체 21개 대분류, 76개 중분류, 228개 소분류, 487개 세분류, 1,145개 세세분류 산업으로 구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현재 농업법인이 영위가능한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6개 대분류, 14개 중분류, 30개 소분류, 52개 세분류, 102개 세세분류 산업으로 재유형화 함.
  - 본 연구의 유형화에 따른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6개 대분류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A), 제조업(C),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임.
-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6개 대분류 산업의 세부적인 산업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 임업 및 어업(A)

- 본 연구는 농업, 임업 및 어업(A)을 농업법인 영위 가능한 사업범위 관련하여 2개 중분류, 6개 소분류, 17개 세분류, 27개 세세분류 산업으로 분류함.
- 2개의 중분류와 6개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설명은 아래와 같음.

<표 5-12>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농업, 임업 및 어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011 작물 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 기타작물 재배업	01140 기타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52 채소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2 축산업	0121 소사육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2 양돈업	01220 양돈업
			0123 가금류 및 조류사육업	01231 양계업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9 기타 축산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0141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0142 축산관련 서비스업	01420 축산관련 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0 임업	020 임업
	0201 영림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2 육림업		
	0202 별목업	02020 별목업		
	0203 임산물 채취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자료: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참조

(가)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

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

①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

② 축산업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③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할 경우는 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

④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⑤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이 포함되나, 스포츠 또는 오락성의 사냥활동은 제외.

(나)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함. 야생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이 포함.

① 임업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 채취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의 4가지 세분류 산업으로 분류함.

□ 제조업(C)

○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하여 제조업은 7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24개 세분류, 53개 세세분류 산업으로 분류가 가능함.

- 이는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본 연구에서 분류한 표준산업분류상의 102개 세세분류 산

업 중 5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조업이 농업과 임업을 합한 것 보다 더 큰 비중으로, 전체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는 표준산업분류 상에서, 구입한 농·임·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농·임·어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임.

○ 7개의 중분류와 24개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설명은 다음과 같음.

<표 5-13>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 과류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2 설탕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 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20 설탕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8 동물용 사료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 제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및 조제식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1 알콜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11112 11119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청주제조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	
	12 담배제조 업	120 담배 제조업	1200	담배제조업	12001 12002	담배재건조업 담배제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1 방직가공사 제조업	1310	방직 및 가공사 제 조업	13101 13109	면 방직업 기타 방직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 업	16101 16102	일반 제재업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 목 제조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16211 16212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 조업	16221 16229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 업	16291 16292 16293 16299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1 20202 20209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 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자료: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참조

#### (가) 식료품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수산물, 과일 및 채소,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곡물, 낙농품 및 기타 식료품과 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성.

## ①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렵물을 포함한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②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및 감자를 건조, 절임, 조리, 냉동 및 기타 가공하여 과일,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잼, 젤리 및 기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주스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 ③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육지 및 수산 동·식물성 물질로 조유, 식용정제유 및 가공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착유활동도 여기에 포함.

## ④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젖(乳)을 살균, 분리, 농축 및 건조, 발효, 냉동 및 기타 가공하여 액상 및 기타 형태의 각종 식용 낙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여기에는 식용 빙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

## ⑤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각종 곡물을 도정, 제분, 압착, 분쇄, 볶음, 튀김, 조리, 조제 및 기타 가공하여 정미, 곡물분말, 거친 가루, 압맥, 튀밥, 곡물을 주재료로 한 혼합분말 및 유사 가공식품 제조, 식물성 원료로 전분, 글루텐, 타피오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포도당, 과당, 맥아당 등 당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⑥ 기타 식품 제조업

베이커리 제품을 제조하거나 각종 과자류를 제조, 곡물분말 등으로 라면, 국수 등 면류 제조, 보조 재료로 사용되는 조미료, 식품첨가물을 제조(장류, 식초 및 유사식품), 커피 및 차류, 두부 및 유사식품, 인삼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⑦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애완동물용 조제사료를 포함하여 실험용 동물, 가축 및 가금 등의 각종 동물사육용 또는 어류양식용 배합사료, 조제사료, 배합사료용 혼합조제품 및 조제보조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개껌 및 비스킷 등의 애완동물용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됨. 동물사료용의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절단·분쇄하는 활동은 여기에 포함.

## (나) 음료제조업

알콜음료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으로 구분되며, 알콜음료 제조업에는 탁주 및 약주, 청주, 맥아, 기타 발효주 제조업인 발효주 제조업과 주정 제조업, 소주 제조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인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으로 구분됨.

## ① 알콜음료 제조업

곡식, 과실 및 채소 등을 발효하여 알콜음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곡식, 과실 및 채소등을 발효시켜 증류하고 이를 정제 또는 합성하고 각종 증류주 및 합성주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함.

○ 알콜음료 제조업의 경우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곡식을 발효하여 청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등 농업의 생산물을 가공하기 때문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에 포함됨.

○ 반면에 알콜음료 제조업의 맥아 및 맥주 제조업은 대부분의 맥아밀을 수입한다는 점에서 농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비알콜음료의 도매 및 소매의 정의에 따르면 생수, 천연 또는 인조 탄산수, 과실 등을 가미한 비알콜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라는 점에서 농산물의 비중보다는 일반가공식품의 비중이 크므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에 해당되지 않음.

## (다) 담배제조업

담배제조업과 담배제품 제조업으로 구분됨.

## ① 담배제조업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각종 담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라)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식물제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등이 이에 포함됨.

○ 면 및 마 섬유의 주원료인 목화과 삼은 농가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중 농업의 경영(생산)에는 양잠업이 포함됨. 이에 따라 섬유제품 제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에 포함시킴.

## (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과 나무제품 제조업으로 되어 목재 및 나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①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제재, 대패질, 분쇄 또는 기타 표면가공하여 일반 제재목재, 화장목재, 방부처리 또는 기타 화학처리 목재, 목모, 목분, 칩상 또는 파티클상의 목재, 마루용 모자이크 판재, 침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② 나무제품 제조업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 목재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 장식용품 목제품 제조, 그 외 기타 나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 화학물, 혼합 또는 복합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산업활동이 포함.

①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순수·혼합·화합·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산업용 염화암모늄, 질산칼륨 등의 질소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

②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인쇄잉크 및 매스틱, 비누, 세정 및 광택제, 화장품, 불꽃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유도체 등 완제품 상태의 각종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

(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여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범용성의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인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과 특정 산업 혹은 일부 산업에만 이용되는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함.

①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장에서 농·임·축산물의 생산 및 출하준비과정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농업용 경작기·파종기·이앙기·수확기 등의 농업용 기계, 축산용 기계, 임업용 기계, 원예용 기계, 정원용 기계를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됨.

□ 도매 및 소매업(G)

○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하여 도매 및 소매업은 중분류는 2개, 소분류는 6개, 세분류는 8개, 세세분류는 18개 산업으로 분류함.

○ 2개의 중분류와 6개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설명은 다음과 같음.

<표 5-14>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도매 및 소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20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201	곡물 도매업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46203	사료 도매업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46205	산동물 도매업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3	4631	비가공 식품 도매업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46312	육류 도매업	
		4632	가공식품 도매업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46324	낙농품 도매업	
	465	465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7	467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4721	식료품 소매업	47211	곡물 소매업
					47212	육류 소매업
47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22		음료 및 담배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478	4785	그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5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자료: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참조

(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음.

①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가공하지 않은 농축산물 및 수렵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산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됨.

②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과실, 채소, 식용유지, 도축고기, 수산물, 설탕, 설탕과자 및 빵류, 음료, 커피, 차, 코코아 및 조미료, 가공담배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③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세세분류 산업 중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포함함.

④ 기타 전문도매업

화학제품, 연료 및 관련제품, 재생재료 및 기타 산업용 중간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세분류 산업 중 비료 및 농약 도매업을 포함함.

(나)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사인, 경매 등이 포함.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소매업은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우편등의 통신판매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함.

①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단일 경영주체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의 음료 및 식료품, 가공담배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세세분류 산업 중 비료 및 농약 도매업을 포함함.

②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사무용 기기, 사전장비 및 정밀기기, 시계 및 귀금속, 예술품 및 선물용품,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애완동물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포함.

□ 운수업(H)

- 운수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4가지 산업으로 중 분류됨.
- 4가지 중분류 산업 중, 창고업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만이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산업으로 판단됨.

<표 5-15>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운수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 운수업	52 창고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자료: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참조

(가) 창고업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창고시설 운영업, 기타 운송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세세 분류 산업 중 농산물 창고업이 포함됨.

□ 숙박 및 음식점업(I)

-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은 1개의 중분류(숙박업), 1개의 소분류(숙박 시설 운영업), 1개의 세분류(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2개의 세세분류(휴양콘도,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업) 산업으로 분류 함.

<표 5-16>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숙박 및 음식점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51 숙박시설 운영업	5511	관광숙박시설 운영 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자료: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참조

- 숙박업과 숙박시설 운영업에 대한 내용설명은 다음과 같음.

(가) 숙박업

숙박시설 운영업 및 기타 숙박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①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업은 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숙박업을 포함함. 숙박시설 운영업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있음.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이에 해당됨.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휴양콘도 운영업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만 포함함. 「농어촌정비법」 16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및 휴양 콘도 미니엄 등의 숙박시설만을 포함함.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세세분류는 제외시킴.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산장 및 방가로 운영, 유스호스텔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함. 기타 숙박업의 세세분류인 그 외 기타 숙박업은 숙식제공을 위주로 하는 고시원이 해당됨.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하여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개 중분류는, 1개 소분류, 1개 세분류, 1개 세세분류 산업으로 분류됨.

<표 5-17>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 분류체계 정리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	74	743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자료: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참조

○ 1개의 중분류와 1개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설명은 다음과 같음.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으로 구성됨.

①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여기에 포함됨.

## (3)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예시

- 앞 절에서는 농어업 경영체법 하에서 영위가능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를 기준으로 유형화 함.
- 유형화 결과,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산업은 21개 대분류 산업 중 농업, 임업 및 어업(A), 제조업(C),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의 6개 산업으로 축소 분류됨.
  - 각각의 6개 대분류 산업은 다시 농업법인 사업범위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새롭게 정리됨(<표5-12> ~ <표5-17> 참조). 여기에 더하여, 농업법인 사업범위 연관성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제고하기 위해 중분류·소분류 된 산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중·소 분류 산업의 내용 설명과 세분류, 세세분류 산업의 명칭만으로는, 특정 사업이 농어업 경영체법 하에서 농업법인이 영위가능한 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이러한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세분류 산업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 그리고 마지막 예시로 든 세세분류 사업들을 농업법인 사업범위내의 사업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선택하여 분류 함(<표 5-18> ~ <표5-21> 참조).

&lt;표 5-18&gt;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체계 정리(농업)

세세분류		예시	농업법인 사업범위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농업의 경영(생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풋마늘 및 풋고추 재배 ·파 및 양파 재배 ·아스파라거스 재배 ·참외, 수박 및 멜론 재배 ·잎 및 열매 채소 재배	농업의 경영(생산)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농업의 경영(생산)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채소, 화초, 과수 종자 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 생산 ·버섯 종균 생산 ·접수 및 삽수 묘목 생산 ·화초 종근 생산 ·벼 모판 생산	종자생산·종균배양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밤, 호도 및 대추 재배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바나나 재배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무화과 재배	농업의 경영(생산)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고추(풋고추 제외) 재배 ·생강 재배 ·정향 재배 ·녹차용 작물 재배 ·커피 재배 ·코코아 재배	농업의 경영(생산)
01140	기타작물 재배업	·인삼 재배 ·호프 재배 ·섬유작물 재배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농업의 경영(생산)

세세분류		예시	농업법인 사업범위
		·유지작물 재배 ·조물재료 작물 재배 ·낙화생 재배	
01151	콩나물 재배업	-	농업의 경영(생산)
01152	채소화웨이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농업의 경영(생산)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 ·작물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공예작물 시설재배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농업의 경영(생산)
01211	젓소 사육업	·젓소 사육 ·생우유 생산	농업의 경영(생산)
01212	육우 사육업	-	농업의 경영(생산)
01220	양돈업	·돼지 사육 ·멧돼지 사육	농업의 경영(생산)
01231	양계업	·닭 사육 ·양계장 운영 ·계란 생산 ·병아리 부화장 운영	농업의 경영(생산)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가금(닭 제외) 사육 ·조란(계란제외) 생산 ·실험용 조류 사육 ·관상용 조류 사육 ·메추리 사육 ·가금(닭 제외) 부화	농업의 경영(생산)
01291	말 및 양 사육업	·양 사육 ·양모 생산 ·당나귀 사육 ·양젓 생산 ·경주마 사육	농업의 경영(생산)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양봉업 ·실험용 쥐 생산 ·여우 및 곰 사육 ·곤충류 사육 ·토끼, 개 및 사슴 사육 ·양잠업 ·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농업의 경영(생산)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작물과 동물의 복합생산	농업의 경영(생산)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농약 뿌리기 서비스 ·작물 수확 서비스 ·농업용수 공급 ·농업 노동자 공급	농작업 대행업
01412	농산물 건조·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과실 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농업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01420	축산관련 서비스업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농작업 대행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수렵활동 ·야생 개구리 포획 ·수산 포유동물(고래 제외) 포획	농작업 대행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농업의 경영(생산)
02012	육림업	·임목지 운영 ·자연 산림내에서 임업부산물 생산	농업의 경영(생산)
02020	벌목업	·원목 생산 ·연료용 나무 생산 ·벌목업자 ·화목 생산	농업의 경영(생산)
02030	임산물 채취업	·천연 검 및 수지 채취 ·충전용 식물성 재료 채취 ·천연코르크 채취 ·편조물용 식물성 재료 채취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야생식물 채취	농업의 경영(생산)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산불방지 서비스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농작업 대행업

세세분류	예시	농업법인 사업범위
	·산림 경비 및 보조 서비스 ·수목조사 및 평가 서비스 ·목재운반 이동 서비스(별목장내)	

<표 5-19>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체계 정리(제조업)

세세분류	예시	농업법인 사업범위	
10110	도축업	- 농업의 경영(생산)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고기 통조림 제조 ·가금고기 훈제품 제조 ·가금고기 햄 제조 ·가금고기 커틀릿 제조 ·밀폐 포장한 가금고기 가공품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육지동물고기 통조림 제조 ·육지동물고기 햄, 소시지 제조 ·육지동물고기 커틀릿 제조 ·육지동물고기 건조·훈제품 제조 ·육지동물고기 분 및 조분 생산(식용 또는 비식용) ·밀폐 포장한 육지동물고기 가공품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김치류 제조 ·단무지 제조 ·오이피클 제조 ·채소 절임식품 제조 ·견과 절임식품 제조 ·과실 절임식품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제조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 ·과실 통조림 제조 ·감자의 플레이크 제조 ·감자의 분 및 조분 생산 ·과실 및 채소 잼, 젤리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소, 돼지 등) 지방 생산 ·수산동물 유지 생산 ·어류의 간유 생산 ·우각유 및 그 분획물 생산 ·라드스테아린 생산 ·올레오유 생산	농산물 가공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대두유 생산 ·옥수수기름 추출 ·식물성 왁스 생산 ·면실유 생산 ·낙화생유 생산 ·피마자유 생산	농산물 가공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마가린 제조 ·쇼트닝 제조 ·식용 가공유 생산 ·이미테이션라드 생산 ·식용 경화유 제조 ·라드 정제 생산	농산물 가공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생크림 제조 ·탈지유 제조 ·치즈 제조 ·버터밀크 제조 ·유장 제조 ·커피어 제조 ·발효유 제조 ·농축유 제조 ·치즈 제조 ·연유 제조 ·전지분유 제조 ·유당 및 유당시럽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611	곡물 도정업	·도정 쌀, 보리, 밀 생산 ·압맥 생산 ·도정 곡물 생산 ·정미소 운영	농산물 가공업
10612	곡물 제분업	·곡물 제분제품 생산 ·밀가루 및 콩가루 생산 ·제분소 운영 ·쌀가루 생산 ·줄기 및 뿌리의 분쇄물 생산 ·건조된 채두류의 분과 조분 생산	농산물 가공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만두피 제조 ·제과 및 제빵용 가루반죽 제조 ·곡분제 빵속 제조 ·곡분제 떡고물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훈제 조리곡물 제조 ·튀김곡물 제조 ·전투식량(곡물가공품) 제조	농산물 가공업



세세분류	예시	농업법인 사업범위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이눌린 제조 ·글루텐 제조 ·가용성 전분 제조 ·타피오카 제조 ·포도당 및 과당시럽 제조 ·물엿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11 떡류 제조업	·떡류 제조 ·약과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12 빵류 제조업	·케이크 제조 ·파이 제조 ·생과자 제조 ·베이커리제품 제조(신선, 냉동) ·식빵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건빵 제조 ·미과 제조 ·공캡슐 제조(전분) ·튀김과자 제조 ·코코아 버터 제조 ·코코아 분말 제조 ·캐러멜과자 제조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제조 ·설탕절임 과실, 견과 제조 ·코코아 유지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20 설탕제조업	·사탕수수 당 제조 ·사탕무 당 제조 ·전화당 제조 ·순수한 자당(고체)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메밀국수 제조 ·스파게티 제조 ·당면 제조 ·인스턴트 면류 제조 ·마카로니 제조 ·곡분제 페이스트 제품(면류)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조미료(합성) 제조 ·아미노산 제조(식품 첨가용) ·식초 대용품 제조 ·글루타민산소다 제조(식품용) ·맛소금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고추, 후추 및 계피가루 제조 ·천연 향신재료 분 제조 ·마요네즈 제조 ·케첩 제조 ·혼합양념 제조 ·김치속 제조 ·인스턴트 커리 제조 ·조제한 겨자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43 장류 제조업	·간장 제조 ·고추장 제조 ·춘장 제조 ·된장 및 청국장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누룩 및 종국 제조 ·효모(이스트) 제조(활성, 불활성) ·조제 베이킹파우더 제조 ·인조꿀 제조 ·커피크리머 제조 ·캐러멜당 제조 ·감미용 조제품 제조 ·단세포미생물 제조(죽은 것) ·죽염 제조 ·구운 소금 제조(식품용)	농산물 가공업
10791 커피 가공업	·볶은 커피 생산 ·카페인제거커피 생산 ·커피농축물 생산 ·커피대용품 제조(커피 함유한 것) ·커피 조제품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홍차(발효차) 제조 ·차 농축물과 엑스 제조 ·차류 조제품 제조 ·대용차류 제조 ·볶은 치커리 제조 ·둥글레차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유부 제조 ·묵 제조 ·두부 제조 ·순두부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인삼분말 제조 ·인삼차 제조 ·인삼즙 및 주스 제조 ·홍삼차 제조	농산물 가공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육지동물고기 혼합 엑스 제조 ·수산동물고기 혼합 엑스 제조 ·건강원	농산물 가공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조란 껍질 제거제품 생산 ·새알가공품 제조	농산물 가공업

세세분류		예시	농업법인 사업범위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배합사료 제조 ·단미사료 제조 ·비스킷 제조(동물용) ·어류용사료 제조 ·조제보조사료 제조 ·동물사료용 재료의 분쇄물 생산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모주 제조 ·곡주 제조 ·동동주 제조 ·막걸리 제조	농산물 가공업
11112	청주 제조업	-	농산물 가공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포도주 제조 ·과실발효주 제조 ·유자발효주 제조 ·생강발효주 제조 ·채소발효주 제조	농산물 가공업
12001	담배 재건조업	·담배 줄기 제거 ·담배 재건조	농산물 가공업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농산물 가공업
13101	면 방적업	·면사 제조 ·면 혼방사 제조	농산물 가공업
13109	기타 방적업	·견방사 제조 ·견노일 제조 ·마 방적 ·마사 제조 ·코이어사 제조 ·라미사 제조 ·아바카사 제조 ·사이잘마사 제조	농산물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농산물 가공업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표면새김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본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농산물 가공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보드 제조 ·배튼보드 제조 ·베니어패널 제조	농산물 가공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고밀도화 목재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 ·칩보드 제조	농산물 가공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목재 창문 제조 ·목재 문지방 제조 ·목재 문틀 제조	농산물 가공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켓트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농산물 가공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적재용 목재판 제조 ·화물용 목재 보드 제조 ·화물용 목재 파렛트 제조 ·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조	농산물 가공업
16291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목재 공구 제조 ·공구용 몸체 제조 ·공구 손잡이 제조 ·브러쉬 몸체 제조	농산물 가공업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밥주걱 제조 ·나무젓가락 제조 ·이쑤시개 제조 ·목기 제조 ·절구통 및 절구대 제조 ·솔뚜껑 제조	농산물 가공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상감세공 목재 패널 제조 ·장식용 목재갈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틀 제조 ·목재의 조상 및 장식품 제조 ·보석상자 제조	농산물 가공업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기구용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새장 및 동물우리 제조	농산물 가공업

세세분류	예시	농업법인 사업범위
	·나무못 제조 ·목재 곱, 리일 및 유사제품 제조 ·부채 및 핸드스크린 제조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무기질) ·질소화합물 제조 ·인산질 비료 제조 ·칼리질 비료 제조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무기질)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유기질 비료 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 제조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20412	농약 제조업 ·성장촉진제 제조 ·발아억제제 제조 ·생물학적 농약 제조 ·생장조절제 제조 ·살서제(취약) 제조 ·소독제 제조 ·미생물 농약 제조 ·바이러스농약 제조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경운기 및 이앙기 제조 ·콤바인 및 탈곡기 제조 ·농업용 분무기 제조 ·잔디 깎는 기계 제조 ·착유기 제조 ·선별기 및 세척기 제조(농산물용) ·부화기 제조 ·농산물용 건조기 제조 ·양봉용 기계 제조 ·농업용 관배수 기기 제조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표 5-20>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체계 정리(도매 및 소매업)

세세분류	예시	농업법인 사업범위
46201	곡물 도매업 ·쌀, 보리, 밀 도매 ·콩, 깨, 옥수수 도매 ·구근 도매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농산물 유통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곡물종자 도매 ·채소 및 과실묘목 도매 ·채소종자 도매 ·화훼종자 도매	농산물 유통
46203	사료 도매업 ·단미사료 도매 ·배합사료 도매 ·보조사료 도매 ·어류용 사료 도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꽃 및 난 도매 ·관상수 도매 ·잔디 도매 ·분재류 도매	농산물 유통
46205	산동물 도매업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농산물 유통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가족 및 가족원단 도매·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월모 및 월면 도매	농산물 유통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채소(각종 나물) 도매 ·견과류(대추, 밤, 은행 등)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농산물 유통
46312	육류 도매업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조류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농산물 유통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통조림 도매 ·햄 및 소세지 도매 ·가금육 통조림 도매 ·베이컨 도매 ·육류 훈제식품 도매	농산물 가공업
46324	낙농품 도매업 ·액상시유 도매 ·우유 분리제품 도매 ·탈지유 및 탈지분유 도매 ·생크림 도매 ·전지분유 및 가당우유 도매 ·연유 및 농축유 도매	농산물 가공업

세세분류	예시	농업법인 사업범위
	·아이스크림 도매 ·빙과류 도매	
4653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농업용 기계 도매 ·축산용 기계장비 도매 ·정원용 기계 도매 ·임업용 기계장비 도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질소비료 도매 ·복합비료 도매 ·석회 유기질 비료 도매 ·배양토 도매 ·살서제 도매 ·성장조절제 도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47211 곡물 소매업	·쌀, 보리, 밀 소매 ·콩, 팥 소매 ·옥수수 소매 ·곡물가루 소매	농산물 판매
47212 육류 소매업	·돈육, 우육 소매 ·가금육 소매 ·조류고기 소매 ·식육점, 정육점 운영	농산물 판매
47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과실 소매 ·채소(각종 나물) 소매 ·견과류(밤, 호두 등) 소매 ·고구마 및 감자 소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소매 ·감 및 꽃감 소매	농산물 판매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별꿀 소매 ·코코아 소매 ·반찬 소매 ·커피, 차류 소매 ·계란 및 조란 소매 ·유지 소매 ·면제품 소매 ·된장 및 고추장 소매 ·한약재료 소매	농산물 판매
47221 음료 소매업	·우유 및 요구르트 소매 ·생수 소매 ·양주 소매 ·소주 및 맥주 소매 ·과실주 소매 ·탁주 및 약주 소매	농산물 판매
4785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분재류 소매 ·잔디 소매 ·난 및 꽃 소매 ·관상수 및 조경수 소매	농산물 판매
52103 농산물 창고업	·곡물창고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 수리·보관업

<표 5-21>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체계 정리(기타)

세세분류	예시	농업법인 사업범위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회사전용 휴양시설 운영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청소년 수련원(숙박시설 갖춘) ·자연 학습원(숙박 시설 갖춘)	농어촌관광휴양사업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조경수 관리 ·정원수 식재 ·정원관리 대리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농작업 대행업

#### (4)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한 농업법인 사업범위 분류

- 앞 절 (2)와 (3)은 첫째, 전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농업법인 사업범위와 관련된 산업들을 찾고, 둘째, 이렇게 분류된 개별 세세사업들이 농업법인 사업범위내의 어떠한 사업으로 분

류될 수 있지는 지를 결정하는 과정임.

- 이와 반대로 본 절은 앞 절의 표들 내의 열 배열을 변경함으로써, 농업법인 사업범위내의 개별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어떤 사업으로 분류 할 수 있는지를 (<표 5-22>)를 통해서 보여줌.
- 이렇게 구해진 <표 5-22>는 농어업 경영체법 하에서 농업법인이 영위가능한 사업들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기존에 일선 등기소에서 등기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표 5-22> 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한 농업법인 사업범위 분류

농업법인 사업범위	소분류	세세분류		예시
농업의 경영(생산)	011 작물 재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풋마늘 및 풋고추 재배 ·파 및 양파 재배 ·아스파라거스 재배 ·참외, 수박 및 멜론 재배 ·잎 및 열매 채소 재배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밤, 호도 및 대추 재배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바나나 재배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무화과 재배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고추(풋고추 제외) 재배 ·생강 재배 ·정향 재배 ·녹차용 작물 재배 ·커피 재배 ·코코아 재배
		01140	기타작물 재배업	·인삼 재배 ·호프 재배 ·섬유작물 재배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유지작물 재배 ·조물재료 작물 재배 ·낙화생 재배
		01151	콩나물 재배업	-
		01152	채소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 ·작물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공예작물 시설재배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012 축산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	

농업법인 사업범위	소분류	세세분류		예시	
농업의 경영(생산)		01220	양돈업	·돼지 사육 ·멧돼지 사육	
		01231	양계업	·닭 사육 ·양계장 운영 ·계란 생산 ·병아리 부화장 운영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가금(닭 제외) 사육 ·조란(계란제외) 생산 ·실험용 조류 사육 ·관상용 조류 사육 ·메추리 사육 ·가금(닭 제외) 부화	
		01291	말 및 양 사육업	·양 사육 ·양모 생산 ·당나귀 사육 ·양젖 생산 ·경주마 사육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양봉업 ·실험용 쥐 생산 ·여우 및 곰 사육 ·곤충류 사육 ·토끼, 개 및 사슴 사육 ·양잠업 ·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작물과 동물의 복합생산	
	020 임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02012	육림업	·임목지 운영 ·자연 산림내에서 임업부산물 생산	
		02020	벌목업	·원목 생산 ·연료용 나무 생산 ·벌목업자 ·화목 생산	
		02030	임산물 채취업	·천연 검 및 수지 채취 ·충전용 식물성 재료 채취 ·천연코르크 채취 ·편조물용 식물성 재료 채취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야생식물 채취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10	도축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시설 의 설치·운영	014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과실 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농작업 대행업	014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농약 뿌리기 서비스 ·작물 수확 서비스 ·농업용수 공급 ·농업 노동자 공급
			01420	축산관련 서비스업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수렵활동 ·야생 개구리 포획 ·수산 포유동물(고래 제외) 포획
020 임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산불방지 서비스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산림 경비 및 보조 서비스 ·수목조사 및 평가 서비스 ·목재운반 이동 서비스(벌목장내)	
743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조경수 관리 ·정원수 식재	

농업법인 사업범위	소분류	세세분류		예시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서비스업	·정원관리 대리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농산물 유통	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201	곡물 도매업	·쌀, 보리, 밀 도매 ·콩, 깨, 옥수수 도매 ·구근 도매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곡물종자 도매 ·채소 및 과실묘목 도매 ·채소종자 도매 ·화훼종자 도매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꽃 및 난 도매 ·관상수 도매 ·잔디 도매 ·분재류 도매
		46205	산동물 도매업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가족 및 가족원단 도매·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일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월모 및 월면 도매
	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채소(각종 나물) 도매 ·견과류(대추, 밤, 은행 등)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46312	육류 도매업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조류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농산물 가공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고기 통조림 제조 ·가금고기 훈제품 제조 ·가금고기 햄 제조 ·가금고기 커틀릿 제조 ·밀폐 포장한 가금고기 가공품 제조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육지동물고기 통조림 제조 ·육지동물고기 햄, 소시지 제조 ·육지동물고기 커틀릿 제조 ·육지동물고기 건조·훈제품 제조 ·육지동물고기 분 및 조분 생산(식용 또는 비식용) ·밀폐 포장한 육지동물고기 가공품 제조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김치류 제조 ·단무지 제조 ·오이피클 제조 ·채소 절임식품 제조 ·견과 절임식품 제조 ·과실 절임식품 제조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제조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 ·과실 통조림 제조 ·감자의 플레이크 제조 ·감자의 분 및 조분 생산 ·과실 및 채소 잼, 젤리 제조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소, 돼지 등) 지방 생산 ·수산동물 유지 생산 ·어류의 간유 생산 ·우각유 및 그 분획물 생산 ·라드스테아린 생산 ·올레오유 생산

농업법인 사업범위	소분류	세세분류		예시
농산물 가공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대두유 생산 ·옥수수기름 추출 ·식물성 왁스 생산 ·면실유 생산 ·낙화생유 생산 ·피마자유 생산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마가린 제조 ·쇼트닝 제조 ·식용 가공유 생산 ·이미테이션라드 생산 ·식용 경화유 제조 ·라드 정제 생산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생크림 제조 ·탈지유 제조 ·치즈 제조 ·버터밀크 제조 ·유장 제조 ·케피어 제조 ·발효유 제조 ·농축유 제조 ·치즈 제조 ·연유 제조 ·전지분유 제조 ·유당 및 유당시럽 제조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도정 쌀, 보리, 밀 생산 ·압맥 생산 ·도정 곡물 생산 ·정미소 운영
		10612	곡물 제분업	·곡물 제분제품 생산 ·밀가루 및 콩가루 생산 ·제분소 운영 ·쌀가루 생산 ·줄기 및 뿌리의 분쇄물 생산 ·건조된 채두류의 분과 조분 생산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만두피 제조 ·제과 및 제빵용 가루반죽 제조 ·곡분제 빵속 제조 ·곡분제 떡고물 제조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훈제 조리곡물 제조 ·튀김곡물 제조 ·전투식량(곡물가공품) 제조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이눌린 제조 ·글루텐 제조 ·가용성 전분 제조 ·타피오카 제조 ·포도당 및 과당시럽 제조 ·물엿 제조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떡류 제조 ·약과 제조
		10712	빵류 제조업	·케이크 제조 ·파이 제조 ·생과자 제조 ·베이커리제품 제조(신선, 냉동) ·식빵 제조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건빵 제조 ·미과 제조 ·공캡슐 제조(전분) ·튀김과자 제조 ·코코아 버터 제조 ·코코아 분말 제조 ·캐러멜과자 제조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제조 ·설탕절임 과실, 견과 제조 ·코코아 유지 제조
		10720	설탕제조업	·사탕수수 당 제조 ·사탕무 당 제조 ·전화당 제조 ·순수한 자당(고체) 제조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메밀국수 제조 ·스파게티 제조 ·당면 제조 ·인스턴트 면류 제조 ·마카로니 제조 ·곡분제 페이스트



농업법인 사업범위	소분류	세세분류		예시	
농산물 가공업				제품(면류) 제조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조미료(합성) 제조 ·아미노산 제조(식품 첨가용) ·식초 대용품 제조 ·글루타민산소다 제조(식품용) ·맛소금 제조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고추, 후추 및 계피가루 제조 ·천연 향신재료 분 제조 ·마요네즈 제조 ·케첩 제조 ·혼합양념 제조 ·김치속 제조 ·인스턴트 커리 제조 ·조제한 겨자 제조	
		10743	장류 제조업	·간장 제조 ·고추장 제조 ·춘장 제조 ·된장 및 청국장 제조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누룩 및 종국 제조 ·효모(이스트) 제조(활성, 불활성) ·조제 베이킹파우더 제조 ·인조꿀 제조 ·커피크리머 제조 ·캐러멜당 제조 ·감미용 조제품 제조 ·단세포미생물 제조(죽은 것) ·죽염 제조 ·구운 소금 제조(식품용)	
		10791	커피 가공업	·볶은 커피 생산 ·카페인제거커피 생산 ·커피농축물 생산 ·커피대용품 제조(커피 함유한 것) ·커피 조제품 제조	
		10792	차류 가공업	·홍차(발효차) 제조 ·차 농축물과 엑스 제조 ·차류 조제품 제조 ·대용차류 제조 ·볶은 치커리 제조 ·둥글레차 제조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유부 제조 ·묵 제조 ·두부 제조 ·순두부 제조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인삼분말 제조 ·인삼차 제조 ·인삼즙 및 주스 제조 ·홍삼차 제조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육지동물고기 혼합 엑스 제조 ·수산동물고기 혼합 엑스 제조 ·건강원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조란 껍질 제거제품 생산 ·새알가공품 제조	
		111 알콜음료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모주 제조 ·곡주 제조 ·동동주 제조 ·막걸리 제조
			11112	청주 제조업	-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포도주 제조 ·과실발효주 제조 ·유자발효주 제조 ·생강발효주 제조 ·채소발효주 제조	
	담배제조업	12001	담배 재건조업	담배 줄기 제거 ·담배 재건조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131	13101	면 방적업	·면사 제조 ·면 혼방사 제조	

농업법인 사업범위	소분류	세세분류		예시	
농산물 가공업	방적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견방사 제조 ·견노일 제조 ·마 방적 ·마사 제조 ·코이어사 제조 ·라미사 제조 ·아바카사 제조 ·사이잘마사 제조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표면새김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보드 제조 ·배튼보드 제조 ·베니어패널 제조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고밀도화 목재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 ·칩보드 제조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목재 창문 제조 ·목재 문지방 제조 ·목재 문틀 제조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켓트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적재용 목재판 제조 ·화물용 목재 보드 제조	
				·화물용 목재 파렛트 제조 ·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조	
		16291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목재 공구 제조 ·공구용 몸체 제조 ·공구 손잡이 제조 ·브러쉬 몸체 제조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밥주걱 제조 ·나무젓가락 제조 ·이썬시개 제조 ·목기 제조 ·절구통 및 절구대 제조 ·솔뚜껑 제조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상감세공 목재 패널 제조 ·장식용 목재칼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틀 제조 ·목재의 조상 및 장식품 제조 ·보석상자 제조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기구용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새장 및 동물우리 제조 ·나무못 제조 ·목재 컵, 리일 및 유사제품 제조 ·부채 및 핸드스크린 제조	
	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통조림 도매 ·햄 및 소세지 도매 ·가금육 통조림 도매 ·베이컨 도매 ·육류 훈제식품 도매	
		46324	낙농품 도매업	·액상시유 도매 ·우유 분리제품 도매 ·탈지유 및 탈지분유 도매 ·생크림 도매 ·전지분유 및 가당우유 도매 ·연유 및 농축유 도매 ·아이스크림 도매 ·빙과류 도매	
		472	47211	곡물 소매업	·쌀, 보리, 밀 소매 ·콩, 팥 소매

농업법인 사업범위	소분류	세세분류		예시
농산물 판매(국내, 소매)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옥수수 소매 ·곡물가루 소매
		47212	육류 소매업	·돈육, 우육 소매 ·가금육 소매 ·조류고기 소매 ·식육점, 정육점 운영
		47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과실 소매 ·채소(각종 나물) 소매 ·견과류(밤, 호두 등) 소매 ·고구마 및 감자 소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소매 ·감 및 꽃감 소매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별꿀 소매 ·코코아 소매 ·반찬 소매 ·커피, 차류 소매 ·계란 및 조란 소매 ·유지 소매 ·면제품 소매 ·된장 및 고추장 소매 ·한약재료 소매
	47221	음료 소매업	·우유 및 요구르트 소매 ·생수 소매 ·양주 소매 ·소주 및 맥주 소매 ·과실주 소매 ·탁주 및 약주 소매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5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분재류 소매 ·잔디 소매 ·난 및 꽃 소매 ·관상수 및 조경수 소매	
농어촌관광휴 양사업	551 숙박시설 운영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회사전용 휴양시설 운영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청소년 수련원(숙박시설 갖춘) ·자연 학습 원(숙박시설 갖춘)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배합사료 제조 ·단미사료 제조 ·비스킷 제조(동물용) ·어류용사료 제조 ·조제보조사료 제조 ·동물사료용 재료의 분쇄물 생산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무기질) ·질소화합물 제조 ·인산질 비료 제조 ·칼리질 비료 제조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무기질)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유기질 비료 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 제조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성장촉진제 제조 ·발아억제제 제조 ·생물학적 농약 제조 ·생장조절제 제조 ·살서제(쥐약) 제조 ·소독제 제조 ·미생물 농약 제조 ·바이러스농약 제조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경운기 및 이앙기 제조 ·콤바인 및 탈곡기 제조 ·농업용 분무기 제조 ·잔디 깎는 기계 제조 ·착유기 제조 ·선별기 및 세척기	

농업법인 사업범위	소분류	세세분류		예시
				제조(농산물용) ·부화기 제조 ·농산물용 건조기 제조 ·양봉용 기계 제조 ·농업용 관배수 기기 제조
	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203	사료 도매업	·단미사료 도매 ·배합사료 도매 ·보조사료 도매 ·어류용 사료 도매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53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농업용 기계 도매 ·축산용 기계장비 도매 ·정원용 기계 도매 ·임업용 기계장비 도매
	467 기타 전문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질소비료 도매 ·복합비료 도매 ·석회 유기질 비료 도매 ·배양토 도매 ·살서제 도매 ·성장조절제 도매
종자생산·종균 배양	011 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채소, 화초, 과수 종자 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 생산 ·버섯 종균 생산 ·접수 및 삽수 묘목 생산 ·화초 종균 생산 ·벼 모판 생산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 수리·보관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곡물창고

## 2)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방안 검토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법인 사업범위의 확대는 기존사업범위의 정의(의미)의 확대와 기존 사업범위내의 사업과는 구별되는 신규사업의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음.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이루어진 영업중인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방안을 기존사업범위의 정의(의미)의 확대와 신규사업 제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 함.

### (1) 기존 사업범위 정의(의미)의 확대 검토

#### □ 농업의 경영(생산)-곤충업 포함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중 농업의 경영(생산)은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있음. 이 정의에 따르면 곤충구매 및 대행업은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농업법인에서 곤충관련사업은 4곳이었으나 농촌진흥청의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20개, 2015년 15개의 농업법인 사업장에서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곤충사업은 대규모,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는 농업법인에 적합한 사업형태임. 특히, 곤충사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곤충 생태원 및 체험장은 6차산업과 밀접한 연계가능성이 있음.
- 곤충시장은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매년 성장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애완용 곤충시장이 발달했고 유럽은 화분매개곤충, 캐나다와 미국은 천적용곤충, 중국과 태국등 아시아 지역은 식용곤충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발달하고 있음. 우리나라 곤충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 3,000억원 정도의 규모임. 이는 농업부문의 배, 오이, 풋고추 등의 규모와 비슷함.
- 친환경농업과 시설농업의 성장으로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사료용, BT와 연계된 의약용 곤충 부문이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sup>11)</sup> 이 외에도 곤충생태학습장 조성 및 생태학습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축제 자원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곤충에서 추출한 신기능물질을 통해 기능성 및 의약소재를 개발하여 세계 바이오산업의 선점 확보를 필요로 함.

11)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 KREI 농정포커스 제 122호.

- 이처럼 곤충업은 세계적으로 유망되는 사업이나 산업으로의 인식이 부족하여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곤충산업법)」의 제13조, 제14조 곤충산업 사업수행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 사항으로는 곤충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 보급 관련 교육사업, 곤충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는 곤충산업을 농업법인의 농업에 편입시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 앞에서 살펴본 곤충업의 현황과 곤충업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농업법인 사업법위의 항목인 농업의 경영(생산)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곤충업을 포함시켜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시키고자 함.
- 농업의 경영(생산):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곤충업)을 영위하는 것.
  - 작물재배업 :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
  -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곤충업: 곤충의 사육업, 사료업 및 식용업
- 농업의 유통, 농업의 판매-전자상거래 포함
- 농업법인 사업범위조사표의 농산물 유통 항목을 보면 직접 생산하거나 농가 등과 계약을 통한 농산물을 보관·배송·포장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함. 농산물 전자상거래(농산물 통신판매업)은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부분에서 농산물 유통의 한 예로 볼 수 있으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 정의에 의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함.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정의에 의하면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위의 정의에 따라 농산물 전자상거래란 농촌 지역과 농산업을 통해 산출된 가치를 전자적 방식으로 유통하는 것을 의미함.
- 최근 6차산업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농업기술에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 기술 등 ICT를 융복합한 산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 융복합산업은 농업의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시켜 현재

의 저성장 기초, 시장개방 확대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sup>12)</sup> 특히 전자상거래 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상의 거래는 신뢰성, 정확성, 합리성을 높이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특징에 의해 편리성이 높아져 쇼핑을 위해 사용되는 정신적, 심리적 노력이 최소화 되는 경향을 가짐.

-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농촌진흥법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국가정보화기본법을 통해 그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음.
  - 농촌진흥법 (제1조) 목적에서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조 목적에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음.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3조 제2항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에서 농어민에 대한 사업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 위의 법 조항들은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연구·육성을 통해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농업인과 농촌에 부가가치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부합하며 각종 법령을 통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농업법인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앞에서 살펴본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법령 등에 근거하여 농업법인 사업범위의 항목인 농산물 유통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포함시켜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 시키고자 함.
- 농산물 유통은 직접생산하거나 농가등과 계약을 통한 농산물을 보관, 배송, 포장 또는 판매하는 활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도 포함).
- 또한 농산물 판매의 정의도 다음과 같이 수정 가능함. 농산물 판매는 직접 생산하거나 농가 등과 계약을 통해 농산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활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도 포함).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에너지사업 포함
- 정부는 농업의 에너지 효율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는 첨단온실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이 있음. 이 사업들은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12) 송재일. 2015. 농업농촌 분야에서 ICT 융보합기술의 적용과 법제 개선.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함.

- 목적 외 사업의 가타항목 중 에너지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은 9.4%, 6.2%의 비중을 차지함.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7항 가목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보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 이때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함.
- 농업인도 태양에너지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태양에너지는 다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업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시,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부여하고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시 우대, 장기·저금리 정책자금등을 지원하고 있음. 태양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자금지원등 농업법인의 혜택이 주어진다 면 중복수혜 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생산 등 기타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위의 경우와 다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시책과 장려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도록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 폐열의 이용에 따르면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이 있음.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유가 농자재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자재의 정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동원되는 기구나 필요한 자재를 말하며 비료, 농약, 사료, 비닐, 각종 농기구등이 있음. 이처럼 협의의 의미로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동원되는 1차적인 물질에 해당 되지만 광의의 의미는 1차적 농자재는 물론 2차적인 농자재도 포함시키는 것임. 예를 들어, 벼수확시 나오



는 쌀겨, 가축의 분뇨등 부산물로 나오는 물질들도 농자재의 개념에 포함됨. 즉, 축산물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스등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농자재로 분류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를 확대·보급을 장려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에너지를 제외한 기타바이오에너지사업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에 포함되어 의미를 확장시켜야 함.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 : 농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반 재료(생산시설, 농기계, 농기구, 농약, 비료,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의 생산과 공급을 하는 활동.

#### □ 종자생산·종균배양

- 종자산업은 씨앗과 같은 종자를 개발, 보급하여 생산농가에 판매하는 형태의 산업임. 「종자산업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개발 및 보급, 판매 외에도 수출·수입도 포함함. 최근에는 전통육종방식에서 벗어나 의약, 재료산업과의 융복합산업화 및 나노기술 접목 등 첨단생명공학기술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음.<sup>13)</sup>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종자기업들이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매각되면서 세계종자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그침. 이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 에서 수출입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항목 외에는 연구개발 등 국내 종자산업을 위해 종자의 수입을 허가해야함.
- 국내 종자기업의 2013년 수입현황을 보면, 전체 종자 수입량은 26,540톤으로 식량작물이 13,806톤, 사료작물이 8,276톤, 채소종자 수입량이 2,969톤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실적은 채소작물이 전체의 62%(1억 3,195만 달러)를 차지함. 또한 식량 및 채소작물의 경우 국산 종자가 75%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수 및 화훼작물의 경우 점유율이 10%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남(Kim et al. 2014).
- 점유율이 부족한 화훼작물의 경우 대부분 수입종자에 의존함.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장을 통해 부족한 공급을 충당할 필요가 있음.
- 「종자산업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함. 종자의 생산 뿐만 아니라 종자의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종자생산에 국한된 정의를 종자산업으로 확

13) Park HT, Park KW. 2013. Challenge for the seed industry leap, 「Agricultural policy focus」 No. 46, Sout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장시키고자 함.

- 앞에서 살펴본 종자업의 현황과 종자산업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농업법인 사업법위의 항목인 종자산업·종균배양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종자 및 종균의 수입은 허용 시켜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시키고자 함.
- 종자산업·종균배양 :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등 생산 및 종자산업 전반에 대한 활동.(예외적으로 국내 생산되지 않는 종자 및 종균의 수입은 허용.)

## (2) 신규사업 확대 검토

### □ 요식업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요식업은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의 기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어촌관광산업에 관한 법률의 수정사항처럼 현재의 농업법인의 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기타 항목 중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요식업 또한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서 요식업을 사업범위로 추가하는데 법·제도적인 근거를 살펴보고자 함.

#### ○ 향토음식지원화(농가맛집)

-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음식지원화(농가맛집)’ 사업은 6차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향토음식을 보전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지원하고 있음. 현재 실시되고 있는 향토음식지원화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 공간 조성으로 우리 식문화 계승 및 확산에 기여함. 둘째, 농촌형 소규모 외식사업 및 향토음식 전문 인적자원 육성으로 향토음식 전승 및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함.
- 이 농가맛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기존의 외식업체 운영자와 단일품목 판매자는 참여할 수 없음.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취지에 맞게 시외 사업장만 가능함.

#### ○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와 국내산 농산물 매입지원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외식업체 지원으로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임.
- 근거 법령으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가 있음. 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좋은 식품을 공급하고자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등의 식품을 연구개발하고 마케팅에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을 강조 한 내용임.

○ 전통발효식품육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 전통식품산업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음. 세부목적은 사업을 통하여 식품명인을 발굴·육성하고 체험·홍보관을 설치하여 향토음식 전파 하는데 있음.

○ 요식업을 사업범위로 인정할 경우 모든 식재료를 직접 생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주요 품목을 직접 생산하면 되는지, 그렇다면 주요 품목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모든 식재료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직접 생산해야 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은 '원산지표시제도'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재료<sup>14)</sup>로 한정함.

○ 농업법인이 요식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재료 생산 기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 원산지 표시대상의 원칙을 참조함.

- 첫째,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표시
- 둘째, 사용된 원료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의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 셋째, 첫 번째, 두 번째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 넷째,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

○ 농업법인 요식업의 주재료 생산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용된 원료의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 둘째, 사용된 원료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비율의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 셋째, 첫 번째, 두 번째 외의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 요식업을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근거,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새롭게 추가함. 농업법인의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신규사업범위로 제시된 요식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요식업: 직접 생산한 주요 식재료를 이용하여 전통음식(궁중음식, 사찰음식 등)의 판매 및 연구개발을 하는 활동. 이때 주요 식재료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식재료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

제3조의 원칙을 차용함.

#### □ 사회복지사업

- 현재 농업법인에서 목적 외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타 항목을 범주화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분야는 영농조합법인의 시행중인 사업들 중에서 13.7%를 차지함. 이는 요식업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때 세부항목은 요양업 및 노인복지사업이 주류를 이룸.

- 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지역 내 사회복지관 또는 각종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주로 제공함(원성구 2010).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복지증진을 추구하고자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 첫째, 농촌공원설립, 마을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등 '생활여건 개선'과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농지연금 지급 등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임.

- 목적외 사업 기타 항목에서 세분류한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생활여건 개선'보다는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 가까워 보이나, 안전재해보장제도 및 농지연금과 같은 사업들은 법인이나 개인이 영위하기에 어려운 사업임. 따라서 제도적으로 농업법인에 사회복지사업을 신사업범위로 추가하는 근거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목적 외 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봄.

#### □ 농업용부동산임대업

-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밝히면서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현행농지법에서도 농지이용과 관련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과거 소작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농지법」 제22조) 그러나 이러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경작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농촌 내부의 농지임차에 의한 영농규모 및 농업관련사업 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즉, 「헌법」의 제121조 제2항의 제약조건인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을 정책적으로 농업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향의 제시라고 말할 수 있음.

-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중요한 농지문제로 떠

오르고 있음.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도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sup>15)</sup>

- 일본의 경우 2009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의 소유에서 농지의 이용으로 농지정책의 방향을 수정했음. 또한 권리이전통제를 대표적으로 완화하고, 임대차에 관해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유롭게 농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음.<sup>16)</sup>
- 일본 「농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임대차에 있어서는 농지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취지의 조건부 서면계약으로서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농지의 이용근원을 취득할 수 있음. 즉 농기계나 노동력 보유현황으로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차지영농이 가능함.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는 엄격한 농지경작자주의의 원칙이 폐기되는 것으로 평가됨.<sup>17)</sup>
- 일본회사 마이팜은 도시 근교의 유휴농지 분양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올리면서 지역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농장개설과 농업지도, 농업생산이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임. 지주로부터 유휴농지를 임차하여 간이 기반정비를 거쳐, 채소생산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소구획으로 나누어 임대함.<sup>18)</sup>
-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 제정되면서 유휴농지를 이용한 체험농장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농업경영체의 사업범위에도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 포함되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농지임대차제도가 필요함.
- 농업의 6차산업화는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하므로 농지의 이용을 전제로 함.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농지의 소유가 일반적이나 앞으로는 유휴농지를 임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농지임대차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 농업경영체에서도 농지임대차제도를 이용하여 유휴농지를 농업관련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유휴농지의 합리적 이용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됨.
- 「농지법」 제23조 제1항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따르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농업법인 또한 「농지법」 제23조 제1항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만 허용함.

15) 송재일. 2011. 「농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6) 사동천. 2009. 「농지임대차의 문제점」

17) 原田純孝, “新しい 農業制度と 農地賃借の 自由化の 意味”, 変わる 農業法制·農業政策, jurist No.1388, 2009.11.1. 16面.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일본 6차산업의 모델과 방향」

- 정의를 내리면 '농업용부동산임대업'은 농업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활동. 이때, 허용가능한 토지 및 건물은 「농지법」 제23조에 따름.

#### □ 농업·농촌 컨설팅

- 강대구 등(2004)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농인들의 초기 영농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농업생산기술이나 경영능력의 부족이라고 답했고 귀농준비자 집단도 농업생산기술부족(재배, 사육, 경영, 판매기술 등)의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측함. 귀농자 집단 또한 농업생산기술문제(22.4%)가 가장 큰 어려움이며 자신의 능력이 주변 농민들보다 더 낮다가 평가한 경우가 50%이상임.
- 농업·농촌의 인력부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업체의 성장이 필요함. 또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의 현장코칭, 심층컨설팅,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컨설팅 사업을 진행중이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특허전문가현장방문지원, 농산업 BT분야 창업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실제 컨설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농업·농촌 컨설팅은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그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음.
- 농업·농촌 컨설팅은 농촌의 인력문제의 해결, 농업인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부합하며 각종 법령을 통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농업법인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를 내리면 '농업·농촌 컨설팅'은 농업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지도, 조언, 자료 제공등 직접컨설팅하거나 교육하는 활동.



## 참 고 문 헌

---

- 강대구. 2004.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2010. 「농업인교육자의 농기업경영컨설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2012. 「농업인교육자의 농기업경영컨설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권용대, 임효빈. 2013. 「도시 농산업의 지역산업 연관효과 분석-대전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연중. 2015.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2015.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농림축산식품부.
- 김철민. 2004.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0.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 추정.」 CEO Focus 249호.
-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6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요령.」  
 ----- 2016. 「농림축산식품부사업시행지침서.」
- 농촌진흥청. 2011. 「농산물 전자상거래.」  
 ----- 2014.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배성의. 2013. 「농과계 대학교 재학현황 및 졸업생 진로현황 조사.분석.」 (사)전국농학계 대학장 협의회.
- 사동천. 2009. 「농지임대차의 문제점.」
- 송재일. 2011. 「농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송재일. 2015. 「농업농촌 분야에서 ICT 용보갑기술의 적용과 법제 개선.」
- 심재헌. 2009.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양흥모. 2015. 「농대생 농산업분야 창업·취업 경로분석 연구.」 (사)전국농학계대학장 협의회.
- 원성구 2011.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효과성 영향요인 연구 : 노인요양시설·병원의 공급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병오 2015. 「6차산업화 정책의 점검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265회 월례세미나. 농정연구센터.

임송택, 양승룡. 2013. 「식품공급사업의 정의 및 부가가치 추계.」

임정빈. 2004. 「농산물 생산이력제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

장동인 외. 2011. 「컨설턴트의 역량이 컨설팅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진기업의 지지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명채. 2015. 「농어촌 복지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소기업청. 2016.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일본 6차산업의 모델과 방향」

----- 2016.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 KREI 농정포커스 제 12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原田純孝, “新しい 農業制度と 農地賃借の 自由化の 意味”, 変わる 農業法制・農業政策, jurist No.1388, 2009.11.1. 16面.

Park HT, Park KW. 2013. Challenge for the seed industry leap, 「Agricultural policy focus」 No. 46, Sout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농식품 6차산업. [www.6차산업.com](http://www.6차산업.com)

농촌진흥청. [www.rda.go.kr](http://www.rda.go.kr)

법제처.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http://www.motie.go.kr)

## 부록 1&gt; 지역별 농업법인 일반 현황 분석 결과

## ■ 농업법인 설립시기별 현황 ■

구분	설립연도						합계	
	1995년 이전	1996~ 2000년	2001~ 2005년	2006~ 2010년	2011~ 2015년	2016년		
영 호 조 합 법 인	강원	140(4.3)	450(13.7)	367(11.2)	1,012(30.8)	1,285(39.1)	31(0.9)	3,285(100.0)
	경기	100(2.9)	631(18.6)	580(17.1)	970(28.6)	1,077(31.8)	33(1.0)	3,391(100.0)
	경남	182(5.8)	615(19.5)	303(9.6)	1,000(31.7)	1,022(32.4)	35(1.1)	3,157(100.0)
	경북	166(4.2)	679(17.2)	431(10.9)	1,332(33.7)	1,293(32.7)	49(1.2)	3,950(100.0)
	전남	544(6.7)	1,446(17.9)	760(9.4)	2,812(34.7)	2,456(30.3)	76(0.9)	8,094(100.0)
	전북	245(4.8)	791(15.5)	624(12.2)	1,825(35.8)	1,566(30.7)	53(1.0)	5,104(100.0)
	충남	84(1.6)	940(17.5)	759(14.1)	1,802(33.5)	1,736(32.3)	58(1.1)	5,379(100.0)
	충북	78(3.6)	327(15.0)	246(11.3)	716(32.8)	798(36.5)	21(1.0)	2,186(100.0)
	제주	17(1.0)	174(10.2)	198(11.6)	673(39.5)	637(37.4)	3(0.2)	1,702(100.0)
	광주	4(1.8)	32(14.7)	40(18.4)	68(31.3)	69(31.8)	4(1.8)	217(100.0)
	대구	1(0.5)	21(10.2)	39(19.0)	73(35.6)	70(34.1)	1(0.5)	205(100.0)
	대전		9(6.2)	21(14.4)	44(30.1)	71(48.6)	1(0.7)	146(100.0)
	부산	2(1.0)	36(17.6)	31(15.1)	70(34.1)	62(30.2)	4(2.0)	205(100.0)
	서울	1(0.4)	24(9.1)	34(12.9)	83(31.6)	121(46.0)		263(100.0)
	세종	3(2.0)	18(11.9)	15(9.9)	52(34.4)	61(40.4)	2(0.3)	151(100.0)
	울산	15(7.1)	45(21.3)	19(9.0)	77(36.5)	53(25.1)	2(0.9)	211(100.0)
	인천	2(0.8)	34(14.4)	22(9.3)	77(32.6)	97(41.1)	4(1.7)	236(100.0)
소계	1,584(4.2)	6,272(16.6)	4,489(11.8)	12,686(33.5)	12,474(32.9)	377(1.0)	37,882(100.0)	
농 업 회 사 법 인	강원	5(0.6)	29(3.6)	36(4.4)	169(20.8)	538(66.3)	34(4.2)	811(100.0)
	경기	33(1.1)	84(2.8)	161(5.3)	562(18.7)	2,079(69.0)	94(3.1)	3,013(100.0)
	경남	14(1.3)	91(8.2)	44(4.0)	217(19.5)	717(64.5)	29(2.6)	1,112(100.0)
	경북	24(1.8)	104(7.7)	60(4.4)	240(17.8)	879(65.1)	44(3.3)	1,351(100.0)
	전남	10(0.5)	50(2.5)	77(3.8)	383(18.9)	1,440(71.2)	62(3.1)	2,022(100.0)
	전북	6(0.3)	153(8.8)	72(4.1)	357(20.5)	1,100(63.0)	57(3.3)	1,745(100.0)
	충남	22(1.4)	204(13.4)	107(7.0)	258(17.0)	876(57.6)	54(3.6)	1,521(100.0)
	충북	14(1.5)	19(2.0)	48(5.0)	196(20.4)	652(67.7)	34(3.5)	963(100.0)
	제주	4(0.4)	11(1.1)	18(1.9)	118(12.3)	791(82.1)	21(2.2)	963(100.0)
	광주	2(0.8)	2(0.8)	12(5.0)	40(16.8)	177(74.4)	5(2.1)	238(100.0)
	대구		1(0.6)	10(5.7)	23(13.1)	138(78.9)	3(1.7)	175(100.0)
	대전		2(0.9)	14(6.5)	37(17.3)	154(72.0)	7(3.3)	214(100.0)
	부산	2(0.9)	2(0.9)	6(2.8)	23(10.9)	173(82.0)	5(2.4)	211(100.0)
	서울	4(0.8)	5(1.0)	26(5.3)	72(14.5)	364(73.5)	24(4.8)	495(100.0)
	세종		8(7.6)	3(2.9)	15(14.3)	74(70.5)	5(4.8)	105(100.0)
	울산	1(1.2)	1(1.2)	2(2.5)	9(11.1)	66(81.5)	2(2.5)	81(100.0)
	인천	2(0.9)	11(4.8)	14(6.1)	41(17.8)	155(67.4)	7(3.0)	230(100.0)
소계	143(0.9)	777(5.1)	710(4.7)	2,760(18.1)	10,373(68.0)	487(3.2)	15,250(100.0)	

■ 농업법인 운영형태별 현황 ■

구분	운영형태				합계	
	운영중	미운영	소재불명	법인전환		
영농조합법인	강원	1,519	1,129	632	5	3,285
	경기	1,196	1,120	1,070	7	3,393
	경남	1,597	1,252	324	0	3,173
	경북	1,953	1,562	432	3	3,950
	전남	3,845	3,299	943	9	8,096
	전북	2,602	1,905	596	1	5,104
	충남	2,433	2,346	590	11	5,380
	충북	1,111	727	341	7	2,186
	제주	738	612	350	2	1,702
	광주	82	65	70	0	217
	대구	81	46	78	0	205
	대전	46	21	79		146
	부산	79	61	65	0	205
	서울	40	28	191	4	263
	세종	91	45	15		151
	울산	88	71	49	3	211
	인천	78	74	83	1	236
	농업회사법인	강원	394	200	215	2
경기		1,420	684	896	13	3,013
경남		546	385	180	2	1,113
경북		747	435	167	2	1,351
전남		1,160	564	290	8	2,022
전북		925	499	317	5	1,746
충남		719	530	268	4	1,521
충북		458	234	265	6	963
제주		482	258	194	29	963
광주		122	40	75	1	238
대구		62	38	73	2	175
대전		73	47	94		214
부산		66	49	94	2	211
서울		181	64	244	6	495
세종		54	27	24		105
울산		34	16	31	0	81
인천		108	48	73	1	230
합계		강원	1,913	1,329	847	7
	경기	2,616	1,804	1,966	20	6,406
	경남	2,143	1,637	504	2	4,286
	경북	2,700	1,997	599	5	5,301
	전남	5,005	3,863	1,233	17	10,118
	전북	3,527	2,404	913	6	6,850
	충남	3,152	2,876	858	15	6,901
	충북	1,569	961	606	13	3,149
	제주	1,220	870	544	31	2,665
	광주	204	105	145	1	455
	대구	143	84	151	2	380
	대전	119	68	173		360
	부산	145	110	159	2	416
	서울	221	92	435	10	758
	세종	145	72	39		256
	울산	122	87	80	3	292
	인천	186	122	156	2	466

■ 농업법인 목적외 사업 현황 ■

지역	법인범주		합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강원	Y	266	100	366
	N	3,019	711	3,730
	소계	3,285	811	4,096
경기	Y	159	351	510
	N	3,234	2,662	5,896
	소계	3,393	3,013	6,406
경남	Y	123	89	212
	N	3,050	1,024	4,074
	소계	3,173	1,113	4,286
경북	Y	158	136	294
	N	3,792	1,215	5,007
	합계	3,950	1,351	5,301
전남	Y	212	182	394
	N	7,884	1,840	9,724
	소계	8,096	2,022	10,118
전북	Y	154	103	257
	N	4,950	1,643	6,593
	소계	5,104	1,746	6,850
충남	Y	168	101	269
	N	5,212	1,420	6,632
	소계	5,380	1,521	6,901
충북	Y	78	78	156
	N	2,108	885	2,993
	소계	2,186	963	3,149
제주	Y	16	8	24
	N	1,686	955	2,641
	소계	1,702	963	2,665
광주	Y	2	14	16
	N	215	224	439
	소계	217	238	455
대구	Y	15	19	34
	N	190	156	346
	소계	205	175	380
대전	Y	3	11	14
	N	143	203	346
	소계	146	214	360
부산	Y	11	25	36
	N	194	186	380
	소계	205	211	416
서울	Y	10	46	56
	N	253	449	702
	소계	263	495	758
세종	Y	2	7	9
	N	149	98	247
	소계	151	105	256
울산	Y	17	16	33
	N	194	65	259
	소계	211	81	292
인천	Y	12	15	27
	N	224	215	439
	소계	236	230	466

목  
적  
외  
사  
업  
운  
영

■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시	임시·일용	합계	상시	임시·일용	합계
강원	평균	4.21	15.82	20.02	5.42	10.91	16.33
	중위수	2	0	5	3	0	4
	최소값	0	0	1	0	0	1
	최대값	301	1500	1500	59	500	504
	N	482	482	482	215	215	215
경기	평균	5.27	16.34	21.61	8.52	5.16	13.68
	중위수	3	0	5	4	0	5
	최소값	0	0	1	0	0	1
	최대값	100	2500	2502	44	1193	1198
	N	545	545	545	1014	1014	1014
경남	평균	4.10	10.96	15.05	6.03	7.52	13.55
	중위수	2	0	4	3	0	4
	최소값	0	0	1	0	0	1
	최대값	246	1645	1645	190	800	807
	N	520	520	520	263	263	263
경북	평균	4.81	39.66	44.48	7.41	10.57	17.99
	중위수	3	0	5	3	0	5
	최소값	0	0	1	0	0	1
	최대값	155	4120	4200	128	420	421
	N	750	750	750	404	404	404
전남	평균	3.81	10.39	14.20	4.50	10.15	14.66
	중위수	2	0	5	2	0	4
	최소값	0	0	1	0	0	1
	최대값	188	1700	1704	250	800	802
	N	1223	1223	1223	634	634	634
전북	평균	3.72	13.27	16.99	5.23	6.52	11.75
	중위수	2	0	4	3	0	4
	최소값	0	0	1	0	0	1
	최대값	120	2400	2405	167	1000	1000
	N	852	852	852	436	436	436
충남	평균	4.04	20.21	24.25	7.80	3.50	11.30
	중위수	2	0	5	3	0	5
	최소값	0	0	1	0	0	1
	최대값	150	6000	6000	210	450	455
	N	830	830	830	443	443	443
충북	평균	4.39	9.55	13.94	6.76	10.47	17.23
	중위수	2	0	5	3	0	5
	최소값	0	0	1	0	0	1
	최대값	90	900	903	81	1500	1504
	N	342	342	342	235	235	235
제주	평균	5.10	247.16	252.25	4.06	17.30	21.36
	중위수	3	0	6	2	0	3
	최소값	0	0	1	0	0	1
	최대값	80	37500	37500	50	2100	2103
	N	276	276	276	226	226	226
특광역시	평균	3.13	1.83	4.96	5.37	2.81	8.18
	중위수	2	0	3	3	0	4
	최소값	0	0	1	0	0	1
	최대값	44	25	44	153	150	188
	N	269	269	269	480	480	480

## 부록 2&gt; 지역에 따른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분석 결과

## ■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목적외 사업 현황 ■

구분		농업법인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강원	Y	183	67	250
	N	1,336	327	1,663
	합계	1,519	394	1,913
경기	Y	114	265	379
	N	1,082	1,155	2,237
	합계	1,196	1,420	2,616
경남	Y	92	61	153
	N	1,505	485	1,990
	합계	1,597	546	2,143
경북	Y	120	98	218
	N	1,833	649	2,482
	합계	1,953	747	2,700
전남	Y	125	113	238
	N	3,720	1,047	4,767
	합계	3,845	1,160	5,005
전북	Y	106	82	188
	N	2,496	843	3,339
	합계	2,602	925	3,527
충남	Y	123	75	198
	N	2,310	644	2,954
	합계	2,433	719	3,152
충북	Y	74	62	136
	N	1,037	396	1,433
	합계	1,111	458	1,569
제주	Y	5	2	7
	N	733	480	1,213
	합계	738	482	1,220
특광역시	Y	46	125	171
	N	539	575	1,114
	합계	585	700	1,285

[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지역별 사업범위 현황(다중응답) ]

□ 영농조합법인

■ 강원(n=1,479) ■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 농 조 합 사 업 범 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1,099 (100.0)	571 (86.5)	402 (87.8)	593 (85.8)	610 (77.4)	648 (75.9)	321 (87.5)	240 (74.8)	64 (53.3)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571 (52.0)	660 (100.0)	384 (83.8)	431 (62.4)	370 (47.0)	500 (58.5)	288 (78.5)	184 (57.3)	51 (42.5)
	③ 농작업대행	402 (36.6)	384 (58.2)	458 (100.0)	345 (49.9)	254 (32.2)	378 (44.3)	249 (67.8)	141 (43.9)	37 (30.8)
	④ 농산물공동출하	593 (54.0)	431 (65.3)	345 (75.3)	691 (100.0)	407 (51.6)	481 (56.3)	283 (77.1)	172 (53.6)	47 (39.2)
	⑤ 농산물유통	610 (55.5)	370 (56.1)	254 (55.5)	407 (58.9)	788 (100.0)	551 (64.5)	199 (54.2)	191 (59.5)	46 (38.3)
	⑥ 농산물가공	648 (59.0)	500 (75.8)	378 (82.5)	481 (69.6)	551 (69.9)	854 (100.0)	345 (94.0)	217 (67.6)	54 (45.0)
	⑦ 농산물수출	321 (29.2)	288 (43.6)	249 (54.4)	283 (41.0)	199 (25.3)	345 (40.4)	367 (100.0)	119 (37.1)	29 (24.2)
	⑧ 농어촌관광휴양	240 (21.8)	184 (27.9)	141 (30.8)	172 (24.9)	191 (24.2)	217 (25.4)	119 (32.4)	321 (100.0)	32 (26.7)
	⑨ 그밖의 목적사업	64 (5.8)	51 (7.7)	37 (8.1)	47 (6.8)	46 (5.8)	54 (6.3)	29 (7.9)	32 (10.0)	120 (100.0)

■ 경기(n=1,196) ■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 농 조 합 사 업 범 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878 (100.0)	427 (84.7)	356 (84.0)	424 (79.5)	378 (71.3)	461 (74.7)	305 (80.5)	120 (69.0)	170 (77.3)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427 (48.6)	504 (100.0)	351 (82.8)	387 (72.6)	205 (38.7)	391 (63.4)	301 (79.4)	102 (58.6)	138 (62.7)
	③ 농작업대행	356 (40.5)	351 (69.6)	424 (100.0)	333 (62.5)	167 (31.5)	336 (54.5)	261 (68.9)	72 (41.4)	128 (58.2)
	④ 농산물공동출하	424 (48.3)	387 (76.8)	333 (78.5)	533 (100.0)	239 (45.1)	383 (62.1)	306 (80.7)	88 (50.6)	124 (56.4)
	⑤ 농산물유통	378 (43.1)	205 (40.7)	167 (39.4)	239 (44.8)	530 (100.0)	316 (51.2)	170 (44.9)	88 (50.6)	50 (22.7)
	⑥ 농산물가공	461 (52.5)	391 (77.6)	336 (79.2)	383 (71.9)	316 (59.6)	617 (100.0)	351 (92.6)	116 (66.7)	139 (63.2)
	⑦ 농산물수출	305 (34.7)	301 (59.7)	261 (61.6)	306 (57.4)	170 (32.1)	351 (56.9)	379 (100.0)	65 (37.4)	111 (50.5)
	⑧ 농어촌관광휴양	120 (13.7)	102 (20.2)	72 (17.0)	88 (16.5)	88 (16.6)	116 (18.8)	65 (17.2)	174 (100.0)	20 (9.1)
	⑨ 그밖의 목적사업	170 (19.4)	138 (27.4)	128 (30.2)	124 (23.3)	50 (9.4)	139 (22.5)	111 (29.3)	20 (11.5)	220 (100.0)

■ 경남(n=1,579) ■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 농 조 합 사 업 범 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1,174 (100.0)	524 (83.3)	344 (83.5)	480 (75.9)	653 (75.5)	648 (76.5)	318 (78.7)	84 (65.1)	94 (64.4)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524 (44.6)	629 (100.0)	302 (73.3)	398 (63.0)	368 (42.5)	447 (52.8)	272 (67.3)	70 (54.3)	59 (40.4)
	③ 농작업대행	344 (29.3)	302 (48.0)	412 (100.0)	268 (42.4)	233 (26.9)	299 (35.3)	205 (50.7)	37 (28.7)	39 (26.7)
	④ 농산물공동출하	480 (40.9)	398 (63.3)	268 (65.0)	632 (100.0)	399 (46.1)	430 (50.8)	298 (73.8)	55 (42.6)	48 (32.9)
	⑤ 농산물유통	653 (55.6)	368 (58.5)	233 (56.6)	399 (63.1)	865 (100.0)	586 (69.2)	244 (60.4)	73 (56.6)	66 (45.2)
	⑥ 농산물가공	648 (55.2)	447 (71.1)	299 (72.6)	430 (68.0)	586 (67.7)	847 (100.0)	348 (86.1)	89 (69.0)	70 (47.9)
	⑦ 농산물수출	318 (27.1)	272 (43.2)	205 (49.8)	298 (47.2)	244 (28.2)	348 (41.1)	404 (100.0)	46 (35.7)	37 (25.3)
	⑧ 농어촌관광휴양	84 (7.2)	70 (11.1)	37 (9.0)	55 (8.7)	73 (8.4)	89 (10.5)	46 (11.4)	129 (100.0)	11 (7.5)
	⑨ 그밖의 목적사업	94 (8.0)	59 (9.4)	39 (9.5)	48 (7.6)	66 (7.6)	70 (8.3)	37 (9.2)	11 (8.5)	146 (100.0)

■ 경북(n=1,912) ■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 농 조 합 사 업 범 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1,365 (100.0)	783 (84.7)	576 (84.6)	692 (75.9)	822 (74.1)	836 (75.3)	467 (79.3)	138 (76.2)	231 (71.7)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783 (57.4)	924 (100.0)	577 (84.7)	638 (70.0)	566 (51.0)	693 (62.4)	473 (80.3)	122 (67.4)	214 (66.5)
	③ 농작업대행	576 (42.2)	577 (62.4)	681 (100.0)	510 (55.9)	416 (37.5)	540 (48.6)	394 (66.9)	91 (50.3)	162 (50.3)
	④ 농산물공동출하	692 (50.7)	638 (69.0)	510 (74.9)	912 (100.0)	566 (51.0)	679 (61.2)	466 (79.1)	93 (51.4)	177 (55.0)
	⑤ 농산물유통	822 (60.2)	566 (61.3)	416 (61.1)	566 (62.1)	1,109 (100.0)	763 (68.7)	351 (59.6)	123 (68.0)	178 (55.3)
	⑥ 농산물가공	836 (61.2)	693 (75.0)	540 (79.3)	679 (74.5)	763 (68.8)	1,110 (100.0)	546 (92.7)	137 (75.7)	212 (65.8)
	⑦ 농산물수출	467 (34.2)	473 (51.2)	394 (57.9)	466 (51.1)	351 (31.7)	546 (49.2)	589 (100.0)	81 (44.8)	135 (41.9)
	⑧ 농어촌관광휴양	138 (10.1)	122 (13.2)	91 (13.4)	93 (10.2)	123 (11.1)	137 (12.3)	81 (13.8)	181 (100.0)	40 (12.4)
	⑨ 그밖의 목적사업	231 (16.9)	214 (23.2)	162 (23.8)	177 (19.4)	178 (16.1)	212 (19.1)	135 (22.9)	40 (22.1)	322 (100.0)



■ 전남(n=3,732) ■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 농 조 합 사 업 범 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840 (100.0)	1,278 (85.0)	996 (83.3)	1,120 (79.5)	1,483 (75.4)	1,355 (74.6)	612 (80.4)	288 (80.0)	217 (61.1)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1,278 (45.0)	1,504 (100.0)	862 (72.1)	944 (67.0)	959 (48.8)	1,057 (58.2)	570 (74.9)	270 (75.0)	165 (46.5)
	③ 농작업대행	996 (35.1)	862 (57.3)	1,196 (100.0)	716 (50.9)	730 (37.1)	776 (42.7)	449 (59.0)	204 (56.7)	123 (34.6)
	④ 농산물공동출하	1,120 (39.4)	944 (62.8)	716 (59.9)	1,408 (100.0)	965 (49.1)	964 (53.1)	574 (75.4)	236 (65.6)	117 (33.0)
	⑤ 농산물유통	1,483 (52.2)	959 (63.8)	730 (61.0)	965 (68.5)	1,967 (100.0)	1,356 (74.7)	526 (69.1)	270 (75.0)	163 (45.9)
	⑥ 농산물가공	1,355 (47.7)	1,057 (70.3)	776 (64.9)	964 (68.5)	1,356 (68.9)	1,816 (100.0)	700 (92.0)	288 (80.0)	183 (51.5)
	⑦ 농산물수출	612 (21.5)	570 (37.9)	449 (37.5)	574 (40.8)	526 (26.7)	700 (38.5)	761 (100.0)	201 (55.8)	97 (27.3)
	⑧ 농어촌관광휴양	288 (10.1)	270 (18.0)	204 (17.1)	236 (16.8)	270 (13.7)	288 (15.9)	201 (26.4)	360 (100.0)	18 (5.1)
	⑨ 그밖의 목적사업	217 (7.6)	165 (11.0)	123 (10.3)	117 (8.3)	163 (8.3)	183 (10.1)	97 (12.7)	18 (5.0)	355 (100.0)

■ 전북(n=2,551) ■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 농 조 합 사 업 범 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1,895 (100.0)	1,037 (87.7)	824 (87.4)	905 (82.0)	1,161 (75.5)	1,226 (75.2)	643 (83.6)	262 (80.9)	149 (64.5)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1,037 (54.7)	1,183 (100.0)	716 (75.9)	729 (66.0)	790 (51.4)	945 (57.9)	581 (75.6)	231 (71.3)	131 (56.7)
	③ 농작업대행	824 (43.5)	716 (60.5)	943 (100.0)	611 (55.3)	597 (38.8)	736 (45.1)	479 (62.3)	192 (59.3)	96 (41.6)
	④ 농산물공동출하	905 (47.8)	729 (61.6)	611 (64.8)	1,104 (100.0)	767 (49.9)	835 (51.2)	559 (72.7)	217 (67.0)	105 (45.5)
	⑤ 농산물유통	1,161 (61.3)	790 (66.8)	597 (63.3)	767 (69.5)	1,538 (100.0)	1,176 (72.1)	526 (68.4)	241 (74.4)	114 (49.4)
	⑥ 농산물가공	1,226 (64.7)	945 (79.9)	736 (78.0)	835 (75.6)	1,176 (76.5)	1,631 (100.0)	719 (93.5)	275 (84.9)	146 (63.2)
	⑦ 농산물수출	643 (33.9)	581 (49.1)	479 (50.8)	559 (50.6)	526 (34.2)	719 (44.1)	769 (100.0)	195 (60.2)	92 (39.8)
	⑧ 농어촌관광휴양	262 (13.8)	231 (19.5)	192 (20.4)	217 (19.7)	241 (15.7)	275 (16.9)	195 (25.4)	324 (100.0)	40 (17.3)
	⑨ 그밖의 목적사업	149 (7.9)	131 (11.1)	96 (10.2)	105 (9.5)	114 (7.4)	146 (9.0)	92 (12.0)	40 (12.3)	231 (100.0)

■ 충남(n=2,402) ■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 농 조 합 사 업 범 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1,935 (100.0)	1,246 (90.0)	1,047 (91.4)	1,067 (85.7)	731 (77.4)	1,296 (83.9)	816 (87.6)	364 (87.5)	143 (71.9)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1,246 (64.4)	1,384 (100.0)	999 (87.2)	974 (78.2)	502 (53.2)	1,129 (73.1)	781 (83.9)	343 (82.5)	102 (51.3)
	③ 농작업대행	1,047 (54.1)	999 (72.2)	1,145 (100.0)	793 (63.7)	387 (41.0)	932 (60.4)	655 (70.4)	246 (59.1)	91 (45.7)
	④ 농산물공동출하	1,067 (55.1)	974 (70.4)	793 (69.3)	1,245 (100.0)	524 (55.5)	993 (64.3)	782 (84.0)	218 (52.4)	87 (43.7)
	⑤ 농산물유통	731 (37.8)	502 (36.3)	387 (33.8)	524 (42.1)	944 (100.0)	658 (42.6)	334 (35.9)	138 (33.2)	80 (40.2)
	⑥ 농산물가공	1,296 (67.0)	1,129 (81.6)	932 (81.4)	993 (79.8)	658 (69.7)	1,544 (100.0)	876 (94.1)	354 (85.1)	120 (60.3)
	⑦ 농산물수출	816 (42.2)	781 (56.4)	655 (57.2)	782 (62.8)	334 (35.4)	876 (56.7)	931 (100.0)	175 (42.1)	74 (37.2)
	⑧ 농어촌관광휴양	364 (18.8)	343 (24.8)	246 (21.5)	218 (17.5)	138 (14.6)	354 (22.9)	175 (18.8)	416 (100.0)	30 (15.1)
	⑨ 그밖의 목적사업	143 (7.4)	102 (7.4)	91 (7.9)	87 (7.0)	80 (8.5)	120 (7.8)	74 (7.9)	30 (7.2)	199 (100.0)

■ 충북(n=1,063) ■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 농 조 합 사 업 범 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650 (100.0)	321 (76.2)	244 (74.4)	318 (65.0)	360 (58.6)	364 (62.5)	163 (65.2)	82 (67.8)	52 (46.8)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321 (49.4)	421 (100.0)	238 (72.6)	271 (55.4)	269 (43.8)	306 (52.6)	168 (67.2)	67 (55.4)	46 (41.4)
	③ 농작업대행	244 (37.5)	238 (56.5)	328 (100.0)	230 (47.0)	203 (33.1)	245 (42.1)	154 (61.6)	54 (44.6)	24 (21.6)
	④ 농산물공동출하	318 (48.9)	271 (64.4)	230 (70.1)	489 (100.0)	314 (51.1)	328 (56.4)	202 (80.8)	64 (52.9)	34 (30.6)
	⑤ 농산물유통	360 (55.4)	269 (63.9)	203 (61.9)	314 (64.2)	614 (100.0)	421 (72.3)	166 (66.4)	69 (57.0)	42 (37.8)
	⑥ 농산물가공	364 (56.0)	306 (72.7)	245 (74.7)	328 (67.1)	421 (68.6)	582 (100.0)	226 (90.4)	81 (66.9)	49 (44.1)
	⑦ 농산물수출	163 (25.1)	168 (39.9)	154 (47.0)	202 (41.3)	166 (27.0)	226 (38.8)	250 (100.0)	38 (31.4)	20 (18.0)
	⑧ 농어촌관광휴양	82 (12.6)	67 (15.9)	54 (16.5)	64 (13.1)	69 (11.2)	81 (13.9)	38 (15.2)	121 (100.0)	13 (11.7)
	⑨ 그밖의 목적사업	52 (8.0)	46 (10.9)	24 (7.3)	34 (7.0)	42 (6.8)	49 (8.4)	20 (8.0)	13 (10.7)	111 (100.0)

■ 제주(n=743) ■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 농 조 합 사 업 범 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623 (100.0)	306 (90.0)	207 (90.0)	275 (87.6)	432 (83.7)	379 (86.1)	234 (88.3)	93 (89.4)	76 (83.5)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306 (49.1)	340 (100.0)	186 (80.9)	228 (72.6)	266 (51.6)	274 (62.3)	200 (75.5)	80 (76.9)	56 (61.5)
	③ 농작업대행	207 (33.2)	186 (54.7)	230 (100.0)	172 (54.8)	170 (32.9)	196 (44.5)	145 (54.7)	55 (52.9)	35 (38.5)
	④ 농산물공동출하	275 (44.1)	228 (67.1)	172 (74.8)	314 (100.0)	247 (47.9)	247 (56.1)	179 (67.5)	60 (57.7)	44 (48.4)
	⑤ 농산물유통	432 (69.3)	266 (78.2)	170 (73.9)	247 (78.7)	516 (100.0)	362 (82.3)	205 (77.4)	90 (86.5)	66 (72.5)
	⑥ 농산물가공	379 (60.8)	274 (80.6)	196 (85.2)	247 (78.7)	362 (70.2)	440 (100.0)	234 (88.3)	90 (86.5)	67 (73.6)
	⑦ 농산물수출	234 (37.6)	200 (58.8)	145 (63.0)	179 (57.0)	205 (39.7)	234 (53.2)	265 (100.0)	62 (59.6)	41 (45.1)
	⑧ 농어촌관광휴양	93 (14.9)	80 (23.5)	55 (23.9)	60 (19.1)	90 (17.4)	90 (20.5)	62 (23.4)	104 (100.0)	18 (19.8)
	⑨ 그밖의 목적사업	76 (12.2)	56 (16.5)	35 (15.2)	44 (14.0)	66 (12.8)	67 (15.2)	41 (15.5)	18 (17.3)	91 (100.0)

■ 특광역시(n=589) ■

구분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영 농 조 합 사 업 범 위 (%)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416 (100.0)	179 (85.2)	138 (86.3)	165 (82.9)	231 (68.3)	199 (72.6)	91 (82.7)	39 (72.2)	43 (55.8)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179 (43.0)	210 (100.0)	114 (71.3)	132 (66.3)	120 (35.5)	135 (49.3)	79 (71.8)	25 (46.3)	22 (28.6)
	③ 농작업대행	138 (33.2)	114 (54.3)	160 (100.0)	96 (48.2)	90 (26.6)	102 (37.2)	66 (60.0)	23 (42.6)	20 (26.0)
	④ 농산물공동출하	165 (39.7)	132 (62.9)	96 (60.0)	199 (100.0)	133 (39.3)	134 (48.9)	83 (75.5)	25 (46.3)	19 (24.7)
	⑤ 농산물유통	231 (55.5)	120 (57.1)	90 (56.3)	133 (66.8)	338 (100.0)	199 (72.6)	71 (64.5)	38 (70.4)	26 (33.8)
	⑥ 농산물가공	199 (47.8)	135 (64.3)	102 (63.8)	134 (67.3)	199 (58.9)	274 (100.0)	100 (90.9)	33 (61.1)	26 (33.8)
	⑦ 농산물수출	91 (21.9)	79 (37.6)	66 (41.3)	83 (41.7)	71 (21.0)	100 (36.5)	110 (100.0)	20 (37.0)	9 (11.7)
	⑧ 농어촌관광휴양	39 (9.4)	25 (11.9)	23 (14.4)	25 (12.6)	38 (11.2)	33 (12.0)	20 (18.2)	54 (100.0)	7 (9.1)
	⑨ 그밖의 목적사업	43 (10.3)	22 (10.5)	20 (12.5)	19 (9.5)	26 (7.7)	26 (9.5)	9 (8.2)	7 (13.0)	77 (100.0)

## □ 농업회사법인

■ 강원(n=374) ■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	① 농업의경영생산	239 (100.0)	185 (66.5)	56 (77.8)	160 (63.0)	199 (71.3)	34 (73.9)	52 (64.2)	55 (66.3)	52 (69.3)	27 (62.8)
	② 농산물유통	185 (77.4)	278 (100.0)	65 (90.3)	207 (81.5)	231 (82.8)	28 (60.9)	67 (82.7)	73 (88.0)	70 (93.3)	42 (97.7)
	③ 농산물수출	56 (23.4)	65 (23.4)	72 (100.0)	63 (24.8)	63 (22.6)	17 (37.0)	25 (30.9)	27 (32.5)	26 (34.7)	16 (37.2)
	④ 농산물가공	160 (66.9)	207 (74.5)	63 (87.5)	254 (100.0)	214 (76.7)	29 (63.0)	65 (80.2)	69 (83.1)	65 (86.7)	40 (93.0)
	⑤ 농산물판매	199 (83.3)	231 (83.1)	63 (87.5)	214 (84.3)	279 (100.0)	32 (69.6)	73 (90.1)	78 (94.0)	72 (96.0)	43 (100.0)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34 (14.2)	28 (10.1)	17 (23.6)	29 (11.4)	32 (11.5)	46 (100.0)	11 (13.6)	11 (13.3)	14 (18.7)	11 (25.6)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52 (21.8)	67 (24.1)	25 (34.7)	65 (25.6)	73 (26.2)	11 (23.9)	81 (100.0)	52 (62.7)	51 (68.0)	36 (83.7)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55 (23.0)	73 (26.3)	27 (37.5)	69 (27.2)	78 (28.0)	11 (23.9)	52 (64.2)	83 (100.0)	47 (62.7)	32 (74.4)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52 (21.8)	70 (25.2)	26 (36.1)	65 (25.6)	72 (25.8)	14 (30.4)	51 (63.0)	47 (56.6)	75 (100.0)	36 (83.7)
	⑩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27 (11.3)	42 (15.1)	16 (22.2)	40 (15.7)	43 (15.4)	11 (23.9)	36 (44.4)	32 (38.6)	36 (48.0)	43 (100.0)

■ 경기(n=1,369) ■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	① 농업의경영생산	780 (100.0)	525 (55.2)	158 (67.5)	410 (53.7)	569 (62.6)	99 (72.8)	214 (65.2)	210 (72.2)	186 (68.9)	125 (71.4)
	② 농산물유통	525 (67.3)	951 (100.0)	209 (89.3)	615 (80.6)	725 (79.8)	91 (66.9)	273 (83.2)	247 (84.9)	233 (86.3)	158 (90.3)
	③ 농산물수출	158 (20.3)	209 (22.0)	234 (100.0)	200 (26.2)	195 (21.5)	33 (24.3)	110 (33.5)	96 (33.0)	89 (33.0)	52 (29.7)
	④ 농산물가공	410 (52.6)	615 (64.7)	200 (85.5)	763 (100.0)	618 (68.0)	88 (64.7)	260 (79.3)	232 (79.7)	228 (84.4)	153 (87.4)
	⑤ 농산물판매	569 (72.9)	725 (76.2)	195 (83.3)	618 (81.0)	909 (100.0)	96 (70.6)	271 (82.6)	253 (86.9)	243 (90.0)	162 (92.6)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99 (12.7)	91 (9.6)	33 (14.1)	88 (11.5)	96 (10.6)	136 (100.0)	51 (15.5)	48 (16.5)	42 (15.6)	33 (18.9)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14 (27.4)	273 (28.7)	110 (47.0)	260 (34.1)	271 (29.8)	51 (37.5)	328 (100.0)	203 (69.8)	197 (73.0)	139 (79.4)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210 (26.9)	247 (26.0)	96 (41.0)	232 (30.4)	253 (27.8)	48 (35.3)	203 (61.9)	291 (100.0)	182 (67.4)	140 (80.0)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186 (23.8)	233 (24.5)	89 (38.0)	228 (29.9)	243 (26.7)	42 (30.9)	197 (60.1)	182 (62.5)	270 (100.0)	148 (84.6)
	⑩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125 (16.0)	158 (16.6)	52 (22.2)	153 (20.1)	162 (17.8)	33 (24.3)	139 (42.4)	140 (48.1)	148 (54.8)	175 (100.0)

■ 경남(n=531) ■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사업범위(%)	① 농업의경영생산	334 (100.0)	221 (62.6)	58 (59.2)	205 (60.7)	225 (61.8)	32 (65.3)	99 (62.7)	80 (65.6)	74 (60.7)	40 (50.6)
	② 농산물유통	221 (66.2)	353 (100.0)	78 (79.6)	276 (81.7)	279 (76.6)	35 (71.4)	136 (86.1)	111 (91.0)	106 (86.9)	73 (92.4)
	③ 농산물수출	58 (17.4)	78 (22.1)	98 (100.0)	77 (22.8)	79 (21.7)	14 (28.6)	31 (19.6)	24 (19.7)	25 (20.5)	17 (21.5)
	④ 농산물가공	205 (61.4)	276 (78.2)	77 (78.6)	338 (100.0)	289 (79.4)	31 (63.3)	127 (80.4)	108 (88.5)	106 (86.9)	72 (91.1)
	⑤ 농산물판매	225 (67.4)	279 (79.0)	79 (80.6)	289 (85.5)	364 (100.0)	39 (79.6)	134 (84.8)	109 (89.3)	107 (87.7)	74 (93.7)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32 (9.6)	35 (9.9)	14 (14.3)	31 (9.2)	39 (10.7)	49 (100.0)	21 (13.3)	18 (14.8)	17 (13.9)	12 (15.2)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99 (29.6)	136 (38.5)	31 (31.6)	127 (37.6)	134 (36.8)	21 (42.9)	158 (100.0)	85 (69.7)	94 (77.0)	68 (86.1)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80 (24.0)	111 (31.4)	24 (24.5)	108 (32.0)	109 (29.9)	18 (36.7)	85 (53.8)	122 (100.0)	80 (65.6)	58 (73.4)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74 (22.2)	106 (30.0)	25 (25.5)	106 (31.4)	107 (29.4)	17 (34.7)	94 (59.5)	80 (65.6)	122 (100.0)	72 (91.1)
	⑩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40 (12.0)	73 (20.7)	17 (17.3)	72 (21.3)	74 (20.3)	12 (24.5)	68 (43.0)	58 (47.5)	72 (59.0)	79 (100.0)

■ 경북(n=715) ■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사업범위(%)	① 농업의경영생산	445 (100.0)	342 (63.3)	92 (80.0)	306 (63.6)	337 (72.2)	45 (75.0)	130 (76.9)	103 (79.2)	105 (73.9)	57 (81.4)
	② 농산물유통	342 (76.9)	540 (100.0)	109 (94.8)	403 (83.8)	398 (85.2)	46 (76.7)	148 (87.6)	117 (90.0)	132 (93.0)	65 (92.9)
	③ 농산물수출	92 (20.7)	109 (20.2)	115 (100.0)	101 (21.0)	95 (20.3)	18 (30.0)	41 (24.3)	35 (26.9)	38 (26.8)	15 (21.4)
	④ 농산물가공	306 (68.8)	403 (74.6)	101 (87.8)	481 (100.0)	376 (80.5)	51 (85.0)	146 (86.4)	112 (86.2)	126 (88.7)	64 (91.4)
	⑤ 농산물판매	337 (75.7)	398 (73.7)	95 (82.6)	376 (78.2)	467 (100.0)	50 (83.3)	144 (85.2)	116 (89.2)	123 (86.6)	63 (90.0)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45 (10.1)	46 (8.5)	18 (15.7)	51 (10.6)	50 (10.7)	60 (100.0)	26 (15.4)	22 (16.9)	23 (16.2)	14 (20.0)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130 (29.2)	148 (27.4)	41 (35.7)	146 (30.4)	144 (30.8)	26 (43.3)	169 (100.0)	97 (74.6)	101 (71.1)	58 (82.9)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103 (23.1)	117 (21.7)	35 (30.4)	112 (23.3)	116 (24.8)	22 (36.7)	97 (57.4)	130 (100.0)	78 (54.9)	54 (77.1)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105 (23.6)	132 (24.4)	38 (33.0)	126 (26.2)	123 (26.3)	23 (38.3)	101 (59.8)	78 (60.0)	142 (100.0)	64 (91.4)
	⑩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57 (12.8)	65 (12.0)	15 (13.0)	64 (13.3)	63 (13.5)	14 (23.3)	58 (34.3)	54 (41.5)	64 (45.1)	70 (100.0)

■ 전남(n=1,107) ■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	① 농업의경영생산	698 (100.0)	472 (62.9)	154 (79.4)	430 (61.3)	469 (66.0)	111 (77.1)	159 (63.9)	117 (69.6)	141 (72.7)	69 (71.1)
	② 농산물유통	472 (67.6)	750 (100.0)	175 (90.2)	568 (81.0)	572 (80.5)	114 (79.2)	195 (78.3)	144 (85.7)	161 (83.0)	88 (90.7)
	③ 농산물수출	154 (22.1)	175 (23.3)	194 (100.0)	172 (24.5)	163 (22.9)	59 (41.0)	74 (29.7)	57 (33.9)	62 (32.0)	38 (39.2)
	④ 농산물가공	430 (61.6)	568 (75.7)	172 (88.7)	701 (100.0)	561 (78.9)	119 (82.6)	181 (72.7)	142 (84.5)	164 (84.5)	90 (92.8)
	⑤ 농산물판매	469 (67.2)	572 (76.3)	163 (84.0)	561 (80.0)	711 (100.0)	118 (81.9)	188 (75.5)	148 (88.1)	155 (79.9)	90 (92.8)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111 (15.9)	114 (15.2)	59 (30.4)	119 (17.0)	118 (16.6)	144 (100.0)	62 (24.9)	48 (28.6)	51 (26.3)	39 (40.2)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159 (22.8)	195 (26.0)	74 (38.1)	181 (25.8)	188 (26.4)	62 (43.1)	249 (100.0)	127 (75.6)	126 (64.9)	78 (80.4)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117 (16.8)	144 (19.2)	57 (29.4)	142 (20.3)	148 (20.8)	48 (33.3)	127 (51.0)	168 (100.0)	106 (54.6)	75 (77.3)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141 (20.2)	161 (21.5)	62 (32.0)	164 (23.4)	155 (21.8)	51 (35.4)	126 (50.6)	106 (63.1)	194 (100.0)	83 (85.6)
	⑩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69 (9.9)	88 (11.7)	38 (19.6)	90 (12.8)	90 (12.7)	39 (27.1)	78 (31.3)	75 (44.6)	83 (42.8)	97 (100.0)

■ 전북(n=888) ■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	① 농업의경영생산	603 (100.0)	424 (67.1)	148 (77.9)	394 (67.2)	427 (72.3)	88 (78.6)	169 (76.1)	119 (77.8)	132 (80.0)	69 (77.5)
	② 농산물유통	424 (70.3)	632 (100.0)	161 (84.7)	483 (82.4)	494 (83.6)	91 (81.3)	190 (85.6)	136 (88.9)	144 (87.3)	81 (91.0)
	③ 농산물수출	148 (24.5)	161 (25.5)	190 (100.0)	166 (28.3)	160 (27.1)	49 (43.8)	71 (32.0)	60 (39.2)	55 (33.3)	24 (27.0)
	④ 농산물가공	394 (65.3)	483 (76.4)	166 (87.4)	586 (100.0)	478 (80.9)	88 (78.6)	180 (81.1)	131 (85.6)	144 (87.3)	74 (83.1)
	⑤ 농산물판매	427 (70.8)	494 (78.2)	160 (84.2)	478 (81.6)	591 (100.0)	93 (83.0)	188 (84.7)	137 (89.5)	149 (90.3)	78 (87.6)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88 (14.6)	91 (14.4)	49 (25.8)	88 (15.0)	93 (15.7)	112 (100.0)	58 (26.1)	40 (26.1)	40 (24.2)	22 (24.7)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169 (28.0)	190 (30.1)	71 (37.4)	180 (30.7)	188 (31.8)	58 (51.8)	222 (100.0)	111 (72.5)	126 (76.4)	70 (78.7)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119 (19.7)	136 (21.5)	60 (31.6)	131 (22.4)	137 (23.2)	40 (35.7)	111 (50.0)	153 (100.0)	90 (54.5)	60 (67.4)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132 (21.9)	144 (22.8)	55 (28.9)	144 (24.6)	149 (25.2)	40 (35.7)	126 (56.8)	90 (58.8)	165 (100.0)	72 (80.9)
	⑩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69 (11.4)	81 (12.8)	24 (12.6)	74 (12.6)	78 (13.2)	22 (19.6)	70 (31.5)	60 (39.2)	72 (43.6)	89 (100.0)

■ 충남(n=696) ■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사업범위(%)	① 농업의경영생산	446 (100.0)	283 (64.2)	98 (79.7)	282 (62.5)	304 (68.5)	61 (82.4)	148 (72.5)	126 (76.4)	133 (72.7)	82 (75.2)
	② 농산물유통	283 (63.5)	441 (100.0)	107 (87.0)	353 (78.3)	343 (77.3)	58 (78.4)	164 (80.4)	141 (85.5)	147 (80.3)	93 (85.3)
	③ 농산물수출	98 (22.0)	107 (24.3)	123 (100.0)	111 (24.6)	108 (24.3)	25 (33.8)	54 (26.5)	40 (24.2)	43 (23.5)	30 (27.5)
	④ 농산물가공	282 (63.2)	353 (80.0)	111 (90.2)	451 (100.0)	362 (81.5)	65 (87.8)	162 (79.4)	136 (82.4)	157 (85.8)	92 (84.4)
	⑤ 농산물판매	304 (68.2)	343 (77.8)	108 (87.8)	362 (80.3)	444 (100.0)	63 (85.1)	166 (81.4)	148 (89.7)	161 (88.0)	94 (86.2)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61 (13.7)	58 (13.2)	25 (20.3)	65 (14.4)	63 (14.2)	74 (100.0)	38 (18.6)	32 (19.4)	33 (18.0)	22 (20.2)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148 (33.2)	164 (37.2)	54 (43.9)	162 (35.9)	166 (37.4)	38 (51.4)	204 (100.0)	122 (73.9)	122 (66.7)	87 (79.8)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126 (28.3)	141 (32.0)	40 (32.5)	136 (30.2)	148 (33.3)	32 (43.2)	122 (59.8)	165 (100.0)	110 (60.1)	74 (67.9)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133 (29.8)	147 (33.3)	43 (35.0)	157 (34.8)	161 (36.3)	33 (44.6)	122 (59.8)	110 (66.7)	183 (100.0)	91 (83.5)
	⑩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82 (18.4)	93 (21.1)	30 (24.4)	92 (20.4)	94 (21.2)	22 (29.7)	87 (42.6)	74 (44.8)	91 (49.7)	109 (100.0)

■ 충북(n=433) ■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사업범위(%)	① 농업의경영생산	244 (100.0)	162 (55.7)	38 (54.3)	138 (51.5)	178 (61.0)	34 (75.6)	53 (60.2)	44 (64.7)	37 (59.7)	18 (50.0)
	② 농산물유통	162 (66.4)	291 (100.0)	60 (85.7)	211 (78.7)	223 (76.4)	36 (80.0)	69 (78.4)	58 (85.3)	56 (90.3)	33 (91.7)
	③ 농산물수출	38 (15.6)	60 (20.6)	70 (100.0)	61 (22.8)	59 (20.2)	13 (28.9)	19 (21.6)	22 (32.4)	15 (24.2)	10 (27.8)
	④ 농산물가공	138 (56.6)	211 (72.5)	61 (87.1)	268 (100.0)	216 (74.0)	30 (66.7)	63 (71.6)	50 (73.5)	49 (79.0)	30 (83.3)
	⑤ 농산물판매	178 (73.0)	223 (76.6)	59 (84.3)	216 (80.6)	292 (100.0)	38 (84.4)	73 (83.0)	58 (85.3)	56 (90.3)	30 (83.3)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34 (13.9)	36 (12.4)	13 (18.6)	30 (11.2)	38 (13.0)	45 (100.0)	18 (20.5)	17 (25.0)	16 (25.8)	11 (30.6)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53 (21.7)	69 (23.7)	19 (27.1)	63 (23.5)	73 (25.0)	18 (40.0)	88 (100.0)	46 (67.6)	42 (67.7)	25 (69.4)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44 (18.0)	58 (19.9)	22 (31.4)	50 (18.7)	58 (19.9)	17 (37.8)	46 (52.3)	68 (100.0)	38 (61.3)	26 (72.2)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37 (15.2)	56 (19.2)	15 (21.4)	49 (18.3)	56 (19.2)	16 (35.6)	42 (47.7)	38 (55.9)	62 (100.0)	26 (72.2)
	⑩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18 (7.4)	33 (11.3)	10 (14.3)	30 (11.2)	30 (10.3)	11 (24.4)	25 (28.4)	26 (38.2)	26 (41.9)	36 (100.0)

■ 제주(n=464) ■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0	① 농업의경영생산	371 (100.0)	238 (79.6)	90 (85.7)	221 (81.3)	257 (79.6)	52 (82.5)	92 (86.8)	82 (87.2)	59 (76.6)	25 (80.6)
	② 농산물유통	238 (64.2)	299 (100.0)	96 (91.4)	228 (83.8)	250 (77.4)	50 (79.4)	98 (92.5)	87 (92.6)	73 (94.8)	30 (96.8)
	③ 농산물수출	90 (24.3)	96 (32.1)	105 (100.0)	92 (33.8)	94 (29.1)	28 (44.4)	36 (34.0)	35 (37.2)	21 (27.3)	11 (35.5)
	④ 농산물가공	221 (59.6)	228 (76.3)	92 (87.6)	272 (100.0)	238 (73.7)	47 (74.6)	92 (86.8)	78 (83.0)	69 (89.6)	30 (96.8)
	⑤ 농산물판매	257 (69.3)	250 (83.6)	94 (89.5)	238 (87.5)	323 (100.0)	57 (90.5)	93 (87.7)	79 (84.0)	68 (88.3)	28 (90.3)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52 (14.0)	50 (16.7)	28 (26.7)	47 (17.3)	57 (17.6)	63 (100.0)	24 (22.6)	24 (25.5)	16 (20.8)	9 (29.0)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92 (24.8)	98 (32.8)	36 (34.3)	92 (33.8)	93 (28.8)	24 (38.1)	106 (100.0)	60 (63.8)	56 (72.7)	27 (87.1)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82 (22.1)	87 (29.1)	35 (33.3)	78 (28.7)	79 (24.5)	24 (38.1)	60 (56.6)	94 (100.0)	53 (68.8)	27 (87.1)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59 (15.9)	73 (24.4)	21 (20.0)	69 (25.4)	68 (21.1)	16 (25.4)	56 (52.8)	53 (56.4)	77 (100.0)	30 (96.8)
	⑩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25 (6.7)	30 (10.0)	11 (10.5)	30 (11.0)	28 (8.7)	9 (14.3)	27 (25.5)	27 (28.7)	30 (39.0)	31 (100.0)

■ 특광역시(n=673) ■

구분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개소)									
		범위①	범위②	범위③	범위④	범위⑤	범위⑥	범위⑦	범위⑧	범위⑨	범위⑩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0	① 농업의경영생산	342 (100.0)	223 (47.0)	48 (73.8)	175 (51.2)	235 (55.6)	42 (75.0)	81 (66.9)	79 (77.5)	64 (68.8)	44 (66.7)
	② 농산물유통	223 (65.2)	474 (100.0)	59 (90.8)	274 (80.1)	339 (80.1)	39 (69.6)	105 (86.8)	90 (88.2)	84 (90.3)	63 (95.5)
	③ 농산물수출	48 (14.0)	59 (12.4)	65 (100.0)	54 (15.8)	54 (12.8)	9 (16.1)	25 (20.7)	25 (24.5)	17 (18.3)	15 (22.7)
	④ 농산물가공	175 (51.2)	274 (57.8)	54 (83.1)	342 (100.0)	268 (63.4)	36 (64.3)	95 (78.5)	81 (79.4)	80 (86.0)	60 (90.9)
	⑤ 농산물판매	235 (68.7)	339 (71.5)	54 (83.1)	268 (78.4)	423 (100.0)	39 (69.6)	97 (80.2)	87 (85.3)	83 (89.2)	62 (93.9)
	⑥ 농촌관광휴양사업	42 (12.3)	39 (8.2)	9 (13.8)	36 (10.5)	39 (9.2)	56 (100.0)	21 (17.4)	16 (15.7)	15 (16.1)	11 (16.7)
	⑦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81 (23.7)	105 (22.2)	25 (38.5)	95 (27.8)	97 (22.9)	21 (37.5)	121 (100.0)	73 (71.6)	69 (74.2)	52 (78.8)
	⑧ 종자생산종균배양	79 (23.1)	90 (19.0)	25 (38.5)	81 (23.7)	87 (20.6)	16 (28.6)	73 (60.3)	102 (100.0)	57 (61.3)	50 (75.8)
	⑨ 농업기계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64 (18.7)	84 (17.7)	17 (26.2)	80 (23.4)	83 (19.6)	15 (26.8)	69 (57.0)	57 (55.9)	93 (100.0)	57 (86.4)
	⑩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44 (12.9)	63 (13.3)	15 (23.1)	60 (17.5)	62 (14.7)	11 (19.6)	52 (43.0)	50 (49.0)	57 (61.3)	66 (100.0)



▣ 지역별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목적외 사업 현황(다중응답) ▣

구분	목적외 사업								전체
	숙박업	부동산매 매업·임대 업	수입업	무역업	건축업	주유소	목용장 업	목적외기 타	
강원	80 (24.7)	82 (25.3)	11 (3.4)	20 (6.2)	14 (4.3)	1 (.3)	3 (.9)	113 (34.9)	324 (100.0)
경기	40 (7.5)	174 (32.6)	54 (10.1)	54 (10.1)	28 (5.2)	-	2 (.4)	182 (34.1)	534 (100.0)
경남	19 (10.8)	55 (31.3)	11 (6.3)	16 (9.1)	10 (5.7)	2 (1.1)	-	63 (35.8)	176 (100.0)
경북	31 (10.8)	82 (28.7)	26 (9.1)	33 (11.5)	7 (2.4)	3 (1.0)	-	104 (36.4)	286 (100.0)
전남	48 (17.2)	87 (31.2)	10 (3.6)	16 (5.7)	5 (1.8)	3 (1.1)	2 (.7)	108 (38.7)	279 (100.0)
전북	37 (16.2)	84 (36.7)	7 (3.1)	24 (10.5)	10 (4.4)	2 (.9)	5 (2.2)	60 (26.2)	229 (100.0)
충남	35 (14.2)	98 (39.8)	9 (3.7)	20 (8.1)	11 (4.5)	6 (2.4)	-	67 (27.2)	246 (100.0)
충북	20 (11.4)	36 (20.6)	50 (28.6)	24 (13.7)	3 (1.7)	-	4 (2.3)	38 (21.7)	175 (100.0)
제주	-	4 (57.1)	-	-	-	-	-	3 (42.9)	7 (100.0)
특광역시	8 (3.6)	89 (40.5)	9 (4.1)	25 (11.4)	8 (3.6)	-	-	81 (36.8)	220 (100.0)

### 부록 3> 지역별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및 농지소유 관련 분석 결과

#### ■ 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업인 요건 ■

구분		조합원 5인 농업인 요건		합계
		충족	미충족	
강원	n	1,112	407	1,519
	%	(73.2)	(26.8)	(100.0)
경기	n	978	218	1,196
	%	(81.8)	(18.2)	(100.0)
경남	n	1,305	292	1,597
	%	(81.7)	(18.3)	(100.0)
경북	n	1,612	341	1,953
	%	(82.5)	(17.5)	(100.0)
전남	n	2,981	864	3,845
	%	(77.5)	(22.5)	(100.0)
전북	n	2,142	460	2,602
	%	(82.3)	(17.7)	(100.0)
충남	n	1,727	706	2,433
	%	(71.0)	(29.0)	(100.0)
충북	n	888	223	1,111
	%	(79.9)	(20.1)	(100.0)
제주	n	538	200	738
	%	(72.9)	(27.1)	(100.0)
특광역시	n	454	131	585
	%	(77.6)	(22.4)	(100.0)

주: Main sheet 기준

#### ■ 운영중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비율 요건 ■

구분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 요건		합계
		충족	미충족	
강원	n	296	98	394
	%	(75.1)	(24.9)	(100.0)
경기	n	1231	189	1420
	%	(86.7)	(13.3)	(100.0)
경남	n	448	98	546
	%	(82.1)	(17.9)	(100.0)
경북	n	633	114	747
	%	(84.7)	(15.3)	(100.0)
전남	n	995	165	1160
	%	(85.8)	(14.2)	(100.0)
전북	n	753	172	925
	%	(81.4)	(18.6)	(100.0)
충남	n	594	125	719
	%	(82.6)	(17.4)	(100.0)
충북	n	375	83	458
	%	(81.9)	(18.1)	(100.0)
제주	n	420	62	482
	%	(87.1)	(12.9)	(100.0)
특광역시	n	596	104	700
	%	(85.1)	(14.9)	(100.0)

주: Main sheet 기준

■ 운영중인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자 충족 현황 ■

구분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 요건		합계
		충족	미충족	
강원	n	107	5	112
	%	(95.5)	(4.5)	(100.0)
경기	n	309	39	348
	%	(88.8)	(11.2)	(100.0)
경남	n	79	21	100
	%	(79.0)	(21.0)	(100.0)
경북	n	148	24	172
	%	(86.0)	(14.0)	(100.0)
전남	n	154	29	183
	%	(84.2)	(15.8)	(100.0)
전북	n	109	30	139
	%	(78.4)	(21.6)	(100.0)
충남	n	126	21	147
	%	(85.7)	(14.3)	(100.0)
충북	n	72	11	83
	%	(86.7)	(13.3)	(100.0)
제주	n	127	35	162
	%	(78.4)	(21.6)	(100.0)
특광역시	n	163	32	195
	%	(83.6)	(16.4)	(100.0)

■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현황 ■

구분		영농조합법인		소계	농업회사법인		소계	농업법인전체		합계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강원	n	1,199	320	1,519	301	93	394	1,500	413	1,913
	%	(78.9)	(21.1)	(100.0)	(76.4)	(23.6)	(100.0)	(78.4)	(21.6)	(100.0)
경기	n	916	280	1,196	1,061	359	1,420	1,977	639	2,616
	%	(76.6)	(23.4)	(100.0)	(74.7)	(25.3)	(100.0)	(75.6)	(24.4)	(100.0)
경남	n	1,426	171	1,597	443	103	546	1,869	274	2,143
	%	(89.3)	(10.7)	(100.0)	(81.1)	(18.9)	(100.0)	(87.2)	(12.8)	(100.0)
경북	n	1,654	299	1,953	557	190	747	2,211	489	2,700
	%	(84.7)	(15.3)	(100.0)	(74.6)	(25.4)	(100.0)	(81.9)	(18.1)	(100.0)
전남	n	3,373	472	3,845	949	211	1,160	4,322	683	5,005
	%	(87.7)	(12.3)	(100.0)	(81.8)	(18.2)	(100.0)	(86.4)	(13.6)	(100.0)
전북	n	2,362	240	2,602	780	145	925	3,142	385	3,527
	%	(90.8)	(9.2)	(100.0)	(84.3)	(15.7)	(100.0)	(89.1)	(10.9)	(100.0)
충남	n	2,140	293	2,433	551	168	719	2,691	461	3,152
	%	(88.0)	(12.0)	(100.0)	(76.6)	(23.4)	(100.0)	(85.4)	(14.6)	(100.0)
충북	n	971	140	1,111	360	98	458	1,331	238	1,569
	%	(87.4)	(12.6)	(100.0)	(78.6)	(21.4)	(100.0)	(84.8)	(15.2)	(100.0)
제주	n	622	116	738	305	177	482	927	293	1,220
	%	(84.3)	(15.7)	(100.0)	(63.3)	(36.7)	(100.0)	(76.0)	(24.0)	(100.0)
특광역시	n	447	138	585	515	185	700	962	323	1,285
	%	(76.4)	(23.6)	(100.0)	(73.6)	(26.4)	(100.0)	(74.9)	(25.1)	(100.0)

■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현황 ■

단위: m<sup>2</sup>

구분		농지 형태				
		농지면적계	논면적	밭면적	과수원	기타
강원 n=412	영농조합법인 n=319	113,418.5	2,096.6	92,676.8	385.0	18,260.1
	농업회사법인 n=93	107,232.9	3,725.0	8,596.6	476.7	94,434.6
경기 n=637	영농조합법인 n=280	25,976.9	4,799.7	15,034.6	265.7	5,877.0
	농업회사법인 n=357	21,813.0	4,489.8	9,707.3	161.4	7,454.6
경남 n=274	영농조합법인 n=171	13,468.9	4,584.2	2,515.8	2,317.6	4,051.2
	농업회사법인 n=103	11,988.7	3,243.2	2,268.0	2,228.5	4,249.0
경북 n=488	영농조합법인 n=298	14,104.4	3,378.3	4,906.3	1,463.9	4,356.0
	농업회사법인 n=190	16,509.4	3,773.6	5,030.0	4,088.9	3,616.8
전남 n=683	영농조합법인 n=472	31,145.1	21,462.2	3,401.2	1,199.6	5,082.2
	농업회사법인 n=211	40,410.0	28,655.6	4,558.1	1,417.1	5,779.2
전북 n=385	영농조합법인 n=240	20,900.1	7,826.7	4,953.2	540.5	7,579.8
	농업회사법인 n=145	16,406.5	2,840.8	2,896.1	432.8	10,236.7
충남 n=461	영농조합법인 n=293	15,422.2	8,996.3	2,179.0	625.5	3,621.5
	농업회사법인 n=168	39,942.5	6,237.3	4,589.2	369.9	28,746.1
충북 n=238	영농조합법인 n=140	21,404.3	8,616.3	4,635.3	670.8	7,481.9
	농업회사법인 n=98	21,046.6	7,006.4	8,429.8	541.0	5,069.4
제주 n=293	영농조합법인 n=116	19,932.0	687.6	9,397.4	1,709.2	8,137.8
	농업회사법인 n=177	23,835.1	207.9	15,870.6	1,504.0	6,252.6
특광역시 n=323	영농조합법인 n=138	38,477.4	6,269.0	4,885.8	120.8	27,201.8
	농업회사법인 n=185	26,603.1	4,462.7	10,681.7	1,977.2	9,481.4

## 부록 4&gt; 협동조합 실태조사 조사류별 조사 항목19)

## ■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사전조사 설문 항목 ■

구분	주요 설문 내용
응답자 특성	- 협동조합명, 성명, 지위, 지역, 연락처, E-mail
사업운영 여부	- 사업체 신생설립 여부 - 법인登記 여부 - 사업자 등록증 발부 여부 - 매출 발생 등 사업 운영 여부
사업 미운영 이유	- 법인 또는 사업자 미등록 이유 - 사업중단, 폐업 이유

## ■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기관장조사 설문 항목 ■

구분	주요 설문 내용
응답자 특성	- 협동조합명, 성명, 지위,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연락처
사업 특성	- 법인형태, 조합원 구성, 주사업범위, 사업업종, 사업품목, 사업자 등록증 번호 - 설립목적, 설립목적 달성도 - 사회공헌현황(사회적 적립목적, 지역 해결문제, 일자리 창출대상) -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여부, 금액, 횟수 -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 여부 및 대상자와 사회서비스 부문, 제약요인, 정부지원 여부 및 사업명 -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 활동 유형과 판매비중, 향후 주력 판매경로
설립과정	- 신생 설립 여부 및 법인전환 시 이유, 법인전환 전 법인형태, 실제 운영기간 - 설립전 협동조합 교육 횟수, 기관, 교육 내용
구성원 현황	- 조합원 수 및 구성, 탈퇴 및 제명자 수 - 총회 및 이사회 총회, 이사장, 전직과 현재 겸직 여부 - 임원 현황과 성별 연령대 월평균급여, 4대보험 가입자수, 근무시간 - 임금근로자 현황과 성별 연령대 월평균급여, 4대보험 가입자수, 근무시간 - 임금근로자 대상 월 급여 이외 지급수당, 교육실시 여부 및 횟수, 방식 - 조합원 및 비조합원 자원봉사자의 근무현황과 임금근로자 전환 여부 및 인원 - 임직원들의 2년간 근속현황 및 퇴사자 수 - 조직의 개방성 정도
재무상황	- 자본금(출자금, 부동산, 출자액, 현물 출자액) - 매출액(민간시장, 정부시장) - 영업외수입(조합비, 회비, 정부지원금, 기타지원금) - 총비용 - 당기순이익(법정적립금, 조합원 배당금) - 부채액(금융기관 대출액, 개인 차입금) - 출자금 외 회비 여부 및 금액 - 금융기관 대출 여부 및 대출기관 대출시 문제점
연대사업	- 연합회일 경우, 회원수, 업종, 지역별 구성형태, 회원수가 적은 이유 - 협동조합일 경우, 협의체 가입 여부, 미가입시 이유, 연대사업 수익창출 발생 여부, 연대사업 미추진시 주된 이유 - 업종, 지역 연대대상별 연대사업의 활동도와 필요성 - 지역연대의 주요 목적 및 매출액 발생 비중 - 연대 대상별 물품조달 비중 및 연대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지원정책	- 역차별 해소, 금융정책 정보의 개방, 교육 및 홍보등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정책 효과이용 여부 및 효과성 - 기획재정부 16개 중간지원기관의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이용 여부와 만족도 - 지자체 중간지원기관의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이용 여부와 만족도 - 범부처 협동조합 지원 정책 사업 참여 여부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정책

■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임금근로자조사 설문 항목 ■

구분	주요 설문 내용
응답자 특성	- 협동조합명, 성명, 지위,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연락처, 직무
입사 전 배경	- 총 직장 경력연수, 현 협동조합 근무기간 - 협동조합 입사 경로 - 협동조합 입사 전 경력 - 입사 전 협동조합 기업모델 인식정도 - 협동조합 입사 사유
조합원 여부	- 조합원 임금근로자 여부 및 배당 여부 - 조합원 임금근로자 시, 배당 여부 및 배당 금액 - 협동조합 관련 교육 여부 및 내용
근무조건	- (계약조건) 종사상 지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월평균 급여, 퇴직금 여부, 근로시간 형태, 평균 근무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 - (임금체계) 임금 지불방식, 급여외 수당 여부 및 종류, 동종업계 대비 임금 수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수준 차이 - 직원 의견 반영도 및 협동조합 충성도, 이직 의향

■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조합원조사 설문 항목 ■

구분	주요 설문 내용
응답자 특성	- 협동조합명, 성명, 지위,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연락처, 연가구소득
가입 배경	- 협동조합 조합원 구성 특성, 가입기간, 가입형태, 출자금 및 회비 금액 - 협동조합 가입 이유 및 권유 지인 - 협동조합 접촉 홍보 매체 - 협동조합 가입 시 접촉 기관, 고려요인 - 지인에게 협동조합 가입 권유 여부 및 가입 조합원 수 - 협동조합 가입 전 교육 여부 및 교육기관, 교육 내용,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인지 정도 - 결산시 배당여부
커뮤니케이션 방법	- 총회 실시 여부 및 횟수, 정기 총회 내용 - 임원 선출 방법 및 경선 시 선거위원회 구성 여부 - 협동조합의 정기보고 유무 및 보고방법
협동조합 운영현황	- 협동조합 설립목적의 달성도 - 협동조합 운영 7원칙 인지 여부와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 -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지속적인 참여의도와 미참여 이유

## 부록 5&gt; 조사 담당 공무원 설문 내용

## □ 조사 담당 공무원 설문지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실태 조사의 현장 조사 담당자로 참여하신 시군 담당 공무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소요시간은 약 10분 내외이며,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면 농업법인 실태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사항목	평가	의견
현장조사 수행과정의 난이도 및 애로점	①어려움 없음 ②어렵지 않는 편 ③보통 ④어려운 편 ⑤매우 어려움	
조사 내용의 애로점	①어려움 없음 ②어렵지 않는 편 ③보통 ④어려운 편 ⑤매우 어려움	
agrix 입력과정	①어려움없음 ②어렵지 않는 편 ③보통 ④어려운 편 ⑤매우 어려움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에 건의 할 내용		